

FTA 민원·답변 사례집

<표지면지>

CONTENTS

I

원산지 증명

001. 제3국 발행 송장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수출자 발행 송장번호 기재 가능 여부 [한·ASEAN]	2
002. 6,000유로 초과 단일 탁송화물 해당 여부 [한·EU]	2
003.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 혼재 시 원산지신고서 작성 [한·EU]	3
004. 제3국 발행 송장 거래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한·중]	3
005.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신고서 작성자 [한·EU]	4
006. 원산지증명서 원본 보관 의무 [공통]	4
007. 원산지증명서의 분할 사용 가능 여부 [한·중]	5
008.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결정기준 표기방법 [한·ASEAN]	5
009. 제3국이 수입자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한·미]	6
010. 국내 양수도 거래로 원산지신고서상의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한·EU]	6
011.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의 해석 [공통]	7
012. 동일물품에 대하여 2개의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협정 적용 가능 여부 [한·중]	7
013.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서식 [최빈개발도상국혜]	8
014. 원산지 증빙서류 등의 전자문서 보관 가능 여부 [공통]	8
015.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신고서 작성자 [한·EU]	9
016. 원산지증명서 내 제3국 발행 송장 관련 일부 누락 경우 [한·호주]	9
017. 원산지증명서 수입자 기재방법 [한·미]	10
018. 연결원산지증명서 발행 시기 및 제출서류 [한·ASEAN]	10
019. 원산지증명서 국가명 표기방법 [한·EU]	11
020. 원산지증명서 기재 내용의 경미한 차이 인정 여부 [공통]	11
021. 원산지증명서의 대리인 발급 가능 여부 [한·중]	12
022. 원산지증명서의 기재 내용 [한·ASEAN]	12
023. 제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제조자 작성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한·EU]	13
024. 제3국 발행 송장거래 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송장번호 [한·중]	13
025. 원산지증명서의 수출대리인 발급 가능 여부 [한·중]	14

026. 비당사국 생산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한·ASEAN]	14
027.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한·인도]	15
028. 수입자 발행 원산지증명서 인정 여부 [한·미]	15
029.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방법 [한·ASEAN]	16
030. 비인증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가능 여부 [한·EFTA]	16
031. 원산지신고서 인정 가능 여부(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 관련) [한·EU]	17
032. 비인증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가능 여부 [한·EU]	17
033.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문구 기재 여부 [한·베트남]	18
034. 양도된 원산지증명서 인정 가능 여부 [한·ASEAN]	18
035.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서류 [한·EU]	19
036.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하자 인정 가능 여부 [한·ASEAN]	19
037. 제3국 발행 송장거래 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한·EU]	20
038.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비당사국 생산자 앞으로 발행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한·EU]	20
039. 원산지증명서 발급하여 수입된 물품의 국내 거래 시 원산지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한·중]	21
040. 원산지증명서상 생산자 기재 생략 가능 여부 [한·인도]	21
041. 비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의 인정 여부 [한·EU]	22
042. 원산지 국가명 기재방법 [한·터키]	22
043. 제3국 발행 송장거래 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한·미]	23
044.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제3국 발행 송장거래 정보 기재방법 [한·중]	23
045. 수출자와 제조자가 상이한 경우 제조자 작성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한·EU]	24
046. 비인증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여부 [한·EU]	24
047.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한·EU]	25
048. 제3국 발행 송장 거래 시 생산자 작성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 [한·EU]	25
049.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부가가치기준) 기재방법 [한·ASEAN]	26
050. 여러 개의 인보이스로 하나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한·중]	26

CONTENTS

051. 원산지증명서 원산지 기준 작성방법 [APT]	27
052. 원산지증명서 사본 보관 관련 [한·EU]	27
053. 생산자 발급 원산지확인서를 근거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 소명 의무자 [한·미]	28
054. 유효기간 경과 원산지증명서 정정 가능 여부 [공통]	28
055. 완전생산 입증서류 [공통]	29
056. 국내 BWT 거래 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한·EU]	29
057.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신고서 작성자 [한·EU]	30
058.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기재란 작성방법 [한·호주]	30
059. 6,000유로 초과 단일 탁송화물 해당 여부 [한·EU]	31
060. 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수출자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한·EU]	32
061. 원산지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공통]	32
062. 비당사국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인정 가능 여부 [한·미]	33
063. 6,000유로 초과 단일 탁송화물 해당 여부 [한·EU]	33
064. 국내 BWT 거래 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한·ASEAN]	34
065. 인증수출자번호 기재란에 REX 번호 기입 시 인정 가능 여부 [한·EU]	34
066. 제3국 발행 송장거래 시 생산자 발행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한·EU]	35
067. 부가가치기준 시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한·ASEAN]	35
068.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문구 [한·싱가포르]	36
069.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 작성방법 [한·싱가포르]	36
070. 원산지증명서 수입자 정보 기재방법 [한·ASEAN]	37
071. 다수의 제조자가 생산한 물품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한·ASEAN]	37
072. 원산지확인서 발급 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공통]	38
073. 원산지신고서 국가명 기재방법 [한·EU]	38
074. 원산지신고서 국가명 기재방법 [한·EFTA/한·터키]	39
075.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생산자 발행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한·EU]	39
076. 원산지신고서 작성자 [한·EU]	40

077. 원산지확인서의 공급받는 자 [공통]	40
078. 법인 단위업체의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 [공통]	41
079.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수출자 발행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여부 [한·EU]	41
080. 원산지신고서 원산지 국가 표기방법 [한·EU]	42
081. 수입자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해당 여부 [한·미]	42
082.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 기재방법 [한·ASEAN]	43
083. 원산지증명서의 필수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 인정 가능 여부 [한·중]	43
084. 제3국 발행 송장거래 시 EU 역내 생산자의 원산지신고서 발급 가능 여부 [한·EU]	44
085. 제3국 송장거래 시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한·EU]	44
086. Delivery Note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 인정 가능 여부 [한·EU]	45
087. 제3국 발행 송장거래 시 생산자 발행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한·EU]	45
088. 비당사국 수출자 발행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한·미]	46
089. 연결원산지 증명서의 유효성 [한·ASEAN]	46
090. Certificate of Processing의 유효성 [한·중]	47
091. B/L 양수도 거래 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수입자 [공통]	47
092. 마른김의 원산지 총족 입증자료 [공통]	48
093. 제3국 송장거래 시 생산자 원산지신고서 인정 가능 여부 [한·EU]	48
094. 한-호주 FTA 적용 조건 및 원산지증명서 작성 주제 [한·호주]	49
095.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 [한·ASEAN]	49
096.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란에 비당사국 수출자 정보를 기재한 경우 인정 가능 여부 [한·미]	50
097.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 작성 원산지증명서의 인정 가능 여부 [한·EU]	51
098.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시 기재 문구 [한·베트남]	51
099. 원산지신고서에 원산지 국가 기재방법 [한·EU]	52
100.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 기재방법 [한·베트남]	52
101. 협정적용신청서 작성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기재방법 [한·미]	53
102. 협정적용신청서 작성 시 수출자 기재방법 [한·EU]	53

CONTENTS

103. 제3국 발행 송장 거래 시 비당사국 정보 기재 여부 [한·중]	54
104. 원산지증명서 기재방법 [한·칠레]	54
105. 제3국 발행 송장거래에서 부가가치 계산에 적용되는 조정가격 산정방법 [한·미]	55
106. 원산지 기준 기재방법 [한·ASEAN]	55
107. 수돗물의 원산지 입증 자료 [공통]	55
108.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 [한·미]	56
109.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신고서 수출자 기재방법 [한·ASEAN]	56
110.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수입자' 기재방법 [한·미]	57
111.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기재란 작성방법 [한·중]	57
112. 비인증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한·EU]	58
113. 제3국 발행송장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의 인정 가능 여부 [한·중]	58
114. 소급발급 문구 기재방법 [한·ASEAN]	59
115. 법인사업자 분할 시 인증수출자 지위 인정 가능 여부 [공통]	59
116. 원산지확인서 '공급자' 기재방법 [공통]	60
117. 제3국 발행 송장거래 시 B/L상 송하인 [한·미]	60
118. B/L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한 경우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 [한·EFTA]	61
119. 국내 BWT 거래 시 C/O 수입자와 실제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방법 [한·미]	61
120. 비당사국 수출자 발행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한·EU]	62
121. 제3국 발행 송장에 원산지 신고문안 작성한 경우 인정 가능 여부 [한·EU]	62
122. 수출 후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하여 소급발급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한·EU]	63
123. 수입자의 원산지증명서 원본 보관 의무 [공통]	63
124. 제3국 발행 송장 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한·EU]	64
125.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한·ASEAN]	64
126.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직접운송 증빙자료 필요 여부 [한·ASEAN]	65
127.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 혼재 시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한·EFTA]	65
128. 원산지증명서의 생산자와 실제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인정 가능 여부 [한·중]	65

129. 원산지증명서 보관 관련 [공통]	66
130. 수출자와 생산자 상이 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한·EU]	66
131. 인증수출자 인증방법 [공통]	67
132. 제3국 발행 송장거래 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한·ASEAN]	67
133. B/L 양수도 거래 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한·미]	68
134. 작성일자가 누락된 원산지신고서의 인정 가능 여부 [한·EU]	68
135. 제3국 발행 송품장상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정보 기재 여부 [한·미]	69
136. 수출자 정보가 추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한·중]	69
137.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생산자 발행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한·EU]	70
138. 선하증권에 원산지 신고문안 작성 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 여부 [한·EU]	70
139. 상호가 변경된 경우 이전 상호로 발행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한·EU]	71
140. 연결원산지증명서 직접운송 충족 가능 여부 [한·ASEAN]	71
141.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한·EU]	72
142.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신고서 작성자 및 기재사항 [한·EU]	72
143. 제3국 발행 송장 거래 가능 여부 [한·ASEAN]	73
144. 수출국으로 재수출 시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한·ASEAN]	73
145.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공통]	74
146. 제3국 발행 송장거래 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APTA]	74
147. 스캔된 원산지증명서 원본 인정 여부 [공통]	75
148. 인증수출자 자율점검 제출기한 [공통]	75
149. 제조자의 주소, 대표자 변경 시 품목별 인증수출자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 [공통]	76
150.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소급발급 문구 기재 기준 [최빈개발도국특혜]	76
151. 원산지 신고문안의 명백한 형식적 오류 예시 [한·EU]	77
152. 인증수출자번호가 다른 곳에 기재되어 있는 원산지신고서 인정 가능 여부 [한·EU]	78
153. 원산지 신고문안 국가명 표기방법 [한·EU]	78
154. 수입자가 아닌 자에게 발행한 송품장의 원산지증명서 효력 인정 여부 [한·EU]	79

CONTENTS

155. 하나의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상 역내 다른 국가가 표기된 경우 유효성 여부 [한·EU]	79
156. 선하증권에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여부 [한·EU]	80
157. 인도증서(Delivery Note)에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여부 [한·EU]	80
158. 원산지신고서 국가명 기재방법 [한·EU]	81
159. 인보이스에 수출자명이 스탬프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C/O의 유효성 여부 [한·EU]	81
160. 원산지신고서의 'UE' 표기의 유효성 여부 [한·EU]	82
161.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 작성 원산지증명서의 인정 가능 여부 [한·EU]	82
162. 종계무역 시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체 [한·EU]	83
163.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후 C/O 소급 발급 가능 여부 [한·EU]	83
164. 미국 주(state)의 원산지표기 협정 적용 가능 여부 [한·미]	84
165.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한·ASEAN]	84
166. 제3국 발행송장 정보가 없는 C/O의 유효성 [한·ASEAN]	85
167. EODES 시행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 여부 [한·ASEAN]	85
168. 인증품목의 원산지 기준 변경 시 재인증 가능 여부 [한·ASEAN]	86
169. 제3국 송장 발행 시 원산지증명서 기재방법 [한·ASEAN]	86
170.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구비서류 [한·ASEAN]	87
171.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와 상업송장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 인정 가능 여부 [한·ASEAN / 한·베트남]	88
172. 원산지신고서 작성서류 [한·영]	88
173. 인증수출자 지위 부여 권한 [한·영]	89
174. 한-EU 인증수출자 지위가 한-영 FTA에서 유지되는지 여부 [한·영]	89
175. 국내 BWT 거래 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한·영]	90
176.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한·인도]	91
177. QR 코드 원산지증명서에 발급기관 인장 및 서명 기재 필수 여부 [한·인도]	91
178.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부가가치기준) 기재방법 [한·인도]	92
179. 제3국 송장 발행 시 원산지증명서 기재방법 [한·인도]	92

180. 제3국 송장 발행 시 원산지증명서 기재방법 [한·인도]	93
181. B/L의 목적지가 실제 목적지와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한·중]	93
182. 원산지증명서에 중계인 기재 여부 [한·중]	94
183. 원산지증명서 분할 사용 가능 여부 [한·중]	94
184. 제3국 송장 발행 시 원산지증명서 기재방법 [한·중]	94
185. 수입 당사국에 소재하는 제3자의 송장이 비당사국 송장인지 여부 [한·중]	95
186. 원산지증명서의 발행 주체 [한·캐나다]	95
187.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호만 다르고 같은 회사인 경우 원산지신고서(제8란) 기재방법 [한·콜롬비아]	96
188. 협정에서 정한 서식과 다른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관련 [한·호주]	96
189. 견적송장을 바탕으로 한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여부 [한·호주]	97

II

협정관세 적용

001. 생산지원비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공통]	100
002. 수출 후 인증수출자 취득하여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한·EU]	100
003.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와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공통]	101
004. 임가공비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한·베트남]	101
005. 원산지포괄확인서의 포괄기간 [공통]	102
006. 수입신고 이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공통]	102
007.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를 가공 없이 반출 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및 신청 시기 [한·ASEAN]	103
008.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 혼재 시 원산지증명서 물품 수량 기재방법 [한·중]	103
009. 임가공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공통]	104
010. 제품생산 시 발생한 스크랩의 역내산 인정 여부 [공통]	104
011. 수입원유가 보세구역 내 잔존유와 혼합된 경우 협정 적용 가능 여부 [한·미]	105
012.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규정 해당 여부 [한·중]	105
013.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규정 적용 방법 [한·중]	106

CONTENTS

014.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규정 해당 여부 [한·EU]	106
015.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규정 적용 방법 [한·EU]	106
016. 원산지 상품과 비원산지 상품 혼재 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 가능한 수량 [한·중]	107
017. 원산지 상품과 비원산지 상품 혼재 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 가능한 수량 [한·베트남]	107
018. 1국 2협정의 적용 수입물품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한·베트남]	108
019. 협정 적용 가능 여부 [한·EU]	108
020. 수입신고 이후 소급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공통]	109
021. 재수입물품의 협정 적용 가능 여부 [한·미]	109
022. 일반특혜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APTA]	110
023. 보세공장 반입물품을 제품과세 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한·중]	110
024. 전자상거래 물품의 원산지 증명 면제 가능 여부 [한·EU]	111
025. 무상거래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한·베트남]	111
026. 비당사국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한·ASEAN]	112
027. 비당사국에서 단순가공한 물품의 협정 적용 가능 여부 [한·미]	112
028.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필요 서류 [한·EU]	113
029.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원산지 증명방법 [한·중/APTA]	113
030. 원산지포괄확인서의 포괄기간 작성방법 [공통]	114
031. 협정관세 사후적용 기간 및 제출서류 [공통]	114
032. 원산지포괄증명서의 유효기간 [한·뉴질랜드]	115
033. 여행자휴대품 원산지 신고문안 작성방법 [한·EU]	115
034. 수리 또는 개조 물품의 협정 적용 [한·베트남]	116
035. 수탁가공물품의 가공비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한·ASEAN]	116
036. 재수입물품에 대한 협정 적용 방법 [공통]	117
037. 보세판매장 반입물품의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한·EFTA]	117
038. 연구목적 수입물품 협정 적용 가능 여부 [한·미]	118
039. 소액물품 협정 적용 가능 여부 [한·미]	118

040. 이차차량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구비서류 [한·미]	119
041. 개인 이차차량 수입 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한·EU]	120
042. 한-EU 협정 적용 방법 및 사후적용 가능 여부 [한·EU]	120
043. 특별긴급관세 적용조치일 기준 [한·호주]	121
044. 한-인도 CEPA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 HS [한·인도]	121
045. 협정관세 사후적용 방법 [공통]	122
046. OEM, ODM 방식 생산물품의 수입 시 FTA 적용 가능 여부 등 [공통]	122
047. 보세판매장으로 반입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협정 적용 가능 여부 [한·EU]	123
048. 한-캐나다 FTA의 소재물품 관세 면제 규정 [한·캐나다]	123
049. 한-미국 FTA의 소재물품 관세 면제 규정 [한·미]	124
050. 비당사국 물품의 협정 적용 가능 여부 [한·캐나다]	124
051. 1국 2협정의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한·중]	125
052. 1국 2협정의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한·중]	125
053. 1국 2협정의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한·ASEAN]	125
054. 협정 발효 전 공급물품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공통]	126
055. 여행자휴대품의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한·EU]	126
056. 여행자휴대품의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 [한·EU]	127
057. 해외 직구 물품의 협정 적용 방법 [한·EU]	127
058. 중고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한·중]	128
059. 원산지증명서 제출 방법 [한·미]	128
060.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계산방법 [공통]	129
061. 무상물품의 원산지 기준 판정 [공통]	129
062. 비당사국에서 최종 포장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한·중]	130
063. 한-미 FTA의 영역 해당 여부 [한·미]	130
064. 생산지원비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한·EU]	131
065. 위탁가공 수입물품 수리 또는 개조 포함 여부 [한·베트남]	131

CONTENTS

066. 수리물품 재수입 시 가공비와 운임의 협정 적용 가능 여부 [한·EU]	132
067. 비당사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베트남으로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한·베트남]	132
068. 한국산 물품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 여부 [한·미]	133
069. 전자상거래물품 협정 사후적용 가능 여부 및 방법 [한·EU]	133
070. 이사회물차량의 협정 적용 가능 여부 [한·EU]	134
071. 수출 후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한·EU]	134
072.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 [한·호주]	135
073. 해외 임가공물품의 원산지 판정 [한·ASEAN]	135
074. 여행자휴대품 협정 적용 가능 여부 [한·미]	136
075. 수리물품 재수입 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한·중]	136
076. 원산지증명서 인정 가능 여부 [한·미]	137
077. 협정 발효일 이전 공급된 물품의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공동]	138
078. 여행자휴대품의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구비서류 [한·EU]	138
079.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시 원산지 증명 면제 적용 가능 여부 [한·EU]	139
080. 수리 및 개조 해당 여부 [한·미]	139
081.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TRQs) 적용 방법 [한·중]	140
082. 중고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한·ASEAN]	140
083. 긴급수입제한조치(ASG) 품목 관련, 수입신고 취하 시 배정수량 복구 여부 [한·미]	141
084.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물품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한·중]	141
085. 폐기물 등 원산지 결정 [한·ASEAN]	142
086. 협정관세 적용 방법 [한·터키]	142
087. 이사회물차량의 협정 적용 가능 여부 [한·미]	143
088.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한·호주]	143
089.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한·EU]	144
090.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한·ASEAN]	144
091. 소액물품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한·미]	145

092. 이차차량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구비서류 [한·미]	145
093. 중고물품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한·호주]	146
094. 전자상거래 수입물품의 원산지 증명 제출 면제 가능 여부 [한·EU]	146
095. 특별긴급관세 적용조치일 기준 [한·호주]	147
096. 제3국에서 수리한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한·미]	147
097. 생산지원비의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한·중]	148
098. 한-미 FTA 협정 적용 방법 [한·미]	148
099. 협정관세 적용방법 [한·EU]	149
100. 자유무역지역 반입품 사후적용신청 가능 여부 [공통]	149
101. 신규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 적용 신청 가능 여부 [공통]	150
102. 협정관세 사후적용 시 가산세 환급 여부 [공통]	150
103. 자유무역지역 반입품 협정 적용 관련 [공통]	151
104. 협정관세 적용 이후 가격변동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방법 [공통]	151
105.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사후적용 신청 요건 [최빈개발도상국특혜]	152
106. 우편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요건 [한·EU]	153
107. 보완한 인보이스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한·EU]	153
108. 보세판매장 물품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한·EU]	154
109.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한·EU]	154
110. 국가별 FTA 포괄증명서의 복수선적 물품에의 적용 요건 [한·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콜롬비아]	155
111.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 [한·미]	155
112. 이차차량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구비서류 [한·미]	156
113. 소액물품의 협정 적용 가능 여부 [한·미]	157
114. 할당물량만 협정 적용 후 남은 부분 반송 가능 여부 [한·미]	157
115. 수리 또는 개조물품의 협정 적용 [한·미]	158
116. 수입통관 후 멸실된 화물에 대한 할당추천물량 재적용 가능 여부 [한·미]	158
117. HS Code 정정 및 사후협정 적용 가능 여부 [한·미]	159

CONTENTS

118.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사후적용 신청 기한 [한·미]	159
119. C/O와 송품장에 발급번호가 없는 경우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발급·작성번호 기재방법 [한·미]	160
120. 소액물품의 협정 적용 가능 여부 [한·미]	160
121. 비당사국에서 최종 완제품 생산이 이루어진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한·미]	161
122. 한·미 FTA에서 기체결되어 운송 중인 상품 긴급수입제한조치 면제 여부 [한·미]	161
123. 해외 직구 물품의 협정 적용 방법 [한·싱가포르, ASEAN]	162
124. 수입통관 후 다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한·ASEAN, 베트남]	162
125. 해외 임가공물품의 재수입면세 적용 또는 협정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한·ASEAN]	163
126. 6,000유로에 비원산지 재료 가격 포함 여부 [한·영]	163
127.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문의 [한·중]	164
128. 보세공장 사용신고 물품의 수입 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한·중]	164
129. 협정 사후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가 갖춰야 할 요건과 신청 절차 [한·중]	165
130. 용도세출 품목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한·중]	165
131. 1국 2협정의 적용 수입물품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한·중]	166
132. 협정국에서 임가공 수행 후 국내로 수입 시 임가공비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한·중]	166
133. 제3국 발행 B/L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한·중]	167
134. 미조립 물품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한·중]	168
135. 경유하여 운송할 때 수입신고서, 협정관세신청서 적출국, 환적국 기재방법 [한·중]	168
136. 참기름의 할당물량 및 추천서 종류 문의 [한·페루]	169



원산지 결정기준

001. 부가가치기준 물품의 원산지소명서 작성방법 [공통]	172
002. 비당사국 발행 통관선하증원의 적용 여부 [한·중]	172
003. 누적적용 가능 여부 [한·ASEAN]	173
004. 어획물 완전생산기준 입증서류 [한·EU]	173

005. 원산지 상품 해당 여부 [한·ASEAN]	174
006. 제2106.9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 [한·베트남]	174
007. 경유화물의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 [한·EU]	175
008. 비당사국에서 선적된 물품의 직접운송 충족 가능 여부 [한·중]	175
009. 부가가치기준 계산 시 FOB 가격 산정방법 [한·인도]	176
010. 제3906.9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 [한·미]	176
011. 제0910.3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한·미]	177
012. 경유화물의 직접운송 요건 충족서류 [한·캐나다]	177
013. 중간재 적용 가능 여부 [한·EU]	178
014. 쌀 완전생산 입증서류 [공통]	178
015. EU 역내 국가에서 분리작업한 화물의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 [한·EU]	179
016. 비당사국 경유물품 직접운송 충족 여부 [APTA]	179
017. 지하수의 원산지 입증자료 [공통]	179
018. 부가가치기준 계산 시 FOB 가격 산정방법 [한·ASEAN]	180
019. 지하수 및 수돗물의 원산지와 원산지 입증자료 [공통]	180
020. 비당사국에서 소분, 포장작업 시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 [한·미]	181
021. BWT 거래 시 비당사국 수입자에게 발행된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한·EFTA]	181
022. 직접운송 증빙서류 [한·EU]	182
023. 수입신고 후 발행된 비가공증명서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한·터키]	182
024. 제1504.1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방법 [한·EU]	183
025. 통관선하증권의 인정 여부 [한·ASEAN]	183
026.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방법(제8481.80호) [한·캐나다]	184
027. 통관선하증권의 인정 범위 [한·중]	184
028.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제8462.10호) [한·중]	185
029. 비당사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한·EU]	185
030. 제3907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다만' 이하의 단서조항의 해석방법 [한·미]	186

CONTENTS

031. 한-미 FTA에서의 불안정공정 충족 필요 여부 [한·미]	186
032. 통과선하증권의 사후 발급 시 인정 여부 [한·ASEAN]	187
033. 제7308.9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 [한·미]	187
034. 비당사국에서 선적된 물품의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 [한·EU]	188
035. 지하수 및 수돗물의 원산지 입증자료 [공통]	188
036. 최소허용기준 적용 여부 [한·EU]	189
037. EU 역내국가에서 환적된 경우 환적 표기 여부 [한·EU]	189
038. 제3국 경유 시 직접운송 충족 입증자료 [최빈개도국특혜]	190
039. 스크랩 및 폐기물의 완전생산 입증자료 [공통]	191
040. 제3국 경유 시 당사국 발행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한·중]	191
041. 제3국에서 수입통관된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한·미]	192
042. 제6815.1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 [한·캐나다]	192
043. 제3국 BWT 거래 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한·EU]	193
044. 직접운송 충족 입증서류 [한·EU]	193
045. 세번변경기준의 누적적용 가능 여부 [APTA]	194
046. 제2202.9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한·ASEAN]	194
047. 제3국 발행 통과선하증권의 인정 여부 [공통]	195
048. 직접운송 요건 충족 증명방법 [공통]	195
049. 제2008.19호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 [한·베트남]	196
050. 포장용기의 원산지 판정 [한·ASEAN]	196
051. 선적일 후 발급된 B/L 인정 가능 여부 [한·ASEAN]	197
052. 통과선하증권의 해석 [한·EU]	197
053. 완전생산기준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한·ASEAN]	198
054. 한-중 FTA 직접운송 요건 입증방법 [한·중]	198
055. 최소허용수준 적용 가능 여부 [한·EFTA]	199
056. FOB 가격 산정방법 [한·베트남]	199

057. 직접운송에서의 '경유'의 의미 [공통]	200
058. 비당사국 경유물품의 직접운송 요건 입증자료 [한·EU]	200
059. 경유국에서 발급한 B/L의 통과선하증권 인정 가능 여부 [한·중]	201
060. 제3국 경유물품의 직접운송 요건 증빙서류 [한·EFTA]	201
061. 누적적용을 위해 비양허품목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APTA]	202
062. 누적적용을 위한 비양허품목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기 [APTA]	202
063. 통과선하증권 인정 가능 여부 [한·중]	203
064. 원산지 기준 표기 해석 [한·미]	203
065. 역외산 물품을 수출국에서 소분 작업 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한·EU]	204
066. 부가가치비율 계산 시 직접법과 공제법 선택사용 가능 여부 [한·ASEAN]	204
067.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의 원산지 기준 해석 [한·미]	205
068. 스크랩으로 생산한 제품의 완전생산기준 충족 여부 [한·인도]	205
069. 통과선하증권 인정 여부 [한·ASEAN]	206
070. 제5903.90호 원산지 기준 해석방법 [한·미]	206
071. 비당사국 경유 시 증빙자료 [APTA]	207
072. 통과선하증권 인정 가능 여부 [한·ASEAN]	207
073. 통과선하증권 인정 가능 여부 [한·미 / 한·호주]	208
074.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적용 가능 여부 [한·미]	208
075. 제1901.20호의 원산지 기준 해석방법 [한·미]	209
076.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 작성방법 [한·ASEAN]	209
077. 미소기준 적용 가능 여부 [한·ASEAN]	210
078. 다른 세번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적용 가능 여부 [한·미]	210
079. 비당사국 경유 시 직접운송 증빙자료 인정 여부 [최빈개도국특혜]	211
080. 한·영 FTA 발효 이후 영국 경유 화물의 직접운송 충족 여부(BWT 거래 시) [한·EU]	211
081.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유 화물의 직접운송 충족 여부 [한·EU]	212
082. 살아있는 동물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한·뉴질랜드]	212

CONTENTS

083. 원상태 수출 시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여부 [한·EU]	213
084. 제8411.81호의 원산지 기준의 해석 방법 [한·미]	213
085. 누적적용 방법 [한·중]	214
086. 제8414.80호의 원산지 기준의 해석방법 [한·미]	214
087. 제8529.9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방법 [한·ASEAN]	215
088. AWB의 통과선하증권 인정 가능 여부 [한·EU]	215
089. 최소허용기준 적용 가능 여부 [한·ASEAN]	216
090. 포장용기의 원산지 결정방법 [APT]	216
091. 원산지 상품 해당 여부 [한·EU]	217
092. 직접운송 충족 여부 [한·미]	217
093. 비당사국에서 라벨링 작업 수행한 경우 협정 적용 가능 여부 [한·EFTA]	218
094. 원산지 기준 기재방법 [한·중]	218
095.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의 원산지 규정 [한·중]	219
096.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 작성방법 [한·중]	219
097. BWT 거래 시 직접운송 충족 가능 여부 [한·EU]	220
098. 제5903.90호의 원산지 기준 해석방법 [한·EU / 한·터키]	220
099. 제8483.5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 [한·미]	221
100.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 기재방법 [한·인도]	222
101. BOM 작성방법 및 증빙자료 [공통]	222
102.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 기재방법 [한·중]	223
103. 홍콩 지정장소 명칭의 인정 여부 [한·중]	224
104. 최소허용수준 적용 가능 여부 [한·미]	224
105. 비당사국에서 수입통관된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한·페루]	225
106.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FOB 가격 기재 여부 [한·ASEAN]	225
107. 비당사국 경유물품 직접운송 충족 여부 [한·미]	226
108. 비당사국 경유물품의 직접운송 충족 여부 [한·중]	226

109. EU 역내국 경유 시 직접운송 충족 여부 [한·EU]	227
110. 부가가치기준에서 분모값인 FOB(EXW) 가격에 대한 기준 [공통]	227
111. 역내산 재료로만 생산된 제품이 가공공정기준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공통]	228
112. 활성탄의 간접재료 여부 및 BOM에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공통]	228
113. 역외가공 어획물의 원산지 판정 [한·EFTA]	229
114.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방법 [한·EU]	229
115.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하여 가공 후 다시 수출할 때 원산지 판정 [한·EU]	230
116. 비원산지 물품의 세트물품 특례 적용 가능 여부 [한·미]	230
117. 골프채 부분품을 조립한 완제품 골프채의 원산지 판정 [한·미]	231
118. 링킹 공정이 봉제 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베트남]	231
119. 중간재 규정 적용 요건 [한·베트남]	232
120. 이산화탄소 주입공정의 불인정공정 여부 [한·ASEAN / 한·베트남]	232
121. 중간재로 간주 가능한 물품의 범위 [한·ASEAN / 한·베트남]	232
122. 역외산 소매 포장 및 라벨의 원산지 판정 [한·인도]	233
123. 누적적용 증빙서류 [한·인도]	233
124. 고물상이 수집한 폐기물의 완전생산 입증자료 [한·인도]	234
125. 완제품 수입 후 판매용 포장을 수행한 경우 누적기준 적용 가능 여부 [한·중]	234
126. 누적기준의 '결합' 의미 해석 [한·중]	235
127. 최소허용기준 적용 가능 여부 [한·캐나다]	235

IV

품목분류

001. 수출물품의 세번이 체약상대국과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한·EU]	238
002.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신고 세번 상이 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한·중]	238
003. 원산지증명서 세번과 수입신고 세번 상이 시 BOM으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확인 가능 여부 [한·중]	239
004.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신고 세번 상이 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한·중]	239
005.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신고 세번 상이 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한·중]	240

CONTENTS

006.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신고 세번 상이 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한·미]	240
007.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보완방법 [공통]	241
008. 원산지증명서 세번과 수입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한·중]	241
009. 원재료의 세번이 체약상대국의 세번과 상이한 경우 원산지 기준 판정 시 적용되는 원재료 세번 [한·중]	242
010.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신고 세번 상이 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한·중]	242
011.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 적용 가능 여부 [한·중]	243
012.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다른 경우 협정 적용 가능 여부 [한·미]	243
013.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 적용 가능 여부 [한·중]	244
014. 우리나라 수출세번과 상대국의 수입세번이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공통]	244
015.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우리나라 수입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한·중]	245
016.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공통]	245
017.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공통]	246
018.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공통]	246
019.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보완방법 [공통]	247
020.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 적용 가능 여부 [한·인도]	247
021. 미조립물품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세번 기재방법 [한·인도]	248
022. 품목번호 해석상이 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공통]	248
023. 품목번호 상이 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한·베트남]	249
024. 협정국 및 국내 원산지 기준 모두 충족 시 협정국 세번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한·베트남]	249
025. 품목분류 변경 시 수입신고 대상 해당 여부 [한·중]	250
026. 수출입 시 품목분류번호 상이한 경우 FTA 적용 가능 여부 [한·중]	250
027. 미조립물품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세번 기재방법 [한·중]	251
028. 품목번호 해석상이 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한·중]	251



직접운송

001. 제3국 경유 시 직접운송 총족 입증자료 [최빈개도국특혜]	254
002. 내륙 운송한 경우 직접운송 증빙자료 [한·EFTA]	254
003. 타국(중국)을 경유하는 경우 한-EU FTA 적용 가능 여부 [한·EU]	255
004. 비당사국 경유 시 직접운송 증빙서류 [한·EU]	255
005. 직접운송 요건 총족 증명방법 [한·미]	256
006. 물류센터 단순 경유 시 직접운송 증빙자료 [한·미]	256
007. 경유국(중국)의 재수출증명서의 증빙서류로서의 효력 인정 여부 [한·미]	257
008. 제3국 경유 시 직접운송 증빙 [한·ASEAN]	257
009. 한-영 FTA 탁송품의 직접운송 요건 [한·영]	258
010. 운송 중 목적국 변경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한·인도]	258
011. 원산지증명서 발행 기한의 기산일 [한·중]	259
012. 직접운송 총족 여부 입증자료 [한·콜롬비아]	259
013. 비당사국 환적 시 직접운송 요건 입증자료 [한·터키]	260
014. 제3국 경유 시 재포장 재라벨링 후 협정 적용 가능 여부 [한·호주]	260

FTA 민원·답변 사례집



원산지 증명



I 원산지 증명

001 제3국 발행 송장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수출자 발행 송장번호 기재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제3국 송장이 발급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10란(송장번호 및 발급일자)에 제3국 수출자가 발급한 송장번호와 발급일자를 기재하여도 되나요?

A 답 변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증명서 제10번란에는 계약당사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송장번호가 기재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3국 송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관련 무역서류에 의하여 제3국 무역거래임과 원산지 증명상 물품과 실제 거래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3국 수출자가 발행한 송장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002 6,000유로 초과 단일 탁송화물 해당 여부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각각 6,000유로 이하로 여러 개의 인보이스를 작성하고, 인보이스별로 각 다른 운송수단을 통해 물품을 발송하는 경우 비인증수출자가 각 인보이스별로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한 경우에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일시에 송부된 단일 탁송화물의 전체 금액이 6,000유로 미만인 경우 비인증수출자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탁송화물이 상이한 날짜에 다른 운송수단을 통하여 개별 송부되었다면 비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 계약상 단일의 송품장과 운송서류가 발급되었음에도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고자 부정적인 방법으로 분할 송부한 경우라면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003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 혼재 시 원산지신고서 작성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Invoice 전체 금액은 6,000유로를 초과하지만, 그중 협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원산지 상품이 6,000유로 이하일 경우 비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한가요?

A 답 변

단일탁송화물에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혼재되어 수입되고 그중 원산지 제품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비인증수출자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혼재되어 수입되는 경우 원산지신고서에 비원산지 제품과 원산지 제품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구분 가능하여야 합니다.

004 제3국 발행 송장 거래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제3국 송장 무역거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답 변

한-중 FTA에서는 제3국 송장 발행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나, 협정문 제3.21 조 및 부속서 3-다에 따라 중국 소재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제5란(비고)에 비당사국 운전자(제3국 송장 발행자)의 법적 이름과 국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이 중국에서 선적되어 우리나라로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운송서류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005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신고서 작성자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하고 생산자가 EU 역내 소재 인증수출자인 경우 생산자가 발행한 Packing List에 생산자가 원산지 신고문안 작성 시 협정 적용 가능한가요?

A 답 변

생산자가 발행한 포장명세서(Packing List)에 인증수출자인 생산자가 한-EU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006 원산지증명서 원본 보관 의무

[관련 협정 : 공통]

Q 질 의

협정관세 적용 후 수입자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나요?

A 답 변

FTA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에는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는 개별 협정 및 FTA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07 원산지증명서의 분할 사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1개의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들이 동시 선적되었으나 2개의 B/L로 발급된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분할 사용하여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증명서는 운송서류(B/L) 또는 송품장(Invoice) 단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복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 선적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08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결정기준 표기방법

[관련 협정 : 한·ASEAN FTA]

Q 질 의

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2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인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CTC + Specific Processes'로 기재된 경우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수입물품의 원산지 기준이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이 결합된 결합 기준인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CTC + Specific Processes'로 표기되어있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009 제3국이 수입자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미국(수출국)에서 싱가포르(경유국)를 경유하여 우리나라(수입국)로 수입 시 원산지 증명서의 수입자란에 싱가포르 업체가 기재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나요?

A 답 변

한-미 FTA에서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 기재 항목을 모두 기재한 경우라면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고 있으며, 수입자 항목은 아는 경우에 한해 작성하며 모르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유효합니다. 다만 작성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한-미 FTA에서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을 자국영역으로 수입하여 해당 물품의 FTA 특혜관세를 세관당국에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란에는 대한민국의 수입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010 국내 양수도 거래로 원산지신고서상의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독일에서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양도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와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가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한가요?

A 답 변

독일에서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양도하여 원산지신고서의 수입자와 수입신고 시 납세의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내 거래관계자 간 계약서 등을 근거로 원산지신고서상의 물품과 수입신고하는 물품이 동일한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신청할 수 있습니다.

011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의 해석

[관련 협정 : 공통]

Q

질 의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일 계산 시 '근무일'에서 토요일이 제외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 계산 시 '근무일'은 원산지증명서 발행국의 공휴일(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을 제외한 날로 봐야 합니다.

012

동일물품에 대하여 2개의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원산지증명서 제5란에 비당사국 수출자의 정보가 미기재되어 발급이 되어 중국관세당국에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신청을 요청하였으나, 정정이 불가능하여 다른 수출자의 명의로 새로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한-중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중 FTA에는 최초 원산지증명서가 도난, 분실 또는 사고로 인한 멸실된 경우로서 이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하여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진정등본이 발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일물품에 대해서는 하나의 원본 원산지증명서만 발급 가능하며, 다른 수출대리인에 의해 두 개의 원본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013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서식

[관련 협정 : 최빈개도국특혜]

Q 질 의

수단 상공회의소에서 보내준 최빈국특혜용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서식과 다른 경우 최빈국특혜관세 적용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및 관세청 고시(「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하므로, 특혜관세적용 신청 시에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7호의6 서식 ‘영문 원산지증명서’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상이한 경우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이 곤란합니다.

014

원산지 증빙서류 등의 전자문서 보관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공통]

Q 질 의

원산지증명서를 종이서류가 아닌 이미지 파일로 보관 가능한가요?

A 답 변

수입자 및 수출자가 보관해야 할 서류 중의 하나인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광디스크·마이크로필름 등 자료전달 매체를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015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신고서 작성자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신고서는 생산자와 수출자 중 누가 작성할 수 있나요?

A 답 변

한-EU FTA상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자가 소재한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고 해당 상품의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며, 원산지 검증에 대해 원산지 증빙자료 등의 제출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갖춘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016 원산지증명서 내 제3국 발행 송장 관련 일부 누락 경우

[관련 협정 : 한·호주 FTA]

Q 질 의

원산지증명서의 제3국 발행 송장 정보가 누락된 경우에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호주 FTA에서는 비당사국 발행 송장거래를 인정하고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에서 비당사국 발행송장 거래 시에는 원산지증명서 비교(9번)란에 비당사국 발행 송장임을 기재할 수 있으며, 해당 란의 기재는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에 비당사국 발행 송장임을 기재하지 않았다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당사국 발행 송장거래의 경우 가급적 원산지증명서 비교(9번)란에 비당사국 발행 송장거래임을 기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017 원산지증명서 수입자 기재방법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란에 'VARIOUS'로 기재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서로 인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협정관세 적용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란에 'Various'라고 기재되어있다면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협정 적용하고자 하는 물품의 동일성 여부 확인이 어려워 인정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18 연결원산지증명서 발행 시기 및 제출서류

[관련 협정 : 한·ASEAN FTA]

Q 질 의

한-아세안 FTA에 따른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수입통관 후 발급 가능 여부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한-아세안 FTA에서는 연결원산지증명서는 최초수출 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경유하는 수출 당사국에 의해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로 보세상태 또는 수입신고 수리 후와 관계없이 경유국에서 발행될 수 있으나,

최초 원산지증명서상의 물품과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물품이 동일하여야 하고 수입신고 수리 후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에는 중간 경유국에서 추가가공이 없는 경우 발급 가능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에는 경유국에서의 수입자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해야 하며, 이 경우 최초의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019 원산지증명서 국가명 표기방법

[관련 협정 : 한·EUFTA]

Q 질 의

원산지 신고문안 중 원산지 표기란에는 'european'으로 표기되어있고, 별도로 Country of origin : 'FEDERAL REPUBLIC OF GERMANY'으로 원산지 국가명이 표기된 경우 인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원산지 신고문안에 작성하는 원산지는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당사자 국가의 ISO 코드, 'EU' 및 'EC'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산지 신고문안에 'european'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보정되어야 하나, 원산지신고서상에 별도로 Country of origin :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가 병기되어있어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20 원산지증명서 기재 내용의 경미한 차이 인정 여부

[관련 협정 : 공통]

Q 질 의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HS Code, Description 또는 Gross weight and Value, Number and date of invoice의 내용이 제출 서류와 상이할 경우도 경미한 차이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증명서상 기재 항목 중 HS Code, Description, Gross weight and Value, Number and date of invoice가 제출 서류상 기재된 내용과 상이하여 원산지증명서와 해당 상품과 일치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동 협정에서 정한 경미한 하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021 원산지증명서의 대리인 발급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중 FTA]

Q 질 의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의 대리인이 발행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중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대리인이 발급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22 원산지증명서의 기재 내용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농산물 및 가공농산물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한-아세안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AK Form)에는 송하인, 수하인, 운송수단, 품명, 원산지 결정기준, HS 번호 등 총 13가지 항목의 기재사항이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에 동 원산지증명서 서식과 작성요령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023 제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제조자 작성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제조자와 생산자 모두 EU 역내에 소재하고 있으나, 제조자만 인증수출자인 경우 제조자가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발행한 Packing list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또한 제조자가 EU 역내 수출자에게 발행한 Packing list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EU FTA상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자가 소재한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고 해당 상품의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며, 원산지 검증에 대해 원산지 증빙자료 등의 제출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갖춘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EU 역내 생산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한 Packing List가 우리나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발행되었다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이 가능하나, EU 역내 생산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한 Packing List가 EU 역내 수출자를 대상으로 발급되었다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024 제3국 발행 송장거래 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송장번호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비당사국에서 송장이 발행된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송장번호 및 일자 기재란(제12란)에 제3국 발행 송장번호와 수출 당사국 송장번호 중 어느 것을 기재해야 하나요?

A 답 변

비당사국 발행 송장거래의 경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12란(송장번호 및 날짜)에는 비당사국 발행 송장번호와 날짜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비당사국 송장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된 송장번호 및 날짜를 기재 가능합니다.

025 원산지증명서의 수출대리인 발급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수출대행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답

한-중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하에 그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상품이 이 장의 요건들을 충족한다는 조건하에 국내 법률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발급됩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가 수출자의 책임하에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라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26 비당사국 생산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ASEAN FTA]

Q 질 의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답 답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 당사국 내에서 생산되어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027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관련 협정 : 한·인도 CEPA]

Q 질 의

인도에서 제품 수입 시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한-인도 CEP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①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에 대해, ② 수출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③ 동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양식에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④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도수출검사위원회(Export Inspection Council), 섬유위원회(Textile Committee), 수산물수출개발위원회(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에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028 수입자 발행 원산지증명서 인정 여부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수입한 후 해당 물품이 미국에서 생산되었음을 미국 제조자로부터 확인한 경우 이를 근거로 수입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에 대해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이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춘 경우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임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해당 물품이 동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 물품임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는 사후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029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방법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RVC 40% 이상 or CTH'이고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해당 품목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CTC로 표기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정한 규정대로 작성되어야 하며,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 기준 표기는 해당 물품이 원산지 상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따른 원산지기준 표기방법(CTH)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030 비인증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EFTA FTA]

Q 질 의

한-EFTA FTA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 신고문안에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협정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한-EFTA FTA에 따른 원산지신고서는 수출 관세당국의 요청 시 원산지신고서 사본 및 동 신고서가 적용되는 각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입증할 수 있는 수출자라면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출자의 서명, 서명인의 성명을 명확하게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031 원산지신고서 인정 가능 여부(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 관련)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Delivery note에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 시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가 아닌 주문일자가 기재된 경우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EU FTA 부속서3가(원산지 신고문안)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에는 작성장소와 일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그 정보가 원산지신고서에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신고서 작성일자에 대한 정보 또는 그 작성일자가 기재되어있지 않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032 비인증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비인증수출자로부터 총 1만 유로 상당의 수입물품을 5,000유로 상당씩 총 2회에 걸쳐 각 다른 편의 항공기로 분할하여 수입할 경우에 비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일시에 송부된 단일 탁송화물의 전체 금액이 6,000유로 미만인 경우 비인증수출자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00유로 상당씩 분할된 탁송화물이 일시에 송부되지 않고 상이한 날짜에 다른 운송수단을 통하여 개별 송부되었다면 비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계약 상 단일의 송품장과 운송서류가 발급되어야 함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고자 부정적인 방법으로 분할 송부한 경우라면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033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문구 기재 여부

[관련 협정 : 한·베트남 FTA]

Q 질 의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시 소급발급 문구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협정에서 규정대로 원산지증명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가 소급발행되는 경우에는 한-베트남 FTA 제3.14조와 「자유 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 및 동 고시 [별표 3]에 따라 'ISSUED RETROACTIVELY'로 기재하여 발행되어야 합니다.

034 양도된 원산지증명서 인정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ASEAN FTA]

Q 질 의

우리나라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양도할 경우에 최종구매자(양수인)가 협정관세 적용 가능한가요?

A 답 변

체약상대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협정에서 규정하는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수의 거래를 통해 거래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일성 여부가 관련 무역서류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035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서류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선적서류(B/L)에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인정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신고서는 해당 제품이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된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작성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하증권(B/L)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상업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036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하자 인정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단순 오타자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원산지증명서는 인정가능 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 증빙서류에 오타자 등 경미한 오류가 있으나 물품의 원산지 등 실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서류의 효력 전체가 부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소, 품명 등의 단순한 오타자와 같은 경우 경미한 하자로 볼 수 있으나,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하자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기는 어려우며 사안별 구체적 서류를 통해 합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037 제3국 발행 송장거래 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제3국 발행 송장거래의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EU FTA에서는 EU 국가로부터 우리나라로 상품 수입 시 해당 상품이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직접운송 등 협정에서 정한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인 경우에도 EU 역내에 소재하며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로 해당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수출자가 송품장, 인도증서 그 밖의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히 기재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038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비당사국 생산자 앞으로 발행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의 경우 스페인 생산자가 우리나라 수입자가 아닌 스위스 수출자 앞으로 Delivery Note를 발행하여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EU 역내 수출자(스페인)가 비당사국인 스위스로 발행한 Delivery Note는 한-EU FTA에서 정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 서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039 원산지증명서 발급하여 수입된 물품의 국내 거래 시 원산지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중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받아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공급 시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확인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내국 원산지증명서로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 공급자가 제공하는 국내법령에 의거 규정된 서식입니다.

한-중 FTA에 따라 중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다른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원산지확인서상 자유무역협정 명칭은 '한-중',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충족', 원산지를 '중국(CN)'으로 기재해 발급 가능합니다.

040 원산지증명서상 생산자 기재 생략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인도 CEPA]

Q 질 의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의 생산자란은 선택(optional)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생산자란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인도 CEPA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기재 내용과 상품의 수입 절차를 수행할 목적으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용 간에 경미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 원산지증명서가 해당 상품과 사실상 일치한다면 원산지증명서를 사실상 무효화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되는 물품과 원산지증명서상의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 증명서에 선택적(optional) 기재사항인 생산자 정보가 누락되어 있더라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41

비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의 인정 여부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제조자와 수출자가 독일에 소재하며 제조자는 인증수출자이고 수출자는 비인증수출자인 경우로서 수출자가 Packing List에 독일 제조자의 인증수출자번호와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재하여 발행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또는 생산자)란 EU 역내에 소재하며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로 해당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인증수출자인 독일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042

원산지 국가명 기재방법

[관련 협정 : 한·터키 FTA]

Q 질 의

원산지 신고문안에 원산지 국가명을 형용사형인 Turkish로 표기된 경우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터키 FTA 운영지침에서는 원산지 국가를 국가명 또는 ISO 코드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터키 FTA에서 정한 원산지 신고문안을 정확하게 기재하였다면, 원산지 국가 기재란에 형용사형(Turkish)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43 제3국 발행 송장거래 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여부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에서 미국에 소재한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란에 싱가포르 수출자를 기재하고 생산자란에 미국 생산자를 기재하여 작성 및 서명한 경우 한-미 FTA에 따른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제3국 발행 송장 거래 시에도 협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관한 있는 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협정관계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수출자란에 제3국의 수출자가 기재되어있더라도 동 증명서상에 한-미 FTA에 따른 거래당사자인 미국 내 생산자와 우리나라 수입자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있고, 해당 물품의 미국내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것이 원산지증명서상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44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제3국 발행 송장거래 정보 기재방법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제3국 발행 송장거래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비당사국 운영자의 정보를 제5란(비고)이 아닌 다른 란에 기재한 경우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하는 경우, 비당사국 운영자의 법적이름과 국가가 원산지증명서의 제5번란(비고)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비당사국 운영자의 정보(비당사국 운영자의 법적이름과 국가명)를 원산지증명서의 정해진 란이 아닌 다른 란에 기재한 경우라도 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였다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원산지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협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045 수출자와 제조자가 상이한 경우 제조자 작성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제조자(인증수출자)와 수출자(비인증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인증수출자인 제조자가 발행한 Delivery Note에 제조자가 직접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또는 생산자)란 EU 역내에 소재하며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로 해당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인증수출자인 제조자가 발행한 Delivery Note에 제조자가 직접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046 비인증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독일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EU산 원산지 상품 1만 2,000유로 중 6,000유로에 대해서만 비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일시에 송부된 단일 탁송화물의 전체 금액이 6,000유로 이하인 원산지 상품의 경우 비인증수출자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에서는 단일 탁송화물의 전체 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므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거래계약 상 단일의 송품장과 운송서류가 발급되어야 함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고자 부정적인 방법으로 분할 송부한 경우라면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047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원산지 신고문안 중 인증수출자번호 기재란에 인증수출자번호와 수출자 상호를 같이 기재한 경우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신고서의 원산지 신고문안은 원칙적으로 한-EU FTA에서 정한 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인증수출자번호 기재란에 수출자 상호가 기재된 경우라도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되고 유효한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48 제3국 발행 송장 거래 시 생산자 작성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에서 EU 역내 생산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또는 생산자)란 EU 역내에 소재하며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로 해당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EU 역내 생산자가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인증수출자라면 생산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049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부가가치기준) 기재방법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원산지증명서의 제8란(원산지 기준)에 부가가치기준 작성 시 원산지 기준 충족에 필요한 원산지 기준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실제 부가가치기준을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원산지 상품의 원산지 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8란(원산지기준)에는 원산지 기준 충족에 필요한 'RVC'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RVC를 기재하여도 인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050 여러 개의 인보이스로 하나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관련 협정: 한·중 FTA]

Q 질 의

여러 개의 인보이스를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로 발급 시 일부 인보이스 번호는 원산지증명서의 제12란(송장번호 및 일자)에 기재하고 나머지는 다른 란에 기재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중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송품장번호는 제12란(송장번호 및 일자)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러 개의 송품장으로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제12번란에 모든 송품장 번호를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다른 란에 기재하여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51 원산지증명서 원산지 기준 작성방법

[관련 협정: APTA]

Q 질 의

APTA 원산지증명서에 부가가치기준으로 원산지 기준 기재 시 'B와 실제부가가치기준'이 아닌 'B'로만 기재한 경우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은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며 그 기재 내용이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과 다른 경우에는 협정 적용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052 원산지증명서 사본 보관 관련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E-mail로 전달된 원산지증명서를 출력하여 보관하여도 되나요?

A 답 변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효한 (인증) 수출자가 발급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의 스캔본을 보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정 적용 신청 시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053

생산자 발급 원산지확인서를 근거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 소명 의무자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하며 생산자가 발급한 원산지확인서를 근거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수출자에게 원산지 소명 의무가 있나요?

A 답 변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증명서 사본을 수출 당사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수입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응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소명 의무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자에게 있습니다.

054

유효기간 경과 원산지증명서 정정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공통]

Q 질 의

유효기간이 지난 원산지증명서 정정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오타자, 수량, 품목번호 등 착오, 누락, 기재오류, 또는 수출신고 수리필 증의 정정 등의 이유로 원산지증명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원산지증명서 원본, 정정발급 신청사유서, 정정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원산지증명서 정정은 가능하나, 이 경우 수입 관세당국에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55 완전생산 입증서류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수산물과 축산물의 완전생산 입증서류는 무엇인가요?

A 답 변

수산물의 완전생산 입증은 경우에는 ① 원양생산의 경우에는 원양생산 증빙자료(예시: 선박국적증명서, 원양어업허가증, 어획반입신고 확인서 등) ② 근해생산의 경우에는 근해생산 증빙자료(예시: 어업허가증, 출하확인서류, 수산물 구매확인서 등)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의 경우에는 ① 실제 생산자 및 목장의 증빙자료(예시: 조합원 확인서류, 목장등록 자료) ② 생산능력자료(예시: 연간 생산량,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 확인자료) 등으로 완전생산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56 국내 BWT 거래 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독일산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국내 BWT 거래 시 독일 수출자가 국내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한가요?

A 답 변

국내 보세창고 도착 후 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독일 수출자가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구비하고 협정에서 규정하는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57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신고서 작성자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수입물품(6,000유로 이하)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수출자가 송품장을 발행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EU FTA에서는 EU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원산지 물품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 해당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고,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며, 원산지 검증에 대해 원산지 증빙자료 등의 제출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해당 물품의 생산자 및 수출자가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하더라도 EU 역내 소재 수출자가 상기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수출자가 발행한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58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기재란 작성방법

[관련 협정 : 한·호주 FTA]

Q 질 의

한-호주 FTA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 기재란에 주소와 이메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 기재란에 수출자의 법적이름과 주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다른 서류에 의해 수출자의 정확한 정보가 확인 가능하다면 원산지증명서에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에 협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059 6,000유로 초과 단일 탁송화물 해당 여부

[관련 협정 : 한·EUFTA]

Q 질 의

이탈리아 수출자(비인증수출자)와 우리나라의 수입자 간 수출입 계약에 따라 이탈리아 내 수출자의 각 지점에서 별도의 B/L 발급하여 한국으로 물품이 송부되는 경우, 각각의 B/L 별로는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않으나 합산 시 6,000유로를 초과한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일시에 송부된 단일 탁송화물의 전체 금액이 6,000유로 미만인 경우 비인증수출자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가 탁송화물의 전체 가격이 됩니다.

각 지점별로 분할된 탁송화물이 일시에 송부되지 않고 상이한 날짜에 다른 운송수단을 통하여 개별 송부되었다면 비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거래계약상 단일의 송품장과 운송 서류가 발급되어야 함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고자 부정적인 방법으로 분할 송부한 경우라면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I

원산지 증명

060 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수출자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하고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EU FTA에서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또는 생산자)란 ① EU 역 내에 소재하며, ②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③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④ 원산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로, ⑤ 해당 소재 관세 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하더라도 EU 역내 소재 수출자가 상기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수출자가 발행한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61 원산지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원재료공급자(C사)가 생산자(B사)가 아닌 수출자(A사)에게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원산지 확인서) 제1항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하여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원산지확인서는 실제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되어야 합니다.

062 비당사국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인정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제3국 발행 송장거래시 비당사국에 소재한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는 인정가능한가요?

A 답 변

한-미 FTA 통관 관련 검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역내 생산자로부터 원산지 관련 입증 자료를 전달받아 세관에 제출 가능하거나, 역내생산자가 해당 자료를 직접 세관당국에 제출 가능한 경우 비당사국 수출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

063 6,000유로 초과 단일 탁송화물 해당 여부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EU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이 각각의 B/L 별로는 6,000유로 이하이나 같은 날 입항한 B/L의 가격 총 합계가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비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로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일시에 송부된 단일 탁송화물의 전체 금액이 6,000유로 미만인 경우 비인증수출자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일탁송화물의 전체 금액은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의 가격 합계가 탁송화물의 전체 가격이 됩니다.

다만 거래계약상 단일의 송품장과 운송서류가 발급되어야 함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인증취득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고자 부정적인 방법으로 분할 송부한 경우라면 협정관세 적용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064 국내 BWT 거래 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태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국내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후 그중 일부만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태국으로부터 발급받은 AK Form으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 중 일부를 원상태 그대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수입신고 물품이 동일하고, 협정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065 인증수출자번호 기재란에 REX 번호 기입 시 인정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원산지신고서 인증수출자번호 기재란에 REX 번호 기입한 경우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신고서의 인증수출자번호 기재란에 REX 등록수출자 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066

제3국 발행 송장거래 시 생산자 발행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제3국 발행 송장거래 시 프랑스 생산자가 발행한 Packing List 또는 Delivery Note에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 시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또는 생산자)란 EU 역내에 소재하며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로 해당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비당사국에 소재하더라도 프랑스 소재 인증수출자인 생산자가 자신이 발행한 상업서류인 인도증서 또는 포장명세서에 한·EU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067

부가가치기준 시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관련 협정 : 한·ASEAN FTA]

Q 질 의

원산지증명서의 제8란(원산지 기준)에 부가가치기준 기재 시 실제 부가가치기준이 아닌 원산지 기준을 기재하여도 되나요?

A 답 변

원산지 상품의 원산지 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8란(원산지 기준)에는 원산지 기준 충족에 필요한 'RVC'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RVC를 기재하여도 인정 가능합니다.

068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문구

[관련 협정 : 한·싱가포르 FTA]

Q 질 의

싱가포르에서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시 소급발급 문구를 'ISSUED RETROSPECTIVELY'로 날인하여 발급한 경우 날인된 소급문구는 적정한가요?

A 답 변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가 수출 시 또는 그 직후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를 소급하여 발급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소급 발급 문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가 소급하여 발급된 경우 'ISSUED RETROACTIVELY'와 'ISSUED RETROSPECTIVELY' 모두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69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 작성방법

[관련 협정 : 한·싱가포르 FTA]

Q 질 의

원산지 기준이 결합기준(부가가치기준과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싱가포르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시 원산지 기준 기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원산지 기준이 세번변경기준과 역내부가가치기준의 결합 기준인 경우, 싱가포르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은 'D'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070 원산지증명서 수입자 정보 기재방법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제2란(수하인)에 To Order로 기재된 경우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아세안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발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에 제2란에 수입자의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고 'TO ORDER'로 기재된 경우에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071 다수의 제조자가 생산한 물품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다수의 제조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한 건으로 수출신고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도 한 건으로 발급 가능한가요?

A 답 변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신고를 기준으로 작성하거나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수의 제조자가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여 하나의 수출신고서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 기준으로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072

원산지확인서 발급 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구매 시 원산지 재료임을 확인받은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에 원산지확인서 발급받은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자물증명방식의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 등을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확인서가 아닌 다른 서류나 정보를 통하여 공급받은 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동 원산지증명서 작성 후 원산지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073

원산지신고서 국가명 기재방법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한-EU FTA 원산지 신고문안에 국가명을 영국을 'Great Britain'으로, 그리스를 Greek으로 기재한 경우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EU FTA에서 정한 원산지 신고문안에 작성하는 원산지 국가명은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 당사자 국가의 ISO 코드, 'EU' 표기 및 'EC' 표기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Great Britain'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이며, Greek은 Greece의 형용사적 표기이므로 인정 가능합니다.

074 원산지신고서 국가명 기재방법

[관련 협정 : 한·EFTA FTA/한·터키 FTA]

Q 질 의

한-EFTA, 한-터키 FTA 원산지 신고문안상 국가명 기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한-EFTA, 한-터키 FTA에서 정한 원산지 신고문안에 작성하는 원산지 국가명은 협정문에 있는 당사국명, 당사국의 ISO 코드, 당사국의 형용사적 표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이 기재된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075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생산자 발행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생산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또는 생산자)란 EU 역내에 소재하며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로 해당 소재 인증수출자인 스페인 소재 생산자가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발행한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한다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076 원산지신고서 작성자

[관련 협정 : 한·EUFTA]

Q 질 의

국내 제조업자(인증수출자)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하여 수출자(비인증수출자)가 EU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제조자가 원산지신고서 발급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또는 생산자)란 수출 당사국에 소재하며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로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국내 생산자가 인증수출자라면 생산자가 EU 회원국 수입자에게 발행한 상업서류(Invoice, 포장명세서, 인도증서 등)에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077 원산지확인서의 공급받는 자

[관련 협정 : 공통]

Q 질 의

국내 수출자가 중간판매자를 통해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구매계약하고, 물품은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발급한 원산지확인서는 유효한가요?

A 답 변

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하여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하는 서류입니다.

해당 거래구조는 수출자가 중간판매자를 통해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거래 형태이나, 실제 상품이 생산자로부터 수출자에게 직접 운송된다면,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발급한 원산지확인서는 유효한 원산지확인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078 법인 단위업체의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본사가 품목별인증수출자인 경우 본사의 생산공장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서 본사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답 변

본사가 인증수출자 인증 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
12조에 따른 법인 단위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라면, 생산공장에서 본사의 인증수출
자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산공장에서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인증수출자 인증 요건을 갖추어 인증수출자 인
증신청을 하거나, 본사에서 법인 단위로 인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
위로 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079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수출자 발행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여부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비인증수출자인 생산자(헝가리)가 물품을 우리나라로 선적하고 인증수출자인 수출자
(독일)가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는 경우 협정이 적용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또는 생산자)란 ① EU 역내 수출 당사국에 소
재하며, ②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③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④ 원산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로 EU 역내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증수출자인 독일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에 한-EU FTA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였다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
로 인정 가능합니다.

080 원산지신고서 원산지 국가 표기방법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원산지 신고문안에 원산지 국가가 'EEA'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산지 신고문구 위에 Country of origin : Finland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 원산지 국가란에 원산지표시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추가로 다른 문구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인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EEA는 EU 국가뿐만 아니라, EFTA 국가를 포함한 유럽 단일 통합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상업서류에 제품의 원산지가 핀란드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원산지란에 EEA가 기재된 경우는 원산지 증명서의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81 수입자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 해당 여부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 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하는 경우 수입자가 서명권자에 해당하나요? 또한 이후 한국의 수입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사항을 미국 수출자에게 확인하여야 하나요?

A 답 변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로서,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 상품에 해당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 않거나, 해당 상품의 원산지 관련 자료의 보관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원산지 조사 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됨을 알려드립니다.

082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 기재방법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원산지 기준이 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의 결합기준인 경우 'CTC+SP'로 기재 시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 상품의 원산지 기준이 세번변경기준과 특별공정의 결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8란(원산지 기준)에는 'CTC+Specific Processes'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CTC+SP'를 기재하더라도 인정 가능합니다.

083 원산지증명서의 필수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 인정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중 FTA]

Q 질 의

원산지증명서에 소급발급 문구가 누락된 경우 또는 제3국 송장 정보가 미기재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중 FTA에서는 협정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에 사소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5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 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규정된 바와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국 발행 송장 정보, 소급발급 문구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여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084 제3국 발행 송장거래 시 EU 역내 생산자의 원산지신고서 발급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제3국 발행 송장거래에서 인증수출자인 독일 소재 생산자가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가능한가요?

A 답 변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 대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하여집니다.

인증수출자인 독일 생산자가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발행한 송품장에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085 제3국 송장거래 시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제3국 발행 송장거래 시 제3국(미국)에서 발행한 Invoice에 스페인에 소재한 생산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한 경우 한-EU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EU FTA에서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또는 생산자)란 수출 당사국에 소재하며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로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미국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에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스페인 생산자가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 신고문안, 작성장소와 작성날짜를 기재하고 서명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086

Delivery Note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 인정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독일 수출자로부터 Delivery Note에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를 받은 경우 해당 원산지 신고서로 한-EU FTA 적용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EU FTA에서는 EU 국가로부터 원산지 상품을 수입 시 수입물품이 확인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해당 물품에 대해 기재된 송품장, 인도증서(Delivery Note) 등에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증서에 한-EU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EU 역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87

제3국 발행 송장거래 시 생산자 발행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제3국 발행 송장거래 시 인증수출자인 EU 역내 생산자가 발행한 Packing List에 생산자가 직접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또는 생산자)란 EU 역내에 소재하며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로 해당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비당사국에 소재하더라도 EU 역내 소재 인증수출자인 생산자가 자신이 발행한 상업서류인 포장명세서에 한-EU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088 비당사국 수출자 발행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독일에 소재한 수출자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미 FTA 통관 관련 검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역내 생산자로부터 원산지 관련 입증 자료를 전달받아 세관에 제출 가능하거나, 역내생산자가 해당 자료를 직접 세관당국에 제출 가능한 경우 비당사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도 인정 가능합니다.

089 연결원산지 증명서의 유효성

[관련 협정 : 한·ASEAN FTA]

Q 질 의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 시 인도네시아에서 발급된 C/O를 근거로 싱가포르에서 발행한 연결원산지 증명서(Back-to-Back C/O)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아세안 FTA 제7조 제2항(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수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협정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라 유효하게 발급된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090 Certificate of Processing의 유효성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중국 수출업체가 유럽에서 조달받은 부품을 조립하여 우리나라로 수출 시 Certificate of Processing을 발급한 경우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중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기타 다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중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Certificate of Processing으로는 한-중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091 B/L 양수도 거래 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수입자

[관련 협정 : 공통]

Q 질 의

국내 양도받은 물품을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상 수입자를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또는 수입신고서의 수입자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수입자 상호는 동 신청서의 작성방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입자 상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092 마른김의 원산지 충족 입증자료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마른 김에 대한 수매확인서가 없는 경우 마른 김의 원산지 입증 가능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답 변

마른 김에 대한 수매확인서가 없는 경우 마른 김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서는 마른 김이 국내에서 완전 생산되었음을 입증 가능한 서류(예: 어업권행사계약서, 출하확인서, 양식허가증 또는 물김 생산 입증서류, 수산물 매매기록대장 등) 등이 필요합니다.

093 제3국 송장거래 시 생산자 원산지신고서 인정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제3국 발행 송장거래 시 이탈리아 생산자가 Packing List에 Invoice customer를 스위스 수출자로 기재하고 우리나라 수입자를 수하인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또는 생산자)란 EU 역내에 소재하며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로 해당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탈리아 소재 인증수출자인 생산자가 우리나라 수입자를 수하인(Consignee)으로 발행한 포장명세서에 한-EU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094 한-호주 FTA 적용 조건 및 원산지증명서 작성 주체

[관련 협정 : 한·호주 FTA]

Q 질 의

한-호주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 및 원산지증명서 작성 주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호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상품이 한-호주 FTA 적용을 위해서는 ① 동 협정에서 정한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일 것, ② 동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기준 충족, ③ 한-호주 FTA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신청에 의해 호주상공회의소, 호주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④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호주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그리고 호주의 경우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신청에 의해 호주상공회의소, 호주산업협회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095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

[관련 협정 : 한·ASEAN FTA]

Q 질 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선적 전, 선적 시, 선적 직후(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의 원산지확인서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 기재 내용 입증자료 등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선적 전, 선적 시, 선적 직후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발급'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질 의

제3국 발행 송장 거래 시 미국 내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으나,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란에 싱가포르 수출자를 기재하고 생산자란에 미국 생산자를 기재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또한 이 경우 협정적용신청서상 누구를 수출자로 기재하여야 하나요?

A 답 변

제3국 발행 송장 거래 시에도 협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권한 있는 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수출자란에 제3국의 수출자가 기재되어있더라도 동 증명서상에 한-미 FTA에 따른 거래당사자인 미국 내 생산자와 한국 수입자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물품의 미국 내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것이 원산지증명서상으로 확인 가능하다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협정적용신청서 작성방법에서는 수출자의 정보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국 발행 송장거래인 경우에도 협정적용신청서의 수출자란에는 체약상대국(미국) 소재 수출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097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 작성 원산지증명서의 인정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오스트리아 생산자가 한국 수입자에게 생산물품을 선적하고 스페인에 소재한 수출자(인증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또는 생산자)란 EU 역내에 소재하며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로 해당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스페인 수출자가 발행한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한-EU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098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시 기재 문구

[관련 협정 : 한·베트남 FTA]

Q 질 의

원산지증명서 출력오류로 재발급 시 'CERTIFIED TRUE COPY' 기재되어 발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베트남 FTA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도난·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12번란에 'CERTIFIED TRUE COPY'를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12번란에 'CERTIFIED TRUE COPY'가 기재되어 발급되었다면, 동 협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것입니다.

099 원산지신고서에 원산지 국가 기재방법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원산지 신고문안상 원산지 국가 기재란에 'CE'가 기재된 경우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귀하가 제시한 원산지신고서의 국가 기재란에 기재된 'CE(Conformity European)'는 EU와 EFTA 국가에 적용되는 유럽공동체인증 표시로 EU 국가를 의미하는 표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원산지신고서의 원산지 국가 기재란에 'CE'가 기재된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의 정정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100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 기재방법

[관련 협정 : 한·베트남 FTA]

Q 질 의

원산지 기준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CTC'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는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서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중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CTC'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CTC'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101

협정적용신청서 작성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기재방법

[관련 협정: 한·미 FTA]

Q 질 의

제3국 발행 송장거래로 미국에서 포괄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증명서 발급번호 없이 발급한 경우 협정적용신청서상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란에 제3국에서 발행한 송장번호를 기재할 수 있나요?

A 답 변

협정적용신청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기재란은 자율발급인 경우 해당 서류 번호를 기재하고, 해당 서류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 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국 발행 송장거래로 계약상대국에서 발급한 송품장 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3국 발행 송장번호를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02

협정적용신청서 작성 시 수출자 기재방법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하나의 선적건(B/L)에 각각 다른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두 개의 원산지신고서가 있고 그중 한 생산자(인증수출자)가 우리나라와 계약한 수출자인 경우 협정적용신청서의 수출자란 기재방법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EU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생산자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생산자 중 한 곳이 우리나라와 계약한 EU 역내 소재 수출자인 경우 협정적용신청서의 수출자란에는 우리나라와 계약한 수출자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103

제3국 발행 송장 거래 시 비당사국 정보 기재 여부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에서 원산지증명서에 비당사국 정보(회사명, 국가 등)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따라 비당사국에서 송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5란에 비당사국 송장발행 회사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동 협정 제 3.21조에서는 원산지증명서와 세관 서면 신고서 간 불일치 같은 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 관세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당사국 송장 거래이지만 원산지증명서에 비당사국 송장 발행회사의 정보가 미기재된 경우 동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4

원산지증명서 기재방법

[관련 협정 : 한·칠레 FTA]

Q 질 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의 경우 45% 또는 집적법의 경우 3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일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제7란 기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원산지 기준이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결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6란에는 'B'를 기재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제7란에는 공제법의 방법으로 부가가치계산을 한 경우에는 'BD'를 직접법의 방법으로 부가가치를 계산한 경우에는 'BU'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105

제3국 발행 송장거래에서 부가가치 계산에 적용되는 조정가격 산정방법

[관련 협정: 한·미 FTA]

Q 질 의

제3국 발행 송장거래에서 부가가치기준 계산 시 조정가격을 제3국(수출국)에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또는 계약상대국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제3국 발행 송장거래의 경우에도 한-미 FTA 역내가치포함비용 계산을 위한 조정가치 산정 시에는 제3국에서 발생한 조정가치가 아닌 계약상대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조정가치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106

원산지 기준 기재방법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원산지 기준이 가공공정 기준일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specific process의 약자인 'SP'로 기재할 수 있나요?

A 답 변

원산지 상품의 원산지 기준이 특별공정기준인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 기재란에 'specific process' 또는 'SP' 모두 기재 가능합니다.

107

수돗물의 원산지 입증 자료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수돗물의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A 답 변

수돗물의 한국산 입증서류로는 수돗물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추출되었다는 입증서류, 수돗물 공급 내역 자료(예: 상수도 사용영수증 등) 등으로 입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8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

[관련 협정: 한·미 FTA]

Q 질 의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A 답 변

한-미 FTA에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국 내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상품의 원산지 증명에 관한 자료의 보관, 미국 세관의 요청에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한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해 원산지 증빙자료 등의 제출이 가능하다면 원산지증명서 발행 주체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9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신고서 수출자 기재방법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1란(수출자 상호 등)에 수출자를 기재하고 제11란(수출자 신고)에는 생산자를 기재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발급신청 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의 제11란의 수출자는 제조업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면 원산지증명서의 제11란의 수출자 신고란은 생산자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110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수입자’ 기재방법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제3국 발행 송장 거래로 미국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당시 수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수입자’ 정보를 필수로 기재하여야 하나요?

A 답 변

한-미 FTA 협정문 제6.15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아래 8가지입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따라 수입자 정보는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해 기재하면 됨을 알려드립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필수기재사항

- ① 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 ②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④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 ⑤ 물품의 HS 품목번호 및 품명
-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⑦ 증명일자
- ⑧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111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기재란 작성방법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원산지증명서 제1란 수출자 기재란에 실제 수출자(인보이스 발행자)가 아닌 대외무역사업자(수출신고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등의 대행자)가 기재된 경우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대외무역사업자(수출대행자)가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도 인정 가능하며, 원산지증명서 제1란 수출자란에 수출대행자가 기재되고, 제13란에 수출대행자가 서명하였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12

비인증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비인증수출자인 생산자가 인증수출자인 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사용하여 Packing List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한가요?

A 답 변

한-EU FTA상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①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사후검증을 위한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자(수출자 또는 생산자)
- ② 상품의 원산지를 수출자가 소재한 관세당국에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있는 자
- ③ 수출자가 소재한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자

따라서 인증수출자가 아닌 생산자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는 발급 권한이 없는 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113

제3국 발행송장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의 인정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발행 운영인의 법적 이름과 국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중 FTA 협정문 제3.25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의 요건들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정문 관련 규정에 따라 제3국 송장발행 원산지증명서의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 이름과 국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동 원산지증명서상 오류에 대해 정정된 원산지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114 소급발급 문구 기재방법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소급발급' 문구를 '제12란'에 기재하고 있는 반면, 상대국에서 '제4란'에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유효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한-아세안 FTA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출물품에 대하여 선적한 후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선적 후 발급하였음을 나타내는 문구(ISSUED RETROACTIVELY)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어느 부분에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산지증명서 제4란에 작성되었다는 것만으로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15 법인사업자 분할 시 인증수출자 지위 인정 가능 여부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업체별 인증수출자인 법인이 분할되어 신규 사업장이 신설된 경우 신규 사업장이 기존 법인의 기존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A 답 변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인증사항 변경신고) 제3항에 따라 법인 사업자가 기업의 분할 등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추가되어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신규 사업장에 대해 새로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116

원산지확인서 ‘공급자’ 기재방법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본사와 공장이 개별 사업자등록번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산지확인서 발급 시 ‘공급자’란에 어느 사업장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나요?

A

답 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원산지 확인서) 제1항에 의해 원산지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하는 서류로서 물품의 실제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작성하고 기재됨을 알려드립니다.

117

제3국 발행 송장거래 시 B/L상 송하인

[관련 협정: 한·미 FTA]

Q

질 의

제3국 발행 송장거래에서 미국에서 발행한 B/L에 일본 업체가 ‘SHIPPER’로 기재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한가요?

A

답 변

B/L상 ‘SHIPPER’는 ‘화물을 선박으로 운송하는 자’를 의미하며, 한·미 FTA에서는 ‘SHIPPER’가 계약상대국의 ‘수출자’이어야 하는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정의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B/L의 ‘SHIPPER’ 국적과 상관없이 물품을 수출하거나 생산한 자가 수출 당사국 업체이고 동 업체가 원산지를 증명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18

B/L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한 경우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

[관련 협정 : 한·EFTA FTA]

Q

질 의

제3국 발행 송장거래에서 선사가 발행한 B/L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선사에서 발행한 B/L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 가능한 상업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19

국내 BWT 거래 시 C/O 수입자와 실제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방법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국내 보세창고거래(BWT)에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입자와 최종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보세창고거래 특성상 원산지증명서상 기재된 최초 수입자와 최종 수입자가 상이하더라도 관련 무역서류를 통해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상 물품과 실제 거래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된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20

비당사국 수출자 발행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관련 협정 : 한-EU FTA]



질 의

제3국 발행 송장거래에서 비당사국 수출자가 송장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 변

우선 수입물품에 대하여 한-EU FTA의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 ②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 그리고, ③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원산지 신고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상 EU 역내 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당사국 수출자가 발행한 송품장에 비당사국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21

제3국 발행 송장에 원산지 신고문안 작성한 경우 인정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EU FTA]



질 의

제3국 발행 송장거래에서 스위스 업체가 발행한 제3국 송품장에 독일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 변

스위스 업체가 발행한 제3국 송품장상에 독일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한 경우, 한-EU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신고서로 작성요건을 충족한다면 형식적으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및 협정에 규정한 요건 충족 여부 등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2

수출 후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하여 소급발급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이후 계약상대국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해당 물품 수출 당시에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어도 원산지신고서 작성 당시에 인증수출자이면 소급하여 작성·발급한 해당 원산지신고서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후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3

수입자의 원산지증명서 원본 보관 의무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협정세율 적용 후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요?

A 답 변

수입자가 보관해야 할 서류 중 하나인 원산지증명서는 사본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124

제3국 발행 송장 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네덜란드에서 생산된 물품을 미국 달러를 통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답 변

우선 수입물품에 대하여 한-EU FTA의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 ② 원산지가 해당 계약상대국일 것, ③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것 그리고, ④ 양 당사국 간 직접운송 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양허대상 품목이고 네덜란드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인 경우 EU 역내 수출자가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동 제품이 EU 역내 수출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될 경우 협정관세가 적용됩니다.

125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말레이시아에서 수출되어 싱가포르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말레이시아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싱가포르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 발급 가능한가요?

A 답 변

협정 당사국인 경유국에서의 연결원산지증명서는 협정 제7조(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유국에서 발행될 수 있습니다.

126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직접운송 증빙자료 필요 여부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연결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 경우 직접운송과 관련하여 통과선화증권 및 제3국 비가공 증명서 또한 구비해야 하나요?

A

답 변

한-아세안 FTA 협정 제7조 규정에 따라 발급된 연결원산지증명서는 통과선화증권 및 비가공증명서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나 경유국에서 발급된 운송서류 등은 구비해야 합니다.

127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 혼재 시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관련 협정: 한·EFTA FTA]

Q

질 의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하나의 원산지신고서에 혼재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와 비원산지 제품이 하나의 송품장에 혼재되어 각각의 원산지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는 경우 한-EFTA FTA에서 규정하는 다른 요건을 모든 충족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128

원산지증명서의 생산자와 실제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인정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중 FTA]

Q

질 의

원산지증명서와 실제 '생산자'가 불일치하게 기재된 경우 협정관계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일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규정한 대로 작성되어야 하며,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의 제2란(생산자)에는 실제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29 원산지증명서 보관 관련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보관과 관련하여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본을 보관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수입자는 개별 협정 및 FTA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30 수출자와 생산자 상이 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네덜란드 생산자가 생산한 네덜란드산 물품을 독일에 소재한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EU FTA는 상품무역과 관련된 양 당사자를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당사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U 역내 수출자(독일 수출자)가 EU 원산지 제품(네덜란드산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동 협정이 적용되므로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구비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물품의 수출입금액이 6,000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받은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며, 인증수출자인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도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31 인증수출자 인증방법

[관련 협정 : 공통]

Q 질 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지 여부는 인증수출자 인증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중 어떤 유형의 인증을 신청할지는 다음의 인증 요건과 해택을 참고하시고, 사전에 인증신청 관할 세관의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길 권해드립니다.

구분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물품	모든 품목	특정 품목(HS 6단위)
유효기간	5년	5년
요건	• 원산지관리 전산시스템, 업무매뉴얼 •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 C/O 작성대장 비치 관리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 법규준수도 평가	•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 C/O 작성대장 비치 관리 •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132 제3국 발행 송장거래 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ASEAN FTA]

Q 질 의

제3국 발행 송장거래 시 수입신고서의 수출자와 원산지증명서의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수출자는 동일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한-아세안 FTA 협정은 제3국 송장발행의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제3국 발행 송장 거래임이 확인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상 수출자가 상이하여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므로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발행 송장 대상'임을 명시하고 발행회사, 국적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33

B/L 양수도 거래 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국내 B/L 양수도 거래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관련 무역서류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 상의 물품과 거래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 체약당사국 간 직접운송 될 것

134

작성일자가 누락된 원산지신고서의 인정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인증수출자에 의해 소급발급된 원산지신고서에 작성일자가 누락된 경우 해당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신고서는 협정에서 규정한 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송품장과 소급 발급된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일자가 서로 상이한 경우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일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135

제3국 발행 송품장상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정보 기재 여부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제3국 발행 송품장에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A

답 변

제3국 발행 송장거래 시에도 협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관한 있는 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3국 발행 송장에 '원산지증명서 작성자 정보' 기재 여부는 송품장 작성자가 스스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136

수출자 정보가 추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제3국 발행 송장거래에 해당하지 않지만, 원산지증명서 제5란(비고)란에 수출자의 정보가 추가로 기재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규정한 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산지증명서 필수기재 사항이 모두 기재된 상태에서 수출자 정보가 별도란에 추가 기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협정관세를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출자 정보가 별도 기재된 사유에 대한 소명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한·중 FTA의 경우 CO-PASS(관세청 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 시스템)를 통해 중국 발급기관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37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생산자 발행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독일에 소재하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인증수출자인 생산자가 발행한 Packing List에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독일의 생산자가 독일 관세당국으로부터 한-EU FTA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생산자라면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138

선하증권에 원산지 신고문안 작성 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인증수출자가 선하증권상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협정 규정에 따라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하증권(B/L)은 원산지 신고를 작성할 수 있는 상업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39

상호가 변경된 경우 이전 상호로 발행된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기업의 인수합병으로 기업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이전의 상호명으로 발급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기업의 인수합병 전에 구매계약이 완료되고, 원산지신고서 등 모든 무역서류가 발행되어 수출이 완료되었다면, 수입신고 당시 인수합병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상호명으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병 전후로 기업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입증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0

연결원산지증명서 직접운송 충족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ASEAN FTA]

Q 질 의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인도네시아에서 발급된 C/O를 근거로 싱가포르에서 발행한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로 통과선증권과 비가공증명서 없이 직접운송 충족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아세안 FTA 제7조 제2항(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수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협정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라 유효하게 발급된 연결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운송 충족과 관련해서는 통과선증권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나 경유국에서 발급된 운송서류 등은 구비해야 합니다.

141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하고 이탈리아 수출자가 발행한 송품장에 프랑스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와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거래당사자인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인 송품장상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인 생산자가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에만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아울러 원산지 결정기준 및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42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신고서 작성자 및 기재사항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EU 역내국에 소재한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A 답 변

한-EU FTA상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①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사후검증을 위한 요청에 응할 수 있는 자(수출자 또는 생산자)
- ② 상품의 원산지를 수출자가 소재한 관세당국에 입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있는 자
- ③ 수출자가 소재한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자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EU 역내 수출자와 생산자 모두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143 제3국 발행 송장 거래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태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체코에 소재한 수출자와 우리나라 수입자 간 계약에 따라 수입 시 한-아세안 FTA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제3국 송장발행의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가 인정되므로, 체코에 소재하는 업체를 제3국 수출자로 하는 거래는 가능합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발행송장 대상'임을 명시하고 발행회사, 국적 등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태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태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 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44 수출국으로 재수출 시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필리핀(A)-한국(B)-필리핀(C)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필리핀 A사가 발행한 AK FORM을 근거로 한국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 발급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증명서 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등은 한-아세안 FTA 협정문 및 협정 당사국(한국, 아세안 10개국)간 합의한 내용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국으로부터 특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 연결원산지증명서는 최초 수출국과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중간 경유국에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로 우리나라에서 최초 수출국으로 다시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145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관련 협정: 공통]



질 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이하고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 변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정하는 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 상품을 생산자별 구분하여 기재하거나 합쳐서 하나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협정에 따라 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2란(생산자)에는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 추가적인 생산자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146

제3국 발행 송장거래 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APTA]



질 의

APTA 협정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한국으로 직접운송하는데, 인보이스는 제3국(싱가포르)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APTA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 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서는 제3국 발행 송장거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제2란(수입자)에 주문용(to order)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147 스캔된 원산지증명서 원본 인정 여부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한 것을 원본으로 인정하나요?

A 답 변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한 것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48 인증수출자 자율점검 제출기한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인증 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제출기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인증수출자 인증 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회차 및 2회차의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회차 : 인증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2. 2회차 :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이내

149

제조자의 주소, 대표자 변경 시 품목별 인증수출자 변경신고 대상인지 여부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제조자의 주소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인증받은 물품의 BOM이나 제조공정 상에는 변경이 없을 때 품목별 인증수출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인증수출자의 상호·주소·대표자의 성명·원산지관리전담자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조자의 주소·상호 또는 생산공장의 변경은 인증 변경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50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소급발급 문구 기재 기준

[관련 협정: 최빈개발도국특혜]

Q 질 의

방글라데시산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는데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후에 발급되는 경우, 소급발급 문구를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답 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위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선적 후에 발급되더라도 소급발급 문구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는 수입신고 시에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질 의

원산지 신고문안이 '명백한 형식적 오류'인 경우에 원산지신고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한-EU FTA 여행자휴대품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에서는 아래의 경우를 명백한 형식적 오류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명백한 형식적 오류 예시

- ① 단어의 철자를 잘못 작성한 경우
(예) 'these products'를 'these produtcs'로 작성한 경우
- ② 협정문에서 정한 단어 이외의 단어를 사용한 경우
(예) 'these products'를 'these goods'로 작성한 경우
'these products are'를 'this product is'로 작성한 경우
- ③ 단어순서 또는 항목 위치가 바뀌어 작성한 경우
(예) 인증수출자번호·제품의 원산지를 다른 위치에 기재한 경우
- ④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신고문안을 수기로 작성하면서 소문자로 작성하는 경우
- ⑤ 원산지 신고문안의 각주 또는 설명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예) '(customs authorisation No)', '(Place and Date)'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기 예시를 확인하여 귀하가 질의한 내용이 원산지신고서의 명백한 형식적 오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52

인증수출자번호가 다른 곳에 기재되어 있는 원산지신고서 인정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인증수출자번호가 원산지 신고문안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송품장의 하단 또는 다른 위치에 독립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한지 문의 드립니다.

A 답 변

인증수출자번호는 원산지 신고문안 내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증수출자번호를 원산지 신고문안에 기재하지 않고 별도로 기재한 경우라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53

원산지 신고문안 국가명 표기방법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원산지 신고문안상 원산지 표기를 'THE EUROPEAN UNION'이 아닌 'EUROPEAN UNION'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규정에서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 원산지 국가란에 원산지 국가 표기 시 EU, THE EUROPEAN UNION으로 기재가능합니다.

그러나 EUROPEAN UNION으로만 기재한 경우라도 상품의 원산지 국가가 EU임이 확인 가능하므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4

수입자가 아닌 자에게 발행한 송품장의 원산지증명서 효력 인정 여부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프랑스 수출자(인증수출자가 아님) B가 프랑스 내 납품업체 C(인증수출자)에게서 물품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 C가 B에게 발행한 상업송장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기재하여도 C0가 유효한가요?

A 답 변

우리나라 소재 수입자가 아닌 EU 소재 수출자에게 발행된 원산지신고서로는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155

하나의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상 역내 다른 국가가 표기된 경우 유효성 여부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유럽의 의료장비 구성품 수출업체(인증수출자)가 발행한 C/O에는 다수의 제품과 각각의 원산지(벨기에, 독일, 영국)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원산지신고서에 EU 회원국 내 다른 국가의 원산지 상품(독일, 영국)이 표기되어 있어도 되나요?

A 답 변

한-EU FTA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또는 생산자)란 EU 역내에 소재하며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로 해당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EU 역내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에 EU 회원국 내 다른 국가의 원산지 상품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가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56

선하증권에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EUFTA]

Q

질 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는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상업서류로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선하증권(B/L)은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운송서류로 송품장, 인도증서와는 달리 원산지 상품에 대해 상세히 충분히 기술하고 있지 않아 원산지 증명의 목적상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산지 신고를 작성할 수 있는 상업서류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57

인도증서(Delivery Note)에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EUFTA]

Q

질 의

독일의 인증수출자가 인도증서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인가요?

A

답 변

인증수출자 지위를 획득한 독일 업체가 인도증서(Delivery Note)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8 원산지신고서 국가명 기재방법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독일의 인증수출자가 송품장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고, 각 물품별로 +(국가명 등)을 기재한 경우에는 원산지 제품이고, -(국가명 등)을 기재한 경우에는 비원산지 제품이라는 내용을 별도로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고 있는 경우 협정세율 적용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신고서에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혼재되어 기재된 경우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명확하게 구분 표시된 경우 원산지 상품에 대해서는 협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제10란(원산지)는 한-EU FTA 적용 물품으로 원산지가 EU 당사국 내 어느 한 국가가 아닌 경우 'EU'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159 인보이스에 수출자명이 스탬프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C/O의 유효성 여부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인보이스에 수출자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스탬프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유효한 FTA C/O로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신고서에 수출자의 상호를 확인할 수 있는 스탬핑이 포함되어 있고, 동 수출자의 소속 직원 등이 수기 서명한 것이라면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0

원산지신고서의 'UE' 표기의 유효성 여부

[관련 협정 : 한-EUFTA]

Q 질 의

원산지 신고문안 전체가 프랑스어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만 'UE' 표기가 유효한 것인지, 영문 문언이지만 국가명만 'UE'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유효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A 답 변

EU 측 각당사자 언어 협정문에 표현된 'EU' 표기도 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할 수 있는 원산지표시이며, 프랑스어 한-EU 협정문에 표현된 'EU' 표기인 'UE'를 원산지신고서에 기재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61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수출자 작성 원산지증명서의 인정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EUFTA]

Q 질 의

독일의 인증수출자가 영국산 제품(한-EU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을 구매하여 영국에서 선적, 한국으로 직접운송하는 경우 독일에서 작성된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안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또는 생산자)란 EU 역내에 소재하며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결정·입증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에 관한 모든 기록을 보관하고 원산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로 해당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독일 수출자가 ① 자신이 발행한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와, ② 영국 생산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안과 작성장소,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됩니다.

162 중계무역 시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체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중계회사인 노르웨이 업체가 스페인산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해당 업체가(선적 서류도 발행) 인보이스 상에 선적지와 원산지를 스페인으로 표기한다면 유효한 원산지 신고서인가요?

A 답 변

EU 회원국인 스페인을 원산지로 하고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운송된 경우라면, 스페인에 소재하며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수출자(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3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후 C/O 소급 발급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바비큐 그릴을 수입하고 있는데, 폴란드 수출업체(인증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수입 건에 대해 C/O 발급을 요청한 경우, C/O 소급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신고서가 관련된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습니다.

164

미국 주(state)의 원산지표기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미 FTA]

Q 질 의

해외 직구로 구매한 1,000달러 미만의 미국산 와인에 'Made in California'라고 표기된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협정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Made in California'는 국가명이 아닌 행정구역 명[미국 캘리포니아 주(州)]를 원산지표시한 것으로서, 대외무역법령상의 적절한 원산지표시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해외 직구한 와인이 원산지표시 면제가 가능한 자가소비용 물품에 해당된다면 상기의 원산지표시로서 미국산임을 입증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5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인도네시아 수출자에게서 수취한 C/O에는 수출자의 서명 또는 발행기관의 인장이 없는데 유효한 C/O로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인도네시아 간 전자적 원산지정보교환(EODES) 구축에 따라 한-인도네시아 간 EODES가 시행된다라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와 수입자의 C/O 원본 보관의무는 이전과 같이 한-아세안 FTA를 준수해야 합니다.

즉 특혜관세 대우의 신청을 위해서 수입자는 요구받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수입국 당사국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해당 원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관대상이 되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에는 발급기관의 직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66

제3국 발행송장 정보가 없는 C/O의 유효성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제3국 발행송장 정보가 없는 원산지증명서도 한-아세안 FTA 적용 신청 시 유효한가요?

A 답 변

한-아세안 FTA에서는 “상업송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회사 또는 그 회사의 계정으로 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발행송장 대상’임을 명시하고 송장을 발행하는 회사의 명칭 및 국적과 같은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국에서 상업송장이 발행된 경우에는 상기 ‘제3국 발행송장’ 정보가 명기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 적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67

EODES 시행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 여부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CO-PASS에서 원산지 내역이 조회가 된다면 수입통관 시 또는 협정 적용 사후신청 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수입신고 시 또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포함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입신고 시 :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수입신고서

* 사후적용 시 :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원산지증명서 원본,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원산지 증빙 서류

이때 체약상대국과의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EODES)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제출생략이 가능합니다.

168

인증품목의 원산지 기준 변경 시 재인증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인증수출자 갱신을 하려는데 부가가치기준의 품목 인증수출자 자격에서 세번변경기준 품목으로 변경 갱신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품목별 인증을 받은 품목이 원산지 기준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신규로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169

제3국 송장 발행 시 원산지증명서 기재방법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거래관계가 아래와 같을 때, 원산지증명서의 제9란(송장 FOB) 기재 시 참조해야 하는 송장과 역내부가가치 계산을 위해 참조해야 하는 송장(FOB)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인도네시아 수출자(A), 싱가포르 송장 발행자(B), 싱가포르 회사의 한국 지사(C), 한국의 수입자(D)
- A에서 B에 발행한 송장
- B에서 C에 발행한 송장
- C에서 D에 발행한 송장

A

답 변

제9란에는 인도네시아 A사 또는 싱가포르 B가 발행한 송장의 FOB 가격이 기재될 수 있으나, 역내부가가치(RVC) 계산을 위한 FOB 가격은 상기 인도네시아 A사가 싱가포르 B사에 발행한 송장상의 FOB 가격입니다.

Q 질 의

인도네시아 원산지 물품에 대해 싱가포르 수입자 앞으로 발행된 증명서를 토대로 싱가포르에서 한국 수입자 앞으로 최종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를 발급할 경우, 아래의 서류 외에 구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1. 싱가포르 발행 back to back 증명서
2. 싱가포르-한국 직접운송 증빙서류
3.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기타 서류

A 답

한-아세안 FTA상 연결원산지증명서는 최초 수출 당사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경유하는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로서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물품이 그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수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연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협정의 부록 원산지 증명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①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것
- ② 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할 것
- ③ 제14조에 규정된 검증절차가 적용될 것

상기 조건에 따라 경유국에서 발급된 연결원산지증명서라면 경유국에서의 상품이 조작되지 않았음(직접운송)을 확인하는 서류로 인정될 수 있으며 동 서류와 귀하가 제시하는 다른 서류를 근거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1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와 상업송장 수입자가 상이한 경우 인정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ASEAN FTA / 한·베트남 FTA]

Q 질 의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란에 은행이 기입되어 있고, 상업송장, 선하증권에는 수입자명이 기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는 송품장에서 확인 가능한 실제 수입자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수입자가 아닌 자를 기재한 경우라도 수입신고 시 제출되는 무역서류 등을 통해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과 원산지증명서의 물품이 동일함과 원산지증명서의 실제 수입자 확인이 가능하다면 원산지증명서가 무효화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72

원산지신고서 작성서류

[관련 협정 : 한·영 FTA]

Q 질 의

저희는 영국산 엔진 완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로, 일반적으로 저희 본사의 전산시스템상에서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가 발행이 되면 인증수출자번호 기재하여 제출해왔는데 현재 전산프로그램이 부득이하게 업데이트 진행 중이라 정상화될 때까지 별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수출입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한·영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동 금액 이하인 경우 비인증수출자도 작성 가능),

상기 (인증)수출자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상기 원산지신고서 작성은 귀하가 제시한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도 상기 조건에 맞게(예 : 별도로 작성된 인보이스 등에 타자로 원산지 신고문안을 쳐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73 인증수출자 지위 부여 권한

[관련 협정 : 한·영 FTA]

Q 질 의

덴마크(EU 인증수출자) 업체가 영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번호를 부여받아 한-영 FTA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한-영 또는 한-EU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은 수출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출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인증수출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원산지신고서에는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덴마크 수출자가 영국 관세당국에 의해 인증수출자 지위를 받을 수 없습니다.

174 한-EU 인증수출자 지위가 한-영 FTA에서 유지되는지 여부

[관련 협정 : 한·영 FTA]

Q 질 의

영국 생산물품을 덴마크 수출자(인증수출자)로부터 수입해 왔는데 2021.1.1.부터 기존 원산지 신고문안과 다소 다르게 작성된 경우, 해당 원산지신고서로 한-영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영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번호(아래 번호 체계 참조)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6,000유로 초과되는 원산지 상품에 대한 한-영 FTA 적용이 가능하며, 다른 EU 국가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번호로는 한-영 FTA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영 FTA가 발효된 이후에는 영국 관세당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로 한-EU FTA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영국의 인증수출자번호 체계

(번호체계) 국가코드(2)/인증번호(5)/인증연도(2)

(예시) GB 12345/21

Q 질 의

영국산 물품이 EU 회원국을 경유하여 한국에서 보세창고도거래(BWT)를 통해 수입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영 FTA 특혜대우는 양 당사자 간 또는 EU를 경유하여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원산지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EU를 경유하여 당사국 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원산지 제품에 대한 특혜대우는 협정 발효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영역(비당사국 영역)을 통해 운송되는 경우로서 협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 관련 증거가 제시되어야 특혜대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EU를 경유하여 수출되는 제품, 또는 영국에서 EU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원산지 제품에 대한 직접운송 인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제품이 경유하는 EU 국가의 세관 통제하에 있어야 하며, 해당 경유국에서 수입통관 되는 경우 직접운송 불인정
- ② 경유하는 EU 국가에서 탁송품의 분리, 라벨링 또는 마킹 등의 작업이 허용될 수 있음.
- ③ 수입국 세관의 요구 시 상기 ①, ② 요건 및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따라서 질문에서 제시된 보세창고도거래(BWT 거래)가 상기 기준에 부합한다면 해당 제품은 한-영 FTA 제13조의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176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관련 협정 : 한·인도 CEPA]

Q 질 의

인도에서 발급하는 C/O에 날인, 서명 없이 QR 코드만 표기되어 있는데 협정 적용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인도 측이 원산지증명서 전자신청·발급 시스템(<https://coo.dgft.gov.in>)을 구축하면서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일부 변경하고 그 내용을 2020년 3월 2일 우리 측에 통보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체계가 변경되고 QR 코드 날인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인도 측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는 상기 시스템에 접속해 발급번호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니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7 QR 코드 원산지증명서에 발급기관 인장 및 서명 기재 필수 여부

[관련 협정 : 한·인도 CEPA]

Q 질 의

발급받은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에는 QR 코드가 있고 해당 코드로 조회도 되는데 발급기관의 인장 및 서명이 같이 기재되어야 유효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인도 측이 원산지증명서 전자신청·발급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일부 변경하고 그 내용을 지난 2020년 3월 2일 우리 측에 통보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체계가 변경되고 QR 코드 날인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인도 측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상기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인도 측 원산지증명서 발급 확인 시스템(<https://coo.dgft.gov.in>)에 접속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8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부가가치기준) 기재방법

[관련 협정 : 한·인도 CEPA]

Q 질 의

원산지증명서 제10란에 역내가치포함비율을 기재할 때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기재된 명문 퍼센트를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충족한 퍼센트를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역내가치포함비율은 원산지 충족을 위해 필요한 'RVC X%'로 기재하면 되지만, 동 지침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조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같은 협정 제4.7조에서도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용 간에 경미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 원산지증명서가 해당 상품과 사실상 일치한다면 원산지증명서를 사실상 무효화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상품이 협정에 따라 실제로 충족하고 있는 'RVC X%'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이 인정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79

제3국 송장 발행 시 원산지증명서 기재방법

[관련 협정 : 한·인도 CEPA]

Q 질 의

한국산 물품에 대해 독일의 중간거래자(제3국 송장 발행자)가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11란에 한국의 수출자 인보이스 정보를 적어야 하는지, 제3국 송장 정보를 적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한-인도 CEPA 또는 국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제3국 송장 거래의 경우에 원산지증명서 11번 란에 어떤 인보이스의 번호와 일자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물품에 대한 정보를 충실하게 기재하기 위하여 한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인보이스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0 제3국 송장 발행 시 원산지증명서 기재방법

[관련 협정 : 한·인도 CEPA]

Q 질 의

거래관계가 아래와 같을 때, 원산지증명서 '제3국 송장' 란에 어느 회사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인도 제조업체 A
2. 홍콩 대행자(홍콩 대리점) B
3. 홍콩 대행자(D에게 최종적으로 인보이스 발행) C
4. 수입자 D

A 답 변

제3국의 운영인이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제3국 송장' 란에 (✓)로 표시하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 또는 운영인의 이름·주소 및 국가 등의 정보를 제14란에 표기합니다.

사례에서 원산지증명서 발행 주체인 인도 A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송장을 발행한 홍콩 B사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할 제3국의 회사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1 B/L의 목적지가 실제 목적지와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에 물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목적항이 홍콩으로 기재된 AWB를 기반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운송조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발급되는 선적서류의 목적지가 중간 경유국(홍콩)이 기재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제 물품의 최종목적지가 중국이고, 해당 물품이 한·중 FTA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과 기타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의 최종 목적항을 중국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의 최종목적지가 중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2 원산지증명서에 중계인 기재 여부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중계거래로 무역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중계인의 정보가 표시되지 않아도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원산지증명서에는 수입국(한국)의 수입자(수하인) 정보를 기재하고 협정관세신청서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수입자 정보를 기재함을 알려드립니다.

183 원산지증명서 분할 사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중국산 원재료를 대량으로 수입하여 부산 보세창고에서 보관하는 도중에 발주요청에 따라 분할하여 수입 통관하는 경우 총 중량이 기재된 FTA C/O로 통관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하나의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을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 후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4 제3국 송장 발행 시 원산지증명서 기재방법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중국 제품을 중국에서 출고 및 선적하는데, 거래는 일본 업체와 진행하고 있고 대금도 일본에 지불하고 있는 경우(인보이스도 일본 업체가 발행) 원산지증명서 제1란 및 제2란에는 중국 업체를 적고, 일본 업체는 어디에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비당사국 운영자가 상품에 대한 송장을 발급하는 경우, 비당사국 운영자의 법적 이름과 국가를 원산지증명서의 제5란(비고)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185

수입 당사국에 소재하는 제3자의 송장이 비당사국 송장인지 여부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국내 구매자 A는 판매자 B로부터 중국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였는데(상업송장은 B가 발행) FTA C/O 제5란에 B의 명칭을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수입 당사국과 동일한 국가에 소재하는 제3자가 발행한 송품장은 비당사국 송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산지증명서 제5란에 비당사국 송장발행자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186

원산지증명서의 발행 주체

[관련 협정 : 한·캐나다 FTA]

Q 질 의

캐나다의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수출자란에 미국 수출자를 기재하고 (제3국 송장발행 거래) 생산자란에 캐나다를 기재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캐나다 FTA에서는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며,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그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그 수출자가 다음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수출자의 인지
- 2)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서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또는
-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을 위하여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증명서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는 자국 영역에 소재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87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호만 다르고 같은 회사인 경우 원산지신고서 (제8란) 기재방법

[관련 협정 : 한·콜롬비아 FTA]

Q 질 의

수출자와 생산자가 상호만 다를 뿐 같은 회사인 경우, 제8란에 'YES'로 작성해도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정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한·콜롬비아 FTA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8란에 'No'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① 원산지증명서의 다른 란에 기재된 수출자와 생산자 정보를 통해 생산자와 수출자가 상이함이 확인 가능한 경우 또는, ② 동일법인임이 관련 무역서류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면 제8란에 'No'를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8

협정에서 정한 서식과 다른 원산지증명서 유효성 관련

[관련 협정 : 한·호주 FTA]

Q 질 의

호주 상공회의소(ACCI)에서 발급받은 증명서 서식이 일반적인 서식과 달라도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정한 서식에 작성되어야 하며, 협정에서 정한 서식과 상이한 서식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는 협정 적용이 곤란합니다.

귀하가 호주 상공회의소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는 한·호주 FTA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서식과 상이하여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Q 질 의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번호로 기관발급 C/O를 발급받았고, 추후에 상업송장이 발급되는 경우(견적송장과 상업송장의 번호 상이하나 다른 정보는 모두 동일) 해당 C/O가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의 식별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고, 추후 상업송장이 발급되어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식별번호가 상업송장의 것과 다르지만, 견적송장과는 일치하고, 상업송장의 모든 내용이 동일하며, 통관 시 견적송장과 상업송장이 모두 구비가 가능하다면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FTA 민원·답변 사례집



협정관세 적용



II 협정관세 적용

001 생산지원비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수입물품(금형)의 과세가격에 포함된 생산지원비도 사후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답 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갖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된 생산지원비도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002 수출 후 인증수출자 취득하여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EU 역내 수출자가 수출 당시에는 비인증수출자였으나, 수출 후에 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제공한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수출 당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어도 원산지신고서 작성 당시에 인증수출자이면 소급하여 작성·발급한 원산지신고서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후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합니다.

003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와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공통]

Q 질 의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협정(한-호주, EU FTA 등)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기와, ② 수입신고 수리 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 사후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한-EU FTA 경우, 수출될 때 또는 수입국에서 명시한 기간(우리나라 1년) 내에 제시조건으로 수출 후에 작성할 수 있으나 소급하여 작성하는 경우 작성일자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한-호주 FTA는 협정에 별도 규정은 없으나 수출될 때 또는 수출 후 일정 기간 내에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그 이전에 원산지증명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004 임가공비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베트남 FTA]

Q 질 의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원재료로 베트남에서 완제품을 생산 후 우리나라로 재수입하는 경우 재수입 시 해당 완제품의 임가공비에 대하여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베트남 FTA상 베트남에서 임가공 후 재수입되는 물품이 협정과 법령에서 정한 협정관세 적용 요건(원산지증명서 구비, 직접운송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베트남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005 원산지포괄확인서의 포괄기간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원재료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가 원재료의 원산지포괄확인서의 포괄기간 경과 후 실제 생산에 투입되는 경우 해당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유효한가요?

A 답 변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류이며, 원산지확인서에 실제로 물품을 ‘공급한 날(공급받은 날)’이 포괄확인 기간 내에 있으면 됩니다.

006 수입신고 이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수입 당시 원산지증명서 미발급으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수입신고 후 수출자로부터 3개월 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받은 경우, 사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원산지증명서가 수출 후에 발급된 경우라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이 가능합니다.

007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를 가공 없이 반출 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및 신청 시기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보세공장에 반입하기 위해 사용 신고한 원재료를 제조·가공 없이 원상태로 수입통관을 할 때, 협정 적용 가능 여부와 적용신청 시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관세법」 제186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반입한 물품이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에 따라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원상태로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에서 정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우리나라 도착 시 물품과 협정 적용하고자 하는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협정 관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08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 혼재 시 원산지증명서 물품 수량 기재방법

[관련 협정: 한·중 FTA]

Q 질 의

원산지 물품과 비원산지 물품을 동시 선적하여 체약상대국(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할 수량은 어떻게 되나요?.

A 답 변

원산지증명서는 체약 당사국(중국)에서 생산되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 및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며, 원산지증명서에는 위 기준을 충족하는 선적 수량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009 임가공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임가공위탁자가 임가공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일부 원재료를 공급하고 나머지 원재료는 임가공수탁자가 구매하여 완제품을 생산 시 임가공위탁자가 무상 사급으로 공급한 원재료에 대한 자료를 임가공수탁자에게 제공해 주는 경우 임가공수탁자가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발급 가능한가요?

또한 임가공위탁자가 임가공수탁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나요?

A 답 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원산지확인서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가공위탁자가 무상 사급하는 재료에 대한 자료를 임가공수탁자에게 제공한다면 임가공수탁자는 이를 근거로 완제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010 제품생산 시 발생한 스크랩의 역내산 인정 여부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국내에서 원재료 철괴를 사용하여 제품 생산 시 발생한 스크랩을 역내산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협정별로 규정방식 및 용어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과 부스러기는 우리나라에서 완전생산된 물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투입 원재료의 잔여 물품이 아닌 제조공정의 결과로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이어야 하며 협정별로 폐기물 및 부스러기에 대한 규정방식 및 용어에 차이가 있으므로 협정문을 참조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011 수입원유가 보세구역 내 잔존유와 혼합된 경우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미국에서 수입되는 원유를 국내 보세구역 내 원유 탱크에 보관시 원유 탱크 내의 비당사국 잔존유와 혼합될 경우 수입된 원유의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미국에서 수입되는 원유가 국내 보세구역 내 원유 탱크에 저장 시 탱크 내 잔존유와 혼합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원산지 기준 및 협정에서 정한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와 선하증권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12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규정 해당 여부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한-중 FTA상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면제규정에서 사인간, 상업적 목적을 불문하고 미화 700달러 초과하지 않는 원산지 상품의 탁송품인 경우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요?

A 답 변

한-중 FTA에서는 물품의 상업성 여부, 수입형태와 관계없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할 수입되지 않는 과세가격 미화 700달러 이하의 원산지 물품이라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체약상대국의 원유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우리나라 영역에 도달하기 전에 비체약국 원유와 혼합 보관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013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규정 적용 방법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한·중 FTA의 원산지 제출면제를 적용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답 변

한·중 FTA에서 정한 소액물품의 경우 수입통관 당시 해당 물품에 대해서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014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규정 해당 여부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한-EU FTA 협정문상 원산지 증명의 면제규정에 사인 간 소포 또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만이 적용되고 상업용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적용되지 않나요?

A 답 변

한-EU FTA에서는 상업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015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규정 적용 방법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한-EU FTA 원산지 증명 제출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답 변

한-EU FTA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면제 대상 물품의 경우 EU 회원국에서 구매한 구매영수증 또는 현품의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 후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016 원산지 상품과 비원산지 상품 혼재 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 가능한 수량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B/L, Invoice, Packing List에 기재된 수량 100kg이며, 수입통관 시 한·중 FTA 협정 적용 가능 수량 30kg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8란(포장의 수량 및 종류)에 기재되어야 하는 수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원산지증명서는 채약당사국(중국)에서 생산되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 및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며, 원산지증명서에는 위 기준을 충족하는 수량만(사례의 경우30kg)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017 원산지 상품과 비원산지 상품 혼재 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 가능한 수량

[관련 협정 : 한·베트남 FTA]

Q 질 의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원단(HS 제6006.32-0000호)을 일시 수출 후 베트남에서 단순 날염(HS 제6006.34-0000호)하여 우리나라로 재수입한 경우 협정에서 정한 수리 또는 개조에 포함되어 협정관계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날염하지 않은 원단(HS 제6006.32호)을 베트남으로 수출 후 날염(HS 제6006.34호)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출 시 물품과 수입 시 물품의 세번이 변경되므로 본질적 특성이 파괴되거나, 새로운 상품으로 생산된 것으로 보아 한-베트남 FTA에서 규정하는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018

1국 2협정의 적용 수입물품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베트남 FTA]

Q 질 의

최초 물품 수입 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하여 통관한 후 동일 물품에 대하여 한-베트남 원산지증명서를 구비 한 경우 한-베트남 FTA 협정 사후적용 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1국의 원산지 물품이 2개 이상의 FTA 협정 적용이 가능한 경우, 세율차 등의 사유로 수입 시 적용받은 협정관세를 취소 후 다른 협정의 특혜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 적용받았던 협정세율을 기본세율로 보정 또는 수정신고 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원산지 증명서류 및 보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한-베트남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이 가능합니다.

019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독일에서 6,000유로 초과하는 제품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EU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이 한-EU FTA 적용을 위해서는 ① 동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일 것, ② 동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③ 6,000유로 초과 원산지 상품인 경우에는 해당 원산지 상품이 상세하게 기술된 송품장·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EU 역내 소재 인증수출자가 동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재한 원산지신고서 구비, ④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020 수입신고 이후 소급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수출자가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우리나라 수입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가 수입 이후에 소급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이 가능합니다.

021 재수입물품의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미 FTA]

Q 질 의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물품이 추가 가공 없이 그대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협정관세는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022 일반특혜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APTA]

Q 질 의

수입신고 시 APTA 특혜관세를 적용신청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이후 특혜관세 적용 신청 가능한가요?

A 답 변

APTA의 경우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분실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수입신고 전에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023 보세공장 반입물품을 제품과세 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중국으로부터 ALUMINIUM COIL(HS 7606.11)을 보세공장에 반입 후 ALUMINIUM BILLET(HS 7601.20)으로 가공하여 제품과세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제조, 가공 후 제품 과세로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곤란합니다.

024 전자상거래 물품의 원산지 증명 면제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6,000유로 미만의 물품을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하지 않고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한-EU FTA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물품'은 FTA 관세특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의 원산지 기준에 따른 원산지 상품에 대해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025 무상거래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관련 협정 : 한·베트남 FTA]

Q 질 의

샘플물품(무상거래)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면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해당 물품이 한-베트남 FTA에 따른 협정 적용 대상품목이고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 및 기타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샘플물품이라도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026 비당사국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된 물품을 일본에서 다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FTA 원산지증명서는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의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비당사국(일본)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027 비당사국에서 단순가공한 물품의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미 FTA]

Q 질 의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물품을 중국에서 절단, 포장 작업 후 우리나라로 수입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경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미 FTA에서는 전적으로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되고,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최종생산이 중국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한-미 FTA에서 정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곤란합니다.

028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필요 서류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유럽에서 생산된 제품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필요 서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EU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이 한-EU FTA 적용을 위해서는 ① 동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일 것, ② 동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③ 원산지 제품이 상세하게 기술된 송품장·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EU 역내 소재 수출자(수입물품이 6,000유로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가 동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재한 원산지신고서 구비, ④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상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수입자는 원산지 증빙서류, 직접운송 요건 증빙서류를 갖추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호의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029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원산지 증명방법

[관련 협정: 한·중 FTA/APTA]

Q 질 의

중국에서 전기이륜차 수입 시 APTA 협정 및 한-중 FTA에 따른 원산지 증명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한-중 FTA에 따른 원산지 증명은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 및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해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의해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가능합니다.

APTA에 따른 원산지 증명은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 및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신청에 따라 수출참가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의해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가능합니다.

030 원산지포괄확인서의 포괄기간 작성방법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중국 내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원산지포괄확인서의 포괄기간이 2018.6.1.~2018.12.31.인 경우 동 물품을 타 업체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여 물품공급 시 포괄확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답 변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이 공급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제공하는 서류이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12개월의 범위에서 포괄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031 협정관세 사후적용 기간 및 제출서류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기간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수입신고 수리일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원산지 증빙서류,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경정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대상일 것,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 체약국 간 직접운송 될 것

032 원산지포괄증명서의 유효기간

[관련 협정 : 한·뉴질랜드 FTA]

Q 질 의

원산지포괄증명서가 발행되는 경우 포괄증명기간 내에 선적되어 증명기간 이후에 수입신고 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뉴질랜드 FTA의 포괄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원산지포괄증명기간에 해당 상품이 수입 당사국에 수입신고되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033 여행자휴대품 원산지 신고문안 작성방법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유럽에서 제품 구매 후 원산지 신고문안을 프린트한 별도용지와 구매영수증에 간인 받은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여행자가 EU 회원국에서 구입한 EU산 제품이 미화 1,000달러 초과~6,000달러 이하인 경우 구매영수증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신고문안을 구매영수증이 아닌 별도용지에 작성한 경우 인쇄, 타자, 스탬프, 수기로 판매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작성자의 이름과 서명이 간인 형태로 구매영수증과 별지에 걸쳐 수기로 작성되어 있다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034 수리 또는 개조 물품의 협정 적용

[관련 협정 : 한·베트남 FTA]

Q 질 의

한-베트남 FTA에 따른 수리 또는 개조되는 물품의 대상 범위와 수리비용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한-베트남 FTA의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재반입되는 상품이 아래의 가공 또는 공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동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됩니다.

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또는
나.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과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에 대해 발급이 가능하며, 수리비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035 수탁가공물품의 가공비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ASEAN FTA]

Q 질 의

수탁가공 수입물품의 가공비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아세안 FTA에서는 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과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036 재수입물품에 대한 협정 적용 방법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협정상 원상태 재수입물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협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협정에서 재수입물품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관세 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037 보세판매장 반입물품의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관련 협정: 한-EFTA FTA]

Q 질 의

2014년에 스위스에서 우리나라의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한 물품을 수입신고하려는 경우 2014년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2018년도 현재 협정 적용신청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보세판매장에 반입한 물품이 미판매 등의 사유로 국내 수입하는 경우 한-EFTA FTA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과 기타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우리나라 도착 시 물품)과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이 동일성이 확인 가능한 경우 협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계산 시에는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 결과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038 연구목적 수입물품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연구목적 물품을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물품이 연구목적으로 반입되었다 하더라도 한-미 FTA 적용을 위해서는 ① 한-미 FTA의 협정관세 적용 대상 품목이고, ② 한-미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③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④ 직접운송원칙 충족하여 협정관세 적용할 수 있습니다.

039 소액물품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미국산 타이어(미화 930달러)를 직구로 구매하는 경우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000 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인 경우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소액물품 협정관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 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040 이차차량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구비서류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을 '이차차량'으로 반입 시 미국산임은 자동차의 VIN NUMBER로 확인 가능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답 변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 ① 한-미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 ② 미국 내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 수입자도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작성 가능하나 해당 수입물품이 원산지 제품인 것과 운송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③ 직접운송원칙 충족
- ④ 협정관세 적용신청

그러나 자동차의 VIN Number(차대번호)는 제조국, 제조사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물품이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물품인지 여부의 확인이 곤란하여 원산지증명서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041 개인 이사차량 수입 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EU 국가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이사차량으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개인도 협정 관세 적용신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우선, 수입자가 개인인지 수입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FTA 특혜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U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가 한-EU FTA 적용을 위해서 ① 한-EU FTA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② 6,000유로 초과 원산지 상품인 경우에는 해당 원산지 상품이 상세하게 기술된 송품장·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EU 역내 소재 인증수출자가 동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한 원산지신고서 구비 ③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042 한-EU 협정 적용 방법 및 사후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EU 국가로부터 물품 수입 시 협정 적용을 받기 위한 방법 및 작년 수입물품에 대해 소급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EU 국가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상품이 한-EU FTA 적용을 위해서는 ① 한-EU FTA의 협정관세 적용 대상 품목이고, ② 동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③ 6,000유로 초과 원산지 상품인 경우에는 해당 원산지 상품이 상세하게 기술된 송품장·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EU 역내 소재 인증수출자가 동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한 원산지신고서 구비, ④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신고 시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원산지 증빙서류, 경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043 특별긴급관세 적용조치일 기준

[관련 협정 : 한·호주 FTA]

Q 질 의

한-호주 FTA의 ASG 적용조치일은 물량이 소진되는 날인가요? 또한 ASG 적용 조치일 선적분은 협정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답 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특정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는 이미 협정에서 정한 물량을 초과하면 그 농림축수산물에 대해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특별긴급관세조치일은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날이 되며 특별긴급관세조치일에 선적된 물량도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044 한-인도 CEPA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 HS

[관련 협정 : 한·인도 CEPA]

Q 질 의

인도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세번이 현재 HS 2017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인도 CEPA의 경우 품목별 원산지 기준 HS Code는 현재 HS 2007입니다.

따라서 동 물품의 HS 2007에 해당하는 세번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으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도 HS 2007 기준에 해당하는 세번을 기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045 협정관세 사후적용 방법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답 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보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경정청구서,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046 OEM, ODM 방식 생산물품의 수입 시 FTA 적용 가능 여부 등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해외에서 OEM, ODM 방식으로 생산 후 국내 수입 시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해당 물품이 ① 해당 협정에서 정한 협정 적용 대상 품목일 것, ②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③ 협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구비, ④ 직접 운송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OEM, ODM 방식으로 생산되어 수입된 물품이라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047 보세판매장으로 반입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보세판매장에서 반품되는 물품을 국내로 수입통관 시 수출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 신고서, 송품장, B/L 등으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보세판매장에 반입한 물품이 미판매 등의 사유로 국내 수입하는 경우 한·EU FTA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과 기타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우리나라 도착 시 물품)과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 가능한 경우 협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48 한-캐나다 FTA의 소액물품 관세 면제 규정

[관련 협정 : 한·캐나다 FTA]

Q 질 의

한-캐나다 FTA의 소액물품 관세면제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한-캐나다 FTA의 경우 원산지와 관계없이 캐나다로부터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과 상용견품으로 목록통관 대상 물품에 대하여 통관 시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의 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수입통관 시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 후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049 한-미국 FTA의 소액물품 관세 면제 규정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한-미국 FTA의 소액물품 관세면제규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한-미 FTA의 경우 원산지와 관계없이 미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미화 200 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과 상용건품으로 목록통관 대상물품에 대하여 통관 시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FTA에서는 과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수입통관 시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 후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050 비당사국 물품의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캐나다 FTA]

Q 질 의

미국산 차량을 캐나다에서 구매 후 우리나라로 반입한 경우 한-캐나다 FTA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캐나다 FTA 협정 적용을 위해서는 ① 동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② 동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③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에서 반입하는 차량이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인 경우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고, 양 당사국 간 직접운송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은 한-캐나다 FTA 적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051 1국 2협정의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중 FTA]

Q 질 의

APTA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된 물품을 한-중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수입신고 시 AP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경우, 유효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등 협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중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합니다.

052 1국 2협정의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중 FTA]

Q 질 의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고 APTA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경우 한-중 FTA 사후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고 APTA 특혜관세를 적용한 경우 수입 시 적용받은 협정관세를 취소하고 세액 수정 등을 한 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중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053 1국 2협정의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고 한-베트남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경우 한-아세안 FTA 사후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고 한-베트남 FTA 특혜관세를 적용한 경우 수입 시 적용받은 협정관세를 취소하고 세액 수정 등을 한 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054 협정 발효 전 공급물품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협정 발효 전 공급된 물품에 대해 협정 발효 후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답

협정 발효일 이후 수출된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협정 발효일 이전에 공급한 경우, 해당 협정에서 규정하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협정발효일 전에 공급된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055 여행자휴대품의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유럽에서 구매한 가방 가격이 1,000달러 이하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없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EU 국가로부터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을 비상업용으로 구매하여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경우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표시 등을 통해 간이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확인 후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056 여행자휴대품의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여행자휴대품의 구매영수증에 수기로 날짜가 기재된 경우 별도용지에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 날짜작성을 해야 하나요?

A 답 변

미화 1,000달러 이상 6,000유로 이하의 EU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을 구매하여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 시 별도 용지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한 경우, 구매영수증과 별지에 기재된 작성일자, 작성자의 이름, 서명이 동일하고 작성자의 이름과 서명이 구매영수증과 별지에 간인 형태로 수기로 작성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가능하며, 구매영수증에 작성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일자는 생략 가능합니다.

057 해외 직구 물품의 협정 적용 방법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독일로부터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물품 구매 시 현품에 제품을 만든 국가명이 기재된 경우 협정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한-EU FTA에서는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않는 사인간의 소포 또는 여행자휴대품 중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없이 구매영수증과 현품의 원산지표시 확인으로 협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은 사인간의 소포 또는 여행자휴대품에 해당하지 않아 한-EU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는 경우 협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058 중고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국내 생산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사용 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할 수 있나요?

A 답 변

한-중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물품을 신품으로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중고물품에 대해서도 동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059 원산지증명서 제출 방법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한-미 FTA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는 언제,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나요?

A 답 변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수입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동 협정에 따라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와 원산지 증빙서류,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060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계산방법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1년이 지난 후에 수입신고하는 경우 발행한 지 1년이 지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 적용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계산 시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수입물품이 국내에 도착한 경우 국내 도착한 날의 다음날부터 협정관세 적용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계산 결과 각 협정의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국내 도착한 날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여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061 무상물품의 원산지 기준 판정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무상수출물품도 부가가치기준 또는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 판정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무상물품의 경우에도 유상물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가능합니다.

062 비당사국에서 최종 포장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일본에서 포장작업 후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경우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중 FTA에서는 전적으로 수출 당사국에서 생산되고, 동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가능하며, 원산지 상품이라 하더라도 양 당사국 간 직접운송 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최종 포장작업이 이뤄진 경우에는 한-중 FTA 협정관세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063 한-미 FTA의 영역 해당 여부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푸에르토리코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한-미 FTA 적용 가능한가요?

A 답 변

푸에르토리코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한-미 FTA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과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협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064 생산지원비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EU로부터 상품 수입 시 상품생산에 사용된 금형의 비용(Tooling cost)에 대해 협정 관세 사후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된 금형비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므로 금형이 해당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수입물품이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과 기타 협정관세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협정 적용이 가능하다면 금형비(Tooling cost)도 협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입신고 시에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협정 적용 신청을 하고 금형비에 대해서는 협정 적용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금형비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 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65 위탁가공 수입물품 수리 또는 개조 포함 여부

[관련 협정 : 한·베트남 FTA]

Q 질 의

우리나라에서 장갑(제6116.92호)을 생산하여 베트남으로 수출 후 베트남에서 장갑을 코팅(제6116.10호)하여 우리나라로 재수출하는 경우 수리 또는 개조에 포함되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면으로 만든 장갑(HS 제6006.92호)을 베트남으로 수출하여 베트남에서 코팅작업 후 수입한 것으로 수출 시 물품과 수입 시 물품의 세번이 변경되어 동 협정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본질적 특성이 파괴되거나, 새로운 상품으로 생산된 것으로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066 수리물품 재수입 시 가공비와 운임의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체약상대국 수입물품의 기능 저하로 상대국에 수출하여 수리 후 우리나라로 재수입한 경우 가공비와 운송비에 대해 협정 적용 가능한가요?

A 답 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7조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물품의 운임과 가공비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이 한-EU FTA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과 기타 다른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하여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다면 가공비와 운임에 대해서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067 비당사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베트남으로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베트남 FTA]

Q 질 의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한 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우리나라 수출물품이 FTA 체약국에서 FTA 특혜관세 대우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한-베트남 FTA에 따른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068 한국산 물품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 여부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미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국가가 'KR'로 기재된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로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협정관세는 계약상 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수입 시에는 협정관세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069 전자상거래물품 협정 사후적용 가능 여부 및 방법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영국에서 150달러 이상의 물품 구매 후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 한 경우 해당 물품에 사후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와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이 가능합니다.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위해서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 한-EU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한 원산지신고서, 보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경정청구서를 갖추어 통관지 세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동 법령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대상일 것, 원산지가 해당 계약상대국일 것, 계약국 간 직접운송 될 것

070 이산화물차량의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파리에서 구매한 슬로바키아산 차량을 이산화물로 한국 반입 시 슬로바키아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이산화물차량의 경우에도 ① 한-EU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② 원산지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된 송품장·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EU 역내 소재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③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EU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신고서가 아닌 슬로바키아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는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071 수출 후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독일 수출자가 우리나라로 수출 후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고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한 경우 협정 사후적용 가능한가요?

A 답 변

독일 수출자가 수출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지만 수출 후에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받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072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

[관련 협정 : 한·호주 FTA]

Q 질 의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은 상업용 물품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호주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원산지 상품의 경우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없이 현품의 원산지표시와 구매영수증 등을 확인 후 간이한 방법으로 협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073 해외 임가공물품의 원산지 판정

[관련 협정 : 한·ASEAN FTA]

Q 질 의

우리나라에서 양식한 미역을 베트남으로 수출 후 베트남에서 가공하여 우리나라에 재수출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가공한 미역(제1212.21호)의 원산지를 한-아세안 FTA에 따라 베트남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A 답 변

제1212.21호의 한-아세안 FTA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수출 당사국 영역 내에서 완전생산된 것'입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출 당사국인 베트남에서 완전 생산되어야 하며, 한국에서 생산되어 베트남에서 가공한 경우에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베트남산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074 여행자휴대품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미국에서 미화 600달러 초과 물품을 구매하여 우리나라로 입국 시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미 FTA에서는 미국에서 구매한 과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 후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미국에서 구매한 물품의 과세가격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구매한 상품이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상품임을 확인 후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075 수리물품 재수입 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한-중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을 중국으로 다시 보내서 수리 후 우리나라로 수입 시 협정 적용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중 FTA에서는 수리 후 재반입되는 물품의 경우라도 동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과 기타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076 원산지증명서 인정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미국에서 제품 수입 시 인보이스에 'Made in USA'가 기재되어있는 경우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미 FTA 적용을 위해서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①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 물품일 것, ② 동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③ 동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④ 직접운송원칙 충족하여 협정관세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에는 다음의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①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하여, 증명인의 성명
- ②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함)
-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④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 ⑤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⑦ 증명일, 그리고
- ⑧ 포괄증명의 경우 증명유효기간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에는 협정에서 정한 상기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있어야 하며,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는 'Made in USA'가 아닌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077 협정 발효일 이전 공급된 물품의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협정 발효일 이전에 공급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가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서류입니다.

협정 발효일 이후 수출된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협정 발효일 이전에 공급하였다면, 한-중미 FTA에서 규정하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협정 발효일 전에 공급된 물품에 대해서도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078 여행자휴대품의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구비서류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프랑스에서 미화 1,000달러 이상의 가방 구매 시 협정 적용받기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답 변

EU 국가로부터 여행자휴대품으로 원산지 상품을 반입하는 경우 구매금액별로 인정 가능한 원산지신고서를 안내해드립니다.

(1) 미화1,000달러 이상~6,000유로 이하의 원산지 상품 반입 시

- ①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안, 작성일자, 작성자의 성명과 서명이 기재된 경우
- ② 구매영수증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고 작성자의 수기서명이 된 경우
- ③ 구매영수증의 사이즈가 작아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용지에 원산지 신고문안 작성한 경우

※ 별도용지에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에는 별도용지에 원산지 신고문안 작성자의 서명을 하고 구매영수증과 별도용지에 간인을 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

(2) 6,000유로 초과하는 원산지 상품 반입 시에는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 구비

079 전자상거래물품 수입 시 원산지 증명 면제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EU 국가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해 미화 1,000달러 이하 소액물품 구매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EU FTA에서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으로 미화 1,0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 제출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쇼핑물 등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는 것은 한-EU FTA에서 규정한 사인간 소포로 송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해야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080 수리 및 개조 해당 여부

[관련 협정: 한·미 FTA]

Q 질 의

항공기 수리 목적으로 비당사국으로 수출되었으나 수리가 불가능하여 미국 본사로 보내져서 수리 후 국내로 재반입한 경우 한-미 FTA 제2.6조(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한-미 FTA 제2.6조(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규정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당사국으로 수출되었다가 미국으로 다시 보내져 수리 후 반입되는 경우는 협정 제2.6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81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TRQs) 적용 방법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한-중 FTA 관세율할당(TRQs)물량인 '오징어 젓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방법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한-중 FTA 관세율할당(TRQs) 물량인 '오징어 젓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HSK 제1605.54-2091호(조미오징어)에 대한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그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082 중고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ASEAN FTA]

Q 질 의

국내에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한 수출자가 필리핀으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 물품을 신품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아세안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고품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① 중고자동차의 생산자가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세관, 상공회의소)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거나, ② 수출자가 중고자동차를 공급하는 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한 후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① 수출신고필증 사본
- ②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③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④ 원산지소명서(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 직접 제출 가능)
- ⑤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증명서 발급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083 긴급수입제한조치(ASG) 품목 관련, 수입신고 취하 시 배정물량 복구 여부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한-미 FTA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ASG)품목을 수입하여 배정받은 후 수입신고 취하하여 수출국으로 돌려보냈을 경우 취소된 배정물량이 재배정되나요?

A 답 변

한-미 FTA ASG 대상물품 중 선착순 방식이 적용되는 물품이 수입신고 후 반송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신고 수리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① 수입신고 수리 전 반송 시에는 반송에 따라 최초 배정한 물량이 남는 경우 부과물량 도달일 수입신고된 건들에 재배정합니다. ② 수입신고 수리 후 반송 시에는 재배정하지 않습니다.

084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물품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과세가격 미화 7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없이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미화 7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의 경우 수입통관 당시 해당 물품에 대해서 구매영수증 및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통관 당시 필요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수입통관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물품의 동일성 등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협정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85 폐기물 등 원산지 결정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한-아세안 FTA에서 '당사국' 영역의 범위와 대두유(콩기름)을 아르헨티나에서 수입하여 제조(정제)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를 한국으로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한-아세안 FTA 제1.2조(정의)에 따라, 당사국은 대한민국 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두유를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후 발생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상 규정된 폐유인 경우 동 협정문 제3조(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따라 한국에서 완전생산된 한국산으로 간주 됩니다.

086 협정관세 적용 방법

[관련 협정: 한·터키 FTA]

Q 질 의

터키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터키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이 ①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 ②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 그리고, ③ 터키 수출자가 협정에 따라 발급한 원산지신고서 구비, ④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 요건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합니다.

087 이사회물차량의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미국산 자동차가 이사회물 조건을 충족한다면 한-미 FTA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한-미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 ② 미국 내에 소재하는 수출자·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 수입자도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가능하나 해당 수입물품이 원산지 제품임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③ 직접운송원칙 충족
- ④ 협정관세 적용 신청

088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협정 : 한·호주 FTA]

Q 질 의

한-호주 FTA 제6.7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7호의 규정에서 '운송 중'이라는 근거는 어떤 서류로 증명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호주 FTA 협정 제6.7조는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기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운송 중인 상품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서 운송 중인 상품이란 운송서류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089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폴란드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 시 폴란드에서 생산된 부품뿐만 아니라 독일, 중국, 터키 등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들도 함께 수입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답 변

폴란드 또는 독일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이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이고 유럽연합(EU)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인 경우 EU 역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구비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나,

중국, 터키 등에서 생산된 제품의 경우 원산지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EU 역내 국가에서 제품이 완전 획득되거나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야 하므로 동 협정상 원산지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90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 적용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이전에 추천서를 발급받아 구비하였으나 C/O를 구비하지 못하여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사후에 협정관세 적용신청과 추천서를 제출로 FTA 적용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091 소액물품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미국에서 구매한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제품을 한국으로 배송 시 현품에 'MADE IN USA'로 표기된 TAG가 부착되어 있고 구매영수증(인보이스)을 구비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인 경우 구매처,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 확인 등 간이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확인 후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092 이사차량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구비서류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을 '이사차량'으로 반입 시 자동차등록증 상의 'VIN CODE'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답 변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 ① 한-미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 ② 미국 내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 * 수입자도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작성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수입물품이 원산지 제품인 것과 운송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③ 직접운송원칙 충족
- ④ 협정관세 적용 신청

자동차의 VIN CODE(차대번호)는 제조국, 제조사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해당 물품이 한-미 FTA 상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물품인지 여부의 확인이 곤란하여 원산지증명서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093 중고물품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호주 FTA]

Q 질 의

호주로부터 중고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한-호주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 ②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 ③ 양 당사국간 직접 운송 될 것 그리고, ④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 상기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라면 호주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관련 규 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094 전자상거래 수입물품의 원산지 증명 제출 면제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1,000달러 이하의 독일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현품에 'Made in Germany 또는 EU' 기재되어 있다면 원산지증명서 없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한 가요?

A 답 변

한-EU FTA에서는 사인 간 소포 또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만 1,000달러 이하인 경우에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간이 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확인 후 협정관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직구를 통하여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 해서는 동 협정 규정에 따라 EU 역내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가 필요합니다.

095 특별긴급관세 적용조치일 기준

[관련 협정 : 한·호주 FTA]

Q 질 의

특별긴급관세조치일에 선적한 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나요?

A 답 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특정 농림 축수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는 이미 협정에서 정해진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지 여부로서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특별긴급관세조치일은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날이 되며 특별긴급관세조치일에 선적된 물량도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입니다.

096 제3국에서 수리한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우리나라에서 수리목적으로 미국으로 수출하였으나 미국에서 수리하지 못하고 제3국에서 수리 후 미국을 통해 우리나라로 재수입되는 경우 한-미 FTA 제2.6조(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한-미 FTA 제2.6조는 체약상대국에서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규정으로서 제3국에서 수리 후 미국을 통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한-미 FTA 제2.6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097 생산지원비의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수입물품의 생산지원비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관세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생산지원비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므로 해당 수입물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산지원으로 생산된 모든 수입물품이 동 협정 규정에 따라 원산지로 충족된 경우에만 생산지원비 전액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098 한-미 FTA 협정 적용 방법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미국에서 제품 수입 시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수입물품에 대하여 한-미국 FTA의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 ②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 그리고, ③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할 것입니다.

따라서 ①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대상 여부를 협정문 부속서 나(대한민국 관세양허표)에서 확인 후 양허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②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등으로부터 HS 품목 번호별 해당 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③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099 협정관세 적용방법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이탈리아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입 시 FTA 관련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 ②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 ③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것 그리고, ④ 양 당사국 간 직접운송될 것입니다.

100 자유무역지역 반입품 사후적용신청 가능 여부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을 수입할 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했는데 사후적용신청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므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 시기와 상관없이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01

신규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 적용 신청 가능 여부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동일 B/L로 수입신고한 물품 중 일부는 포괄원산지증명서로 협정을 적용받았으나, 일부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늦어지는 건(신규 수입물품)에 대해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와 원산지 증빙서류,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02

협정관세 사후적용 시 가산세 환급 여부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다른 품목분류로 신고 납부하여 부족세액을 납부한 뒤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통해 관세를 환급받는다면 납부한 가산세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답 변

품목분류 오류로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함이 확인되어 경정·부과고지의 사유로 부족세액 징수 후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으로 관세 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既) 납부한 가산세는 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03 자유무역지역 반입품 협정 적용 관련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을 수입할 때 적출국을 한국(KR)으로 기재하더라도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 수입 시 적출국을 한국(KR)으로 기재하더라도 협정 적용 받고자 하는 물품이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되었음과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협정 적용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이 동일물품임이 확인 가능하고, 협정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04 협정관세 적용 이후 가격변동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방법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협정관세 적용 이후 인보이스 가격이 증액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수입신고 이후의 수입물품의 가격변동만 있을 뿐 세관에 이미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다면,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신청'과 '수정신고'를 통해 기존 협정관세의 적용(유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질 의

최빈개발도상국의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 조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A 답 변

「관세법」에 따른 일반특혜(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포함)를 수입신고 시에 적용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전에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특혜관세 사후적용신청이 가능하며,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내에 우리나라에 해당 물품이 도착하였으나, 수입신고를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계산 시 해당 물품의 입항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한 경우는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다른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해당 수입건의 수입신고 시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않고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특혜관세 사후적용신청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106 우편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요건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택배로 받은 와인 6병(총 금액이 미화 150달러 미만)에 대해 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원산지 증명은 와인 라벨에 표기된 내용으로 같음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한-EU FTA에서는 ①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고, ②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않으며, ③ 의 정서의 요건(직접운송 등)을 충족하고, ④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EU 지역 구매 영수증 또는 현품의 원산지표시 등을 확인하여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가 수령하는 상기의 협정대상 물품은 EU 역내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하며 상업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07 보완한 인보이스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내용상 하자 있는 인보이스로 FTA 협정 적용 신청하였는데 차후에 보완된 인보이스를 받아 FTA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에 한하여 협정관세 사후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08 보세판매장 물품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A 업체가 수입통관 전에 B와 양수도계약 체결 후 물품 전량을 B의 면세점으로 반입하였으나 판매 부진으로 인해 일부를 반품처리하여 A 업체가 다시 수입신고를 하려고 할 때 협정관세 적용 가능한가요?

A 답 변

보세판매장에서 미판매된 물품을 수입하면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우리나라 도착 시 물품)과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원산지신고서 작성 권한이 없는 국내 양도인 등이 임의로 수정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의 적용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09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Ebay 사이트에서 네덜란드 판매자로부터 프랑스제 오토바이 헬멧 1개를(약 미화 345달러)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 협정 적용 가능한가요?

A 답 변

EU 국가로부터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된 1,000달러 이하의 물품 수입 시에는 원산지신고서 제출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물품의 경우는 사인 간 송부된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협정관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EU 소재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110

국가별 FTA 포괄증명서의 복수선택 물품에의 적용 요건

[관련 협정 : 한·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콜롬비아 FTA]

Q 질 의

한국과 뉴질랜드,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간 FTA에서는 동일 상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원산지포괄증명 제도를 이용하여 최초 원산지증명서를 반복 사용할 수 있나요?

A 답 변

뉴질랜드,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의 FTA에서는 원산지포괄증명은 동일 상품의 복수 수입 시 적용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포괄증명은 원산지포괄증명 기간에 해당 상품이 수입 당사국에 수입되고 된 경우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1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미화 1000달러 미만 제품에 원산지 표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생산자 및 판매자가 발급한 상업송장과 원산지증명서에 HS Code가 기재되어 있다면 협정세율을 적용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미 FTA에서 정한바에 따라 과세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 원산지 상품의 경우 수입통관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 후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Q 질 의

미국 유학 중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차량을 이삿집으로 한국에 들어올 때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협정상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나요?

A 답 변

미국에서 물품 수입 시 협정 적용을 위해서는 ① 한-미 FTA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 충족, ② 생산자,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동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한 원산지증명서 구비, ③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해당 수입물품이 원산지 제품임을 원산지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수입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 제3국에서 제조, 가공 등 협정에서 정한 가공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경유국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있었다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한-미 FTA 협정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는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가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확인 후 다음의 항목들을 기재하여 작성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① 증명인의 성명(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 ②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④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 ⑤ 물품의 HS 품목번호 및 품명
-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⑦ 증명일자
- ⑧ 증명서 유효기간(포괄증명의 경우)

113 소액물품의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미국에서 구매한 주류 현품 4병 중(1,000달러 이하) 1병에는 미국 주의 이름이 기재되어있지 않고, 나머지 3병에는 USA라는 국적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CA라는 지명이 표시되어있는 경우 한-미 FTA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답 변

한-미 FTA에서는 미국에서 구매하여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된 과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원산지 상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수입통관 시 구매영수증, 현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 후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제시한 원산지 표시방법은 해당 물품이 미국에서 생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표시방법으로 인정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4 할당물량만 협정 적용 후 남은 부분 반송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당일 수입신고분 중 할당받은 물품만 협정 적용을 받고 나머지(할당물량 초과분)는 반송 또는 폐기 가능한가요?

A 답 변

관세율 할당물품 수입신고 시 수입물량 중 관세율할당을 배정받지 못한 일부 물량을 반송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관세법령 등에 따른 반송요건에 부합한다면 반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5 수리 또는 개조물품의 협정 적용

[관련 협정: 한·미 FTA]

Q 질 의

미국의 제조 라인 전체를 해체하여 한국에서 수리, 개조 후 다시 미국으로 반입하는 사안에서, 한-미 FTA에 따른 국내 일시 수입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답 변

한-미 FTA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우리나라로 일시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에는 ①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물품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작업이나 과정과, ② 미완성 상태의 물품을 완성품으로 생산 또는 조립하는 작업이나 과정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수행되는 작업이 협정에서 정한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6 수입통관 후 멸실된 화물에 대한 할당추천물량 재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미 FTA]

Q 질 의

할당물량 추천서로 이미 수입통관이 완료된 화물이 멸실된 경우 기존의 물량을 다른 수입통관 건에 적용 가능한가요?

A 답 변

보세창고 보관 중에 화재로 멸실된 수입통관물품은 상기 추천을 근거로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율' 적용이 완료된 물품으로 동일 추천을 근거로 다른 수입신고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 멸실 등의 사유에 따른 추천물량의 재배정 여부는 애초 추천을 받은 주무부서 또는 기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7 HS Code 정정 및 사후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아래와 같이 발전기 구성요소별로 수입신고하던 것을 하나의 기능단위기계로서 하나의 HS 코드로 분류 가능하다는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FTA 협정 신청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각각의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발전기 구성물품

A (기존에 FTA 적용)

B (FTA 비적용)

C (기존에 FTA 적용)

A 답 변

품목분류 변경에 의해 각각의 구성요소로 수입신고한 것을 하나의 기능단위기계로 정정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하는 경우, 변경된 품목분류와 일치되도록 원산지증명서를 보완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성요소 A와 C는 보완된 원산지증명서로 기존의 협정관세를 적용하고, 구성요소 B는 보완된 원산지증명서로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내에 협정관세를 사후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8 품목분류 변경에 따른 사후적용 신청 기한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품목분류 변경으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려는데 그 기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45일)에 협정관세 사후 적용이 가능합니다.

119

C/O와 송품장에 발급번호가 없는 경우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발급·작성번호 기재방법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보유한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에는 발급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상의 제12란(발급·작성번호)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A 답 변

구비한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에 발급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물품과 일치함을 확인 가능한 무역서류의 발급번호를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20

소액물품의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미국에서 맥주를 직구하였는데 미화 1000달러 이하이고 물품에 Torrance, CA라고 표시된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협정 적용 가능한가요?

A 답 변

‘Torrance, CA’는 국가명이 아닌 행정구역명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며, 동 지침에서 정하는 미국에서 생산된 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인정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원산지 확인을 위해서는 구매영수증 등 추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1

비당사국에서 최종 완제품 생산이 이루어진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폐수처리장치 제어반(미국 생산)을 독일로 수출하여 독일에서 제어 소프트웨어를 입력한 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한-미 FTA 적용신청 가능한가요?

A

답 변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이 한-미 FTA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최종 공정은 체약상대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비당사국에서 제어반에 소프트웨어를 입력한 경우에는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122

한-미 FTA에서 기체결되어 운송 중인 상품 긴급수입제한조치 면제 여부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한-미 FTA에서도 한-호주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기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운송 중인 상품은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면제인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은 EU, 호주, 뉴질랜드, 영국과의 협정에 따라 EU, 호주, 뉴질랜드,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로서 특별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운송 중인 물품을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한-미 FTA는 이러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제외 또는 면제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23 해외 직구 물품의 협정 적용 방법

[관련 협정 : 한·싱가포르, ASEAN FTA]

Q 질 의

싱가포르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어떤 협정이 적용되고, 관세가 면제(혹은 부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싱가포르로부터 수입하는 원산지 상품은 한-싱가포르 FTA와 한-아세안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싱가포르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할 수입되지 않는 한, ①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총 관세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 ② 한-아세안 FTA의 경우 FOB 기준 미화 200달러 이하의 원산지 물품이라면 해당 물품의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간이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확인 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24 수입통관 후 다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ASEAN, 베트남 FTA]

Q 질 의

한-아세안 FTA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으나 세율이 더 낮은 한-베트남 FTA C/O를 수출자에게서 발급받아 한-베트남 FTA를 재적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해당 사항에서는 「관세법」 제38조의2 또는 제38조의3 규정에 따라 보정·수정 등 절차를 통해 이미 적용받은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 후 다른 협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원산지 상품 수입 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세율 차·품목분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효한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였다면 상기 안내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베트남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 : 이미 적용된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가산세 규정을 준용합니다.

125

해외 임가공물품의 재수입면세 적용 또는 협정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한국산 미역을 태국에 수출하여 임가공(미역 줄기 분리 및 절단 가공 등)한 뒤, 한국으로 재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재수입 면세 또는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답 변

「관세법」상 해외 임가공 감세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바, 수출입물품의 세번은 동일하나, 일차제품의 특성상 수출입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기가 곤란하여 「관세법」 제101조의 해외 임가공 감세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현품확인 및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여 최종 감면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세관장이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FTA 적용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미역의 세번(제1212.21호)의 한·아세안 FTA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수출 당사국 영역 내에서 완전 생산된 것’으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출당사국인 태국에서 완전 생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생산되어 태국에서 가공한 경우에는 질의 세번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우리나라로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126

6,000유로에 비원산지 재료 가격 포함 여부

[관련 협정: 한·영 FTA]

Q 질 의

한·영 FTA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어도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6,000유로가 원산지 제품의 물품 가격을 뜻하는 것인지, 비원산지 제품의 가격을 포함한 단일 탁송화물의 전체 물품 가격을 뜻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6,000유로는 원산지 제품의 가격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며(영문 협정문을 ‘(‘originating products whose total value does not exceed 6,000 euros’ 통해 6,000유로가 원산지 상품에만 해당함을 명확하게 확인 가능함) 우리 청 한·영 FTA 이행 지침(2020년 11월)에도 “비원산지 제품의 가격은 6,000유로에 산입하지 않음”이라고 안내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7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문의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보유 중인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일이 사후적용 신청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지만 입항일 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면 1년을 경과하지 않을 때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 시에는 유효기간 이내의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는 원산 지증명서 유효기간 계산 시에는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날부터 협정관세 적용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은 원산 지증명서 유효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라도 위 규정에 따라 계산한 결과 원산지증명서가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유효한 원 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128

보세공장 사용신고 물품의 수입 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보세공장에 반입 이후 사용신고 당시 FTA 협정 적용 신청을 하였는데, 부득이하게 원 상태 그대로 국내로 수입하게 된 경우에도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답 변

사용신고를 하고 보세공장에 반입한 후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 료를 원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한-중 FTA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우리나라 도착 시 물품과 협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협정관세 적용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질의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을 알 려드립니다.

129 협정 사후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가 갖춰야 할 조건과 신청 절차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폐쇄되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중에 사후 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가 갖춰야 할 조건과 신청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원산지증명서는 예외적*으로 불가항력 등의 경우에 선적일부터 1년 이내 발급될 수 있으며, 소급발급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소급발급 문구(예 : ISSUED RETROACTIVELY)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원칙) 선적 전 또는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

또한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사후적용(납부한 관세의 환급)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원산지증명서,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경정 청구서를 통관지 세관장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0 용도세율 품목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용도세율 적용 대상인 모터사이클용 타이어를 수입하는데, 수입신고 시 용도세율을 적용하고 이후에 FTA 협정 사후 적용을 신청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FTA 협정관세 적용 시 용도세율 대상이 되는 경우 「관세법」 제83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1

1국 2협정의 적용 수입물품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세번이 변경되어 기존의 협적 적용이 불가한데, 다른 협정으로 특혜를 받으려는 경우 관련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동일 국가의 원산지 물품이 2개 이상의 협정 적용이 가능한 경우, 세율차 등의 사유로 수입 시 이미 적용받은 협정관세를 취소하고 다른 협정의 특혜관세 사후적용이 가능하며, 이미 적용된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할 때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32

협정국에서 임가공 수행 후 국내로 수입 시 임가공비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중국에 배터리셀을 임가공 의뢰하여 한국에서 보낸 재료로 조립한 뒤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임가공비에 대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해외 임가공물품 수입 시 수입물품이 한-중 FTA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과 기타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 경우라면 임가공물품 생산에 소요된 제반비용, 왕복운임비 등도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이 완성품의 생산을 위한 단순한 조립에 그치는 경우에는 중국산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33

제3국 발행 B/L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중 FTA]

Q 질 의

홍콩에 본사를 둔 수출업체 A사를 통해 중국산 물품을 중국에서 선적, 수입하는 과정에서 홍콩의 A 업체가 운송서류를 발행을 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기반으로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중 FTA상 제3국에서 B/L이 발행되는 경우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작성 요령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나, 제시된 B/L이 홍콩의 당사자 명의로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을 중국에서 선적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면 협정상 직접운송 원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은 협정관세 적용 요건에 따라 협정관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①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적용 대상 물품일 것
- ② FTA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 ③ 원산지증명서 구비
- ④ 직접운송원칙 충족
- ⑤ 협정관세 적용 신청

134 미조립 물품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품목분류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미조립 상태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FTA C/O를 발급 받은 경우 해당 C/O로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협정관세의 적용을 위해서는 수입신고 물품과 원산지증명서상 물품이 동일해야 합니다.

품목분류 통칙 제2호 가목은 미조립으로 제시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성품으로 분류한다는 원칙으로, 수출국에서 미조립 상태로 제시되는 물품이 상기 통칙에 따라 완성품으로 분류되어 동 완성품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를 토대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완성품으로 분류한 물품과 수입국에서 이 후 공정을 거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135 경유하여 운송할 때 수입신고서, 협정관세신청서 적출국, 환적국 기재 방법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중국 선적 물품을 홍콩 경유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서 및 협정관세신청서에 어느 국가를 적출국, 환적국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수입신고서에는 환적국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으며 ‘중국’을 적출국으로 기재하고, 협정관세 신청서에 적출국과 환적국 정보를 모두 기재하는데 적출국은 중국, 환적국(항)은 홍콩으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질 의

참기름(제1515.50-0000호)은 수입물량에 제한이 없는지, 만약 농산물유통공사의 추천서가 있다면 수입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 답 변

2021년 기준, 페루산 숙주용 녹두(제0713.31-9000호)와 깐녹두(제2005.51-1000호)의 협정관세율은 0%, 참기름(제1515.50-0000호)의 경우 과세가격의 196.8% 또는 중량(kg)당 3,768원 중 고액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상기 3개 품목 중 숙주용 녹두의 경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대상이었으나 2021년부터 긴급관세 발동물량이 폐지되어 수입물량에 제한이 없으며, 나머지 품목은 협정 발효일부터 관련 수입물량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페루 FTA의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관세율 할당 또는 관련 추천 제도를 협정에서 정하지 않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위하여 농산물유통공사의 추천서를 구비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FTA 민원·답변 사례집



원산지 결정기준



III 원산지 결정기준

001 부가가치기준 물품의 원산지소명서 작성방법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위해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할 때 수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에도 원산지소명서에 각 원재료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요?

A 답 변

원산지소명서는 법정 서식으로 원산지 기준 여부와 관계없이 제11란(품목번호)에 HS 6단위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에도 최종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에 대한 HS 품목번호 확인 등의 사유로 원산지소명서 제11란(품목번호)에는 HS 6단위가 기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002 비당사국 발행 통과선하증원의 적용 여부

[관련 협정: 한·중 FTA]

Q 질 의

수출 당사국(중국)이 아닌 비당사국(홍콩)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으로 한-중 FTA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운송서류가 비당사국에서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 구간을 책임지고 발행하고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 정보, 화물 품목 및 수량 등의 상세한 선적정보를 포함한 단일 통과선하증권이라면 한-중 FTA 직접운송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03 누적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베트남으로 수출한 한국산 재료로 베트남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로 재수출할 경우 누적적용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아세안 FTA는 재료누적을 규정하고 있어 한국산 원재료가 베트남 생산자가 생산하는 최종재의 재료로 사용되고 최종재 생산 시 역내 충분가공이 이루어진다면 베트남 원산지 재료로 간주되어 누적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04 어획물 완전생산기준 입증서류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한-EU FTA 원산지 검증을 대비해서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가 체약 당사국의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획물임을 증빙하기 위해 수출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수입자는 제3류에 해당하는 재료가 체약 당사국의 선박에 의하여 잡힌 어획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자격을 갖추고 한-EU FTA 제16조에 따라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어획물이 완전생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한-EU FTA 제4조 제2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선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어획물이 당사국 선박에 의해 획득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005 원산지 상품 해당 여부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베트남에서 역외산 견과류를 슬라이스 등의 작업 후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 최종 수출물품의 세번 : 제0802호

A 답 변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 3 부록 2(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르면, 품목번호 제 0802호(기타의 견과류) 제품은 '수출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이어야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외산 견과류로 베트남에서 생산한 경우 한-아세안 FTA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006 제2106.9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

[관련 협정: 한·베트남 FTA]

Q 질 의

HS 제2106.90호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단서조항이 세번변경기준에도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2106.90호 원산지 결정기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소호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에 한정한다.)

A 답 변

한-베트남 FTA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따라 제2106.90호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①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또는, ②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제2106.90호의 단서규정은 부가가치기준(RVC)에만 적용됩니다.

007 경유화물의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룩셈부르크(수출국)에서 중국(경유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수입국)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Multimodal Transport B/L(전체 운송경로, 운송수단, 컨테이너 정보가 기재)'이 발급된 경우에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A 답 변

원산지 제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할 경우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 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합니다.

단일 운송서류를 통해 수출국(룩셈부르크)에서 경유국을 거쳐 우리나라까지 전체 운송경로가 나타나 있고, 운송서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해 최초의 운송인이 전 운송구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발행한 경우라면 직접운송 증빙자료로 인정 가능합니다.

008 비당사국에서 선적된 물품의 직접운송 충족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이 홍콩에서 우리나라로 운송된 경우 한-중 FTA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중 FTA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상품은 당사국 간에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홍콩에서 발송된 경우 한-중 FTA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009 부가가치기준 계산 시 FOB 가격 산정방법

[관련 협정 : 한·인도 CEPA]

Q 질 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CTSH + RVC 35'일 경우 부가가치기준을 산정하기 위해서 생산 자가격과 수출자가격 중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나요?

A 답 변

한-인도 CEPA에서는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산정 시 본선인도가격(FOB)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선인도가격(FOB)은 수입자가 수출자(고객사)에게 실제지급 또는 지급할 가격(수출자의 이윤포함)으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이며, 수출자가 수출 시의 FOB 가격을 제공하여준다면 그 가격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010 제3906.9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제3906.90호 제품생산에 제3901호 및 제3915호에 해당하는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단서조항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HS 제3906.9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901호부터 제3915호까지의 원산지 물품인 폴리머가 폴리머 전체 중량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A 답 변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제3906.90호의 단서조항인 “다만 제3901호부터 제3915호까지의 원산지 물품인 폴리머가 폴리머 전체 중량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3906.90호의 제품을 생산할 때 원재료로 제3901호부터 제3915호에 해당하는 구성중합체가 사용된 경우 단서조항이 적용됩니다.

011

제0910.3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관련 협정 : 한·미 FTA]



질 의

제0910.90-000호의 물품을 수입 후 세척, 삶기, 건조, 분쇄, 분리, 포장의 작업을 수행하여 동일 소호의 제품으로 제조한 경우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나요?



답 변

파쇄, 분쇄, 분말화되지 않은 HS 제0910.30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파쇄, 분쇄, 분말화되는 제조공정을 거쳐 동일한 소호의 파쇄, 분쇄, 분말화된 물품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한-미 FTA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합니다.

012

경유화물의 직접운송 요건 충족서류

[관련 협정 : 한·캐나다 FTA]



질 의

캐나다(수출국)에서 송부되어 대만 또는 홍콩(경유국)의 보세창고 반입 및 보관 후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직접운송 요건 충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 변

해당 물품이 한-캐나다 FTA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캐나다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경우 동 협정 제3.16조(통과 및 환적) 요건 충족을 입증하기 위한 다음의 서류를 제시하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상품의 수입 전 운송경로와 모든 선적 및 환적지점을 나타내는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그리고

나. 상품이 비당사국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 비당사국에 있는 동안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음을 그 관세행정 기관에 나타내는 세관 통제 서류 사본

013 중간재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한-EU FTA 의정서 제5조 제1항 가목은 완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원산지 결정기준(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에 대해 적용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한-EU FTA 제5조 제1항 가목

비원산지 재료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쳐 원산지 제품이 되어, 그 제품이 그 이후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제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않음.

A 답 변

한-EU FTA 제5조 제1항 가목의 규정은 완제품의 원산지 기준(예 : 부가가치기준,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등)과 상관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014 쌀 완전생산 입증서류

[관련 협정 : 공통]

Q 질 의

쌀이 한국산(완전생산)임을 입증 가능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답 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 관세청장이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서는 ①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②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③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④ 지리적표시 등록증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서류가 없는 경우 쌀의 실제 생산확인자료(예 : 농지원부, 수매확인서) 및 거래관계 확인자료(예 : 매매계약서 등)로 농산물의 완전생산 입증이 가능합니다.

015

EU 역내 국가에서 분리작업한 화물의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독일에서 생산된 물품을 폴란드 보세창고에서 화물 분리 후 우리나라로 운송된 경우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나요?

A

답 변

독일에서 선적되어 EU 역내 국가인 폴란드의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분리 후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은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합니다.

016

비당사국 경유물품 직접운송 충족 여부

[관련 협정: APTA]

Q

질 의

중국(수출국)에서 홍콩(경유국)을 거쳐 우리나라(수입국)으로 수입되는 경유물품에 대해 전체 운송경로가 기재된 B/L이 수출참가국(중국)에서 발행된 경우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운송서류에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가 기재되어 있고 운송서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해 운송인이 전(全) 운송구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발행한 경우라면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017

지하수의 원산지 입증자료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음료 제조 시 재료로 사용되는 지하수를 제조자가 직접 채수하는 경우 지하수의 원산지 입증자료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제조자가 지하수를 직접 채수(採水)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직접채수확인 자료, 지하수 채수량 및 사용량 확인자료, 지하수 생산에 사용된 비용 내역 등으로 지하수의 원산지를 입증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18 부가가치기준 계산 시 FOB 가격 산정방법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수출물품의 국내 생산자가 원산지 결정기준(RVC 40)을 수출자의 수출가격을 근거로 하여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아세안 FTA에서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산정 시에는 수출가격이 아닌 본선인도 가격(FOB)으로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선인도가격(FOB)은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한 상품의 가격입니다.

수출자가 생산자에게 수출 시의 FOB 가격을 제공하여준다면 생산자는 그 가격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을 계산하여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019 지하수 및 수돗물의 원산지와 원산지 입증자료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지하수 및 수돗물의 원산지는 '한국'인가요? 또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답 변

지하수 및 수돗물이 당사국에서 완전히 추출된 물품인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하수 및 수돗물의 한국산 입증서류로는 지하수를 국내에서 채수(採水)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돗물이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추출되었다는 입증서류 및 공급내역 자료 등으로 입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20 비당사국에서 소분, 포장작업 시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

[관련 협정: 한·미 FTA]

Q 질 의

미국에서 제조된 낱알상태의 연질캡슐을 벌크상태로 베트남에 선적 후 베트남에서 소분 및 개별 포장작업 후 국내로 수입된 경우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나요?

A 답 변

낱알상태의 연질캡슐을 베트남에서 소분 및 개별 포장하는 경우는 한·미 FTA에서 정한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021 BWT 거래 시 비당사국 수입자에게 발행된 원산지신고서 유효성

[관련 협정: 한·EFTA FTA]

Q 질 의

EFTA산 물품이 비당사국 창고로 운송되어 일정 기간 보관 후 각 해외 지사의 주문에 따라 재포장하여 각국으로 운송된 경우, EFTA 소재 수출자가 비당사국 수입자에게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로 협정관세 적용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신고서는 체약 당사국 간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 상품에 대해 발급하는 원산지 증빙서류입니다.

따라서 EFTA 소재 수출자(생산자)가 비당사국 수입자에게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는 한·EFTA에서 정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022 직접운송 증빙서류

[관련 협정 : 한·EUFTA]

Q 질 의

프랑스산 물품이 비당사국(중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답 변

한-EUFTA에서 정한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 ② 수출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 ③ 경유국 관세당국이 다음의 내용을 기재하여 발행한 증명서
 - ㉠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 ㉡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 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 ㉢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023 수입신고 후 발행된 비가공증명서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터키 FTA]

Q 질 의

터키에서 싱가포르 경유 후 우리나라 도착한 물품에 대하여 싱가포르에서 출항하기 전 비조작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출항 후 우리나라 도착 전까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이후 발급된 비가공증명서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비가공증명서가 경유국에서 협정 적용 신청물품에 대해 비당사국 관세당국에 의해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 확인 가능하다면 출항 후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한-터키 FTA에서 정한 직접운송 충족 여부 확인자료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24 제1504.1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방법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제1504.10호 원산지 결정기준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입니다. 이 경우 제1504.10호의 제품 생산에 완제품과 동일한 세번의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중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의 의미는 제품과 동일한 상품 명 및 동일한 호의 재료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해당 협정 제6조(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에 규정된 공정 이상이 수행되어야 원산지 제품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025 통과선하증권의 인정 여부

[관련 협정 : 한·ASEAN FTA]

Q 질 의

B/L에 ‘Through Bill of Lading’ 문구가 기재된 경우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아세안 FTA의 경우는 B/L이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되고, B/L상에 선적항·경유지·도착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B/L에 기재된 물품에 대해 운송인이 전(全) 운송구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발행한 경우라면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지 B/L에 기재된 Through Bill of Lading 문구만으로는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026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방법(제8481.80호)

[관련 협정 : 한·캐나다 FTA]

Q 질 의

제8481.80호의 물품에 제8481.80호의 역외산 재료가 사용된 경우 해당 호의 원산지 기준 중 두 번째 원산지 기준 충족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제8481.8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 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 ②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848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8481.90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A 답 변

제8481.80호의 원산지 기준 중 ②에 해당하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4단위 세번변경) + 제848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 + 제8481.9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제8481.80호의 제품생산에 제8481.80호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경우는 4단위 세번변경이 되지 않아 한·캐나다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027 통과선하증권의 인정 범위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통과선하증권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 답 변

단일 통과선하증권이란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 정보(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화물 품목 및 수량 등의 상세한 선적정보를 담고 있는 선하증권으로서, 특정운송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단일의 선하증권(Air waybill 포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일의 운송서류에 화물의 전체 운송경로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운송인이 화물에 대해 모든 운송구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확인 가능한 경우라면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028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제8462.10호)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제8462호 제품 수출자가 컴퓨터 수치제어 시스템(CNC)의 원재료 구매와 컴퓨터 수치 제어 시스템을 직접 제조하는 경우 제8462호의 원산지 기준의 단서조항이 적용되나요?

HS 제8462호 원산지 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5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컴퓨터 수치제어(CNC) 시스템은 제8537호 또는 제903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원산지 물품인 것으로 한정한다.

A 답 변

제8462.1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 + 역내부가가치 50% 이상. 컴퓨터 수치제어 시스템인 제8537호 또는 제9032호는 원산지 재료의 사용'으로 해석됩니다. 수출자가 컴퓨터 수치제어 시스템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라도 자가 생산된 컴퓨터 수치 제어 시스템이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029 비당사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스웨덴산 시계를 미국에서 구매하여 우리나라로 발송한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질의 물품이 한-EU FTA 협정 적용을 위해서는 ① 동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일 것, ② 동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③ 원산지 제품이 상세하게 기술된 송품장·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EU 역내 소재 수출자가 동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한 원산지신고서 구비, ④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발송되어 우리나라로 도착한 물품은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여 협정관세 적용할 수 없습니다.

030 제3907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다만’ 이하의 단서조항의 해석방법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제3907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다만’ 이하의 단서조항의 해석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3907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3901호부터 제3915호까지의 원산지 물품인 폴리머가 폴리머 전체 중량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A 답 변

제3907호의 원산지 기준 중 단서조항은 제3907호의 제품 생산에 사용된 전체폴리머의 중량 중 제3901호부터 제3915호까지의 원산지 폴리머의 중량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합니다.

031 한·미 FTA에서의 불인정공정 충족 필요 여부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돼지를 역내(미국)에서 도축 후 냉동하여 생산된 냉동 돼지고기에 대해 불인정공정 여부와 관계없이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한·미 FTA의 경우 협정상 불인정공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품목별 원산지 기준(부속서6-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1류의 돼지를 역내(미국)에서 도축 후 냉동하여 생산된 제2류의 냉동 돼지고기는 동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며, 동 협정에서 정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32 통과선하증권의 사후 발급 시 인정 여부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수입신고 당시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되지 않고 사후에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된 경우 직접운송 요건 증빙서류로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아세안 FTA의 경우는 B/L이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되고, B/L 상에 선적항·경유지·도착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B/L에 기재된 물품에 대해 운송인이 전(全) 운송구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발행한 경우라면 사후에 발급된 경우라도 직접운송 증빙을 위한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33 제7308.9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

[관련 협정: 한·미 FTA]

Q 질 의

제7308.9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 시 제7216호의 형강이 한국산이어야 하나요?

제7308.90호 원산지 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7216호의 형강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

- 가.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수행된 드릴링, 천공, 닳칭, 절단, 캠버링 또는 스위핑공정
- 나. 혼합구조물을 위한 부착공정 또는 용접공정
- 다. 취급목적을 위한 부착공정
- 라. 예치형강(H형강) 또는 아이형강(I형강)의 양 플렌지 안쪽 면 사이의 크기보다 크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마. 도료, 아연도금 또는 기타 방법의 도장공정, 또는
- 바. 기동용으로 적합한 물품 제작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드릴링, 천공, 닳칭 또는 절단 공정과 결합하여 보강제 없이 단순한 받침용 강판을 추가하는 공정

A 답 변

제7308.90호의 제품생산 시 비원산지 재료인 제7216호의 형강을 사용할 수 있으나, 제7216호의 비원산지 형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7308.90호에 규정된 공정이 수행된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가능합니다.

034 비당사국에서 선적된 물품의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

[관련 협정: 한·EUFTA]

Q 질 의

독일산 물품을 싱가포르에서 선적하여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 상품이라도 양 당사국 간 직접운송 되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EU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라도 비당사국에서 선적하여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한·EU FTA에서 정한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협정관세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035 지하수 및 수돗물의 원산지 입증자료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지하수, 수돗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원산지 확인 입증서류는 무엇인가요?

A 답 변

지하수 및 수돗물의 원산지 입증서류로는 지하수를 국내에서 채수(採水)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서 등), 수돗물이 우리나라에서 추출되었다는 입증서류, 공급내역자료(예: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겸 영수증 등) 등으로 입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36 최소허용기준 적용 여부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제7009.92호(틀이 붙어 있는 거울)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 시 제7001호의 원재료 외 다른 호의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최소허용기준 적용이 가능한가요?

HS 제7009.92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제7001호의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A 답 변

한-EU FTA에서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라 제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없는 비원산지 재료라도 제품 공장도가격의 10% 이내에서 사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제7001호 이외의 비원산지 재료 사용 시에는 제품 공장도가격의 10% 이내 사용 인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7009.92호의 경우 한-EU FTA 제5조 제2항에 따른 최소허용기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37 EU 역내국가에서 환적된 경우 환적 표기 여부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프랑스에서 선적 후 독일(EU 역내국)에서 환적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작성 시 환적 여부 사항에 환적으로 표기해야 하나요?

A 답 변

원산지 상품이라도 양 당사국 간 직접운송 되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EU FTA에서 양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선적되어 EU 역내 국가(독일)에서 환적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환적 여부에 'N'으로 표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038 제3국 경유 시 직접운송 총족 입증자료

[관련 협정 : 최빈개도국특혜]

Q 질 의

탄자니아로부터 골드바를 Handcarry baggage로 우리나라로 반입 시 탄자니아에서 우리나라까지 직항이 없어 경유지를 경유해야 하는 경우 직접운송 총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답 변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단순 경유한 것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
3.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에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아니한 것

또한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 총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선하증권(항공화물 운송장(AWB)을 포함한다).
2. 수출참가국의 발급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3. 해당 물품과 관련된 상업 송품장 원본
4. 그 밖에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호(직접운송 총족 요건)를 증명하는 보충 서류(다만 직접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관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탄자니아 출국 시 관세당국이 발급한 골드바 반출 확인 자료, 경유국에서 보세구역 내에서만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탄자니아에서 우리나라까지 입국까지의 전체 운송경로 확인 자료, 경유국(환송지)에서 골드바에 대해 확인한 자료 등으로 최빈개도국 특혜관세 직접운송요건 총족 여부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039 스크랩 및 폐기물의 완전생산 입증자료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 및 제품생산을 위한 생산시설(틀, 통 등)이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폐기물인 된 경우의 완전생산 입증자료는 무엇인가요?

A 답 변

완전생산 입증자료로는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부스러기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생산에 투입되어 사용되었던 틀 또는 통이 더이상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고 원재료 회수용으로 적합한 폐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입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40 제3국 경유 시 당사국 발행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관련 협정: 한·중 FTA]

Q 질 의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홍콩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중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가요?

A 답 변

중국에서 생산되어 비당사국(홍콩)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라도 해당 물품이 한-중 FTA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경우라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동 협정에 따른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041

제3국에서 수입통관된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미국에서 선적된 물품이 중국(경유지)에서 수입통관하여 창고에 보관되었다가 우리나라로 송부되는 경우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미국에서 선적된 물품이 중국에서 수입통관되었다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042

제6815.1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

[관련 협정 : 한·캐나다 FTA]

Q 질 의

HS 제6815.10호의 물품생산에 동일한 HS 제6815.10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한·캐나다 FTA 제3.3조 제2항이 적용 가능한가요?

HS 제6815.1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한-캐나다 FTA 제3.3조 제2항

2. 부속서 3-가에도 불구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류부터 제21류까지, 제3901호부터 제3915호까지, 또는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의 상품을 제외하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상품은 충분한 생산을 거친 것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 가. 그 상품과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비원산지 재료가 동일한 소호 또는 더 이상의 소호로 세분화되지 않는 동일한 호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상품이 부속서 3-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 나. 그 상품과 동일한 소호 또는 더 이상 소호로 세분화 되지 않는 호로 분류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A 답 변

제6815.10호의 물품생산에 상품과 동일한 소호의 원재료가 사용되어 세번변경기준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사용된 동일한 소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한-캐나다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43 제3국 BWT 거래 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독일산 물품을 비당사국 물류창고에 보관 후 그중 일부를 우리나라에 수입 시 독일 수출자가 국내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EU FTA에서는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단일탁송화물이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그 제품이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반출이 없어야 하며, 협정에서 정한 공정(하역, 재선적, 보존공정) 이외의 공정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당사국에서 BWT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동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044 직접운송 충족 입증서류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비당사국에서 환적하는 특송화물의 한-EU FTA 직접운송 충족 입증서류는 무엇인가요?

A 답 변

특송물품의 경우에도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단일탁송화물의 경우 비당사국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으며, 협정에서 정한 공정(하역, 재선적, 보존 공정) 이외의 공정이 없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직접운송 충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나. 수출 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다.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 1)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045 세번변경기준의 누적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APTA]

Q 질 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누적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세번변경기준이 적용 가능하도록 추가된 품목에 대해서도 APTA 제6조에 규정된 누적 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046 제2202.9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관련 협정 : 한·ASEAN FTA]

Q 질 의

태국에서 제2202.90호 물품 생산 시 베트남에서 완전생산된 제1211.20호의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제2202.90호 원산지 기준의 단서조항을 충족 가능한가요?

제2202.9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 발생. 다만,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

A 답 변

한-아세안 FTA의 제2202.90호의 원산지 기준 중 단서조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한-아세안 FTA 회원국에서 완전생산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태국에서 수출되는 제2202.90호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인 제1211.20호가 한-아세안 회원국인 베트남에서 완전생산 된 경우는 제2202.90호의 원산지 기준의 단서조항을 충족합니다.

047 제3국 발행 통과선하증권의 인정 여부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협정에서 직접운송 증빙자료로 수출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협정의 경우 제3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도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통과선하증권의 발행국가를 수출 당사국으로 한정하지 않는 협정의 경우에는 제3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직접운송 요건 증빙자료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48 직접운송 요건 충족 증명방법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원산지 상품이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답 변

원산지 상품이 비당사국 경유 시에는 협정에서 규정한 대로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全) 구간(수출 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까지)에 대해 책임지기로 하고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또는 비당사국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 등을 증명하여 비당사국 관세당국에서 발행한 서류로 직접운송 입증 가능합니다.

049 제2008.19호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

[관련 협정 : 한·베트남 FTA]

Q 질 의

제2008.19호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제외 세번인 제8류는 완전생산되어야 하나요?

제2008.19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8류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A 답 변

한-베트남 FTA의 제2008.19호의 원산지 기준 중 단서조항은 제8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050 포장용기의 원산지 판정

[관련 협정 : 한·ASEAN FTA]

Q 질 의

인도네시아로부터 제품 수입 시 제품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되는 드럼(포장용기)의 원산지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답 변

한-아세안 FTA 상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용기의 경우 상품의 원산지 판정 시 동 포장용기는 제외하고 상품에 대한 원산지만 판정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051 선적일 후 발급된 B/L 인정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B/L이 물품선적 후에 발급된 경우 한-아세안 FTA에 따른 직접운송 증빙자료로서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아세안 FTA의 경우 B/L이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되고, B/L 상에 선적항·경유지·도착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B/L에 기재된 물품에 대해 운송인이 전 운송구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발행한 경우라면 사후에 발급된 경우라도 직접운송 증빙을 위한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52 통과선하증권의 해석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한-EU FTA에 따른 직접운송 증빙자료 중 '수출당사자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는 B/L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A 답 변

한-EU FTA의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 중 '수출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는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全) 구간에 대해 책임지기로 하고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053 완전생산기준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원산지 기준이 WO인데 원산지증명서의 제9란(총 중량 또는 기타 수량 및 가격)에 FOB 가격을 기재한 경우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원산지증명서의 제9란에 FOB 가격은 원산지 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산지 기준이 완전생산기준인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FOB 가격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054 한-중 FTA 직접운송 요건 입증방법

[관련 협정: 한·중 FTA]

Q 질 의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직접운송 요건 입증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한-중 FTA를 적용받고자 하는 원산지 상품이 홍콩을 경유하는 경우 수출국에서 수입 까지 전체 운송경로 정보(출발지, 경유지, 도착지)가 기재되고, 최초운송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단일통과선하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 가능합니다.

통과선하증권이 없는 경우에는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에 따라 직접운송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경우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 가능합니다.

055 최소허용수준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EFTA FTA]

Q 질 의

세번변경기준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한 세번의 재료사용 시 미소기준을 적용 가능한가요?

HS 제8536.69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8538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은 것

A 답 변

세번변경기준에서 제외되도록 명시된 세번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나, 한-EFTA FTA 제5조 규정에 의거 제외 세번에 해당하는 물품이 비원산지 재료라 하더라도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056 FOB 가격 산정방법

[관련 협정 : 한·베트남 FTA]

Q 질 의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수출자의 FOB 가격을 사용하여 원산지 기준(RVC) 충족 여부를 판정할 수 있나요?

A 답 변

한-베트남 FTA 제3.26조에 의거 FOB 가격이란 생산자로부터 수출국의 최종 선적 항구 또는 장소까지 드는 운송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가치입니다.

따라서 수출자가 생산자에게 수출 시의 FOB 가격을 제공하여준다면 생산자는 그 가격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057 직접운송에서의 '경유'의 의미

[관련 협정 : 공통]

Q 질 의

FTA의 직접운송과 관련하여 '경유(transit through)'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 답 변

FTA에서 원산지 상품이 양 당사국 간 직접 운송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당사국 또는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접운송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정의 직접운송 규정에서 '비당사국 경유'의 의미는 해당 선박이 비당사국을 단순 경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058 비당사국 경유물품의 직접운송 요건 입증자료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EU 국가의 원산지 상품이 중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 입증자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EU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단일탄송화물의 경우 비당사국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않으며, 협정에서 정한 공정(하역, 재선적, 보존공정) 이외의 공정이 없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직접운송 충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구간(수출 당사국에서 경유국을 포함하여 수입 당사국까지)에 대해 책임지기로 하고 발행한 통관선하증권 또는 비당사국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 등을 증명하여 비당사국 관세당국에서 발행한 서류(예 : 비가공증명서 등)로 직접운송 충족 여부 입증이 가능합니다.

059 경유국에서 발급한 B/L의 통과선하증권 인정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중 FTA]

Q 질 의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물품 수입 시 경유국에서 발급한 B/L도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중 FTA를 적용받고자 하는 원산지 물품이 홍콩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 운송서류가 경유국에서 발급되었다하더라도 인수장소, 선적항, 도착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있고, B/L에 기재된 물품에 대해 최초 운송업자가 전구간에 대해 책임지고 발행한 경우라면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060 제3국 경유물품의 직접운송 요건 증빙서류

[관련 협정: 한·EFTA FTA]

Q 질 의

스위스에서 네덜란드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직접운송 증빙자료로 인정 가능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답 변

한-EFTA FTA 제14조(직접운송) 규정에 의거 비당사국을 경유할 경우, 경유국 세관의 감시하에 협정에서 정한 공정만 수행해야 하며, 동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전체운송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운송서류 또는 상기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여 경유국 세관에서 발행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061

누적적용을 위해 비양허품목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APTA]

Q

질 의

체약상대국에서 누적적용을 위해 양허대상품목이 아닌 품목(원재료)에도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APTA 원산지증명서는 APTA 양허표상 특혜 품목(최종상품)에 대해 발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상품에 대한 누적이 입증 목적으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규정(부속서 2)' 제1조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물품에 대해서도 APTA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062

누적적용을 위한 비양허품목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기

[관련 협정 : APTA]

Q

질 의

특혜적용이 아닌 누적적용을 목적으로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3근무일이 지난 후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운영절차' 제4조에서 원산지증명서는 수출국의 발행당국이 수출 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혜관세 적용 목적이 아닌 누적기준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에는 수출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후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63 통과선하증권 인정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House B/L이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B/L상에 선적항·경유지·도착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B/L에 기재된 물품에 대해 운송인이 전(全) 운송 구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발행한 경우라면 포워더가 발행한 House B/L도 직접운송 증빙을 위한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064 원산지 기준 표기 해석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한-미 FTA에서 'WO', 'PSR', 'PE'는 무슨 의미인가요?

A 답 변

한-미 FTA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WO :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안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② PSR :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협정에서 정한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한 상품
- ③ PE :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065 역외산 물품을 수출국에서 소분 작업 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아프리카산 견과류를 독일에서 소분포장(로스팅이나 열처리 가공하지 않으며, 첨가물 없음)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한 경우 한-EU FTA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EU 국가로부터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상품이 한-EU FTA 적용을 위해서는 ① 동 협정에서 정한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일 것, ② 동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 기준 충족(불인정공정 이상 공정 수행 포함), ③ 상기 ①, ②이 충족되는 6,000유로 초과 원산지 상품인 경우에는 해당 원산지 상품이 상세하게 기술된 송품장·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EU 역내소재 인증수출자가 동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한 원산지신고서 구비, ④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산 견과류를 독일에서 별도의 가공 없이 소분포장만 하는 경우에는 한-EU FTA에서 정한 불인정공정에 해당돼 협정관세 적용이 곤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66 부가가치비율 계산 시 직접법과 공제법 선택사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역내부가가치비율 계산 시 직접법과 공제법을 선택할 수 있나요?

A 답 변

한-아세안 FTA에 따른 역내부가가치비율 산정 시에는 공제법과 직접법 중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선택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한 회계연도 동안에는 선택된 방법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067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의 원산지 기준 해석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의 원산지 기준에서 단서조항의 해석방법 문의드립니다.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의 원산지 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에 해당하는 원산지 구성중합체가 중량으로 전체 구성중합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A 답 변

한-미 FTA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의 원산지 기준 단서조항은 동 호의 제품을 생산할 때 재료로 제3901호 내지 제3915호에 해당하는 구성중합체가 사용된 경우에는 “제품 생산에 사용된 전체 구성중합체의 중량에서 HS 제3901호~제3915호에 해당하는 원산지 구성중합체의 중량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068 스크랩으로 생산한 제품의 완전생산기준 충족 여부

[관련 협정 : 한·인도 CEPA]

Q 질 의

철판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철스크랩으로 수출물품 생산 시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할 수 있나요?

A 답 변

한-인도 CEPA 제3.3조에서는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으로부터 얻어진 스크랩은 완전생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다른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은 완전생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해당 스크랩만으로 제품을 생산한 경우 동 협정의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069 통과선하증권 인정 여부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B/L의 운송경로 기재란에 경유국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Description란에 전체운송경로(선적항, 경유지, 도착항)이 기재된 경우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가능한가요?

A 답 변

B/L이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되고, B/L상에 선적항·경유지·도착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B/L에 기재된 물품에 대해 운송인이 전 운송구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발행한 경우 직접운송 증빙을 위한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B/L이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되고 B/L의 운송경로 기재란에 선적지(수출 당사국)와 도착지(수입 당사국)가 기재되어있고 Description란에 기재된 내용으로 물품의 전체 운송경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운송경로 기재란에 경유지가 기재되어있지 않더라도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70 제5903.90호 원산지 기준 해석방법

[관련 협정: 한·미 FTA]

Q 질 의

제5903.90호의 경우 원산지 기준에서 단서조항은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나요?

제5903.90호의 원산지 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11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8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7호부터 제5408까지 및 제5512호부터 제551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A 답 변

제5903호의 제품생산에 단서조항에 규정된 세번의 원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야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071 비당사국 경유 시 증빙자료

[관련 협정 : APTA]

Q 질 의

비당사국 경유 시 직접운송 증빙자료로 인정 가능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답 변

원산지 상품이 비당사국 경유 시 직접운송 충족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의 경우 그 증빙자료로 통과선하증권 또는 경유국에서 원산지 상품이 머물러 있는 상태를 증명하여 경유국 관세당국에서 발행한 서류로 직접운송 입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72 통과선하증권 인정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ASEAN FTA]

Q 질 의

태국에서 말레이시아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운송서류에 출발지가 말레이시아, 도착지가 우리나라로 기재된 경우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통과선하증권은 송하인이 운송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서 다른 선박회사의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운과 육운을 교대로 이용한 경우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全)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발행하는 선하증권입니다.

운송서류의 운송구간이 말레이시아(출발지)에서 우리나라(도착지)로 기재된 경우 해당 운송장으로 운송주선인이 책임지는 구간은 말레이시아에서 우리나라이므로 한·아세안 FTA의 직접운송 증빙을 위한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73 통과선하증권 인정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미 FTA/한·호주 FTA]

Q 질 의

미국 또는 호주에서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B/L상 '선적지 : 미국 또는 호주'와 '도착지 : 한국'을 기재하고 description란에 환적 정보를 기재한 경우 비가공증명서 없이 직접운송 증빙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미국 FTA, 한-호주 FTA의 경우 원산지 상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 구간을 책임지고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또는 동 상품이 비당사국에서 비당사국 세관통제하에 머물러 있었음을 입증하여 발행한 서류(예 : 비가공증명서 등)로 직접운송 충족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운송서류의 운송정보 기재란에 출발지(미국 또는 호주), 도착지(부산)이 기재되어 있고, 물품상세란(Description)에 경유국의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74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제5401.1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제외 세번에 대해 미소기준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 제외되도록 명시된 세번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나 한-미 FTA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세번에 해당하는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된 경우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075 제1901.20호의 원산지 기준 해석방법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제1901.20호의 원산지 기준에서 괄호 안의 제외 세번 해석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1901.20호의 원산지 기준

1. 버터지방의 함유량이 전체 총량의 25%를 초과하는 것(소매용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의 것과 제1102.90호, 제1103.19호, 제1103.20호, 제1104.30호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4류의 비원산지 낙농품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2. 기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의 것과 제1102.90호, 제1103.19호, 제1104.19호, 제1104.29호 및 제1104.30호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A 답 변

한-미 FTA 제1901.20호의 원산지 기준 중 기타의 원산지 기준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1006호의 것과 제1102.90호, 제1103.19호, 제1103.20호, 제1104.30호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이며, 이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원재료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나, 괄호 안에 해당하는 세번의 원재료는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야만 동 세번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076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 작성방법

[관련 협정 : 한·ASEAN FTA]

Q 질 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의 결합기준인 경우 원산지 증명서 작성 시 원산지 기준 기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6210.20-2000호의 원산지 기준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

A 답 변

원산지 상품의 원산지 기준이 2단위 세번변경기준과 특별공정의 결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8란(원산지기준)에는 'CTC+SP' 또는 CC+SP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077 미소기준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제1901.90호의 원산지 기준 중 단서조항에 미소기준 적용이 가능한가요?

제1901.9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 ①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1901.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제0401호에서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한다.
- ② FOB 가격이 40% 이상인 것. 다만, 제0401호에서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제10류 및 제11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어느 당사국에서든 원산지 상품인 것에 한한다.

A 답 변

한-아세안 FTA의 최소허용수준은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이 완제품 세번으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비원산지 재료의 사용을 최소수준으로 허용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제1901.90호의 원산지 기준 중 단서조항은 세번변경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최소허용수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078 다른 세번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미 FTA]

Q 질 의

해당 호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다른 호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미 FTA에서는 부속서 6-가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물품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079 비당사국 경유 시 직접운송 증빙자료 인정 여부

[관련 협정 : 최빈개도국특혜]

Q 질 의

방글라데시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 시 B/L에 선적항, 경유지, 도착항이 모두 기재한 경우 최빈특혜 직접운송 증빙자료로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는 최빈개발도상국으로부터 원산지 상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하증권, 수출참가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상업송품장 원본, 그 밖의 직접운송 요건을 증명하는 보충서류로 입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B/L상에 물품의 수취장소·선적항·경유지·도착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B/L에 기재된 물품에 대해 운송인이 전 운송구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발행된 통과선하증권을 구비한 경우라면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080 한-영 FTA 발효 이후 영국 경유 화물의 직접운송 충족 여부(BWT 거래 시)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한-영 FTA 발효 후 EU산 물품이 영국의 물류창고에 보관 후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BWT 거래) 직접운송 충족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영 FTA 발효 후 영국은 한-EU FTA의 비당사국이 됩니다. EU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 영국 물류창고에 보관 후 그중 일부를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는 단일 탁송화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한-EU FTA에 따른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081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유 화물의 직접운송 충족 여부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브렉시트로 영국이 EU 회원국에서 탈퇴 후 EU산 물품이 영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직접운송 충족이 가능하나요?

A

답 변

브렉시트로 영국이 EU 회원국을 탈퇴하는 경우에는 영국은 한-EU FTA의 비당사국이 됩니다.

따라서 브렉시트 이후 EU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 영국을 단순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 최초 운송업자가 전(全) 구간에 대해 책임지고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또는 영국 관세당국에서 해당 상품이 영국에 머물러 있는 동안 세관통제하에 있었음을 입증하여 발급한 서류로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082

살아있는 동물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관련 협정 : 한·뉴질랜드 FTA]

Q

질 의

호주에서 출생 후 뉴질랜드에서 사육된 말을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한-뉴질랜드 FTA에서는 살아있는 동물의 경우에는 체약당사국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질랜드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말을 구매하는 경우 ①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품의 원산지 기준을 확인하여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와, ② 직접운송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서류를 구비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에서 출생 후 뉴질랜드에서 사육된 말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뉴질랜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083 원상태 수출 시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이탈리아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한 가방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독일로 수출하려는 경우 우리나라 인증수출자가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IT'로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EU FTA에서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EU 국가로 수입될 때, 수출자가 상업서류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물품의 원산지가 이탈리아(IT)인 경우에는 해당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084 제8411.81호의 원산지 기준의 해석 방법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제8411.81호의 원산지 기준 해석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8411.11 내지 82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이 상품군 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1.11호 내지 제8411.82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A 답 변

제8411.81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HS 제8411.81호를 제외한 다른 소호의 물품에서 HS 제8411.81호로 변경된 것'으로 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해석됩니다.

085 누적적용 방법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중국에서 한국산 재료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누적적용을 위해서 한국산 재료가 중국에 수입될 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하나요?

A 답 변

한국산 재료를 수입하여 중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할 경우 해당 재료가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결정기준 및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수입 시 동 재료가 협정관세 적용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누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 결정기준 및 협정에 규정한 요건 충족 여부 등은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86 제8414.80호의 원산지 기준의 해석방법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제8414.80호의 원산지 기준 해석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8414.10 내지 8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14.10호 내지 제8414.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A 답 변

제8414.8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HS 제8414호를 제외한 다른 호의 물품에서 HS 제8414.80호로 변경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087 제8529.9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방법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제8529.90호의 제품생산 시 동일 소호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한 경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8529.9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같은 소호 내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852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이 상품의 FOB 가격의 40% 이상인 것

A 답 변

동일한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아세안 협정문 원산지 규정’ 제8조(불인정 공정) 규정에 따라 불인정 공정 이상의 공정을 반드시 수행해야만 최종제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088 AWB의 통과선하증권 인정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비당사국 경유 시 항공화물운송장(AWB)에 선적지, 도착지와 경유지를 기재하여 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항공화물운송장(AWB)에 수출 당사국으로부터 경유국을 통해 우리나라까지 전체 운송경로를 포함하고 있고 운송서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해 운송인이 전(全) 운송구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발행하였다면 단일 운송서류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89 최소허용기준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제2103.90-909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세번(제7류 및 제9류)에도 미소기준 적용이 가능한가요?

제2103.90-909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제2103.90.9090호의 기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제7류 및 제9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나.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7류 및 제9류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으로 한정한다.

A 답 변

한-아세안 FTA 제10조(최소허용수준) 제1항에 따르면 '최소허용수준'은 세번변경기준에 한해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103.90호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 중 단서조항은 세번변경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미소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090 포장용기의 원산지 결정방법

[관련 협정: APTA]

Q 질 의

우리나라의 완전생산품인 마른김을 비원산지 포장재로 포장하는 경우 원산지 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APTA 협정문 제6조(포장의 취급)의 규정은 소매용 포장재로 사용된 재료는 최종 생산품과 함께 전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최종 생산품이 완전생산품이면 소매용 포장재 역시 완전생산품을 구성하는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마른김이 완전생산품이라면 소매 포장을 위하여 사용된 포장용 재료는 최종 생산품의 전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전체를 완전생산품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091 원산지 상품 해당 여부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제0902호의 제품 생산 시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 기준 충족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제0902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모든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0902호의 제품 생산 시 동일한 호의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한-EU FTA 제6조(불충분한 작업 및 가공)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92 직접운송 충족 여부

[관련 협정: 한·미 FTA]

Q 질 의

멕시코에서 멕시코산 제품 선적 후 출발 → 미국을 경유하여 미국에서 협정 적용을 받기 위한 미국산 제품을 선적하여 → 우리나라로 운송된 경우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미 FTA 원산지 제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거나 환적이 발생하는 경우 협정문 제6.13조(통과 및 환적) 규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① 양 당사국 영역 밖에서 하역·재선적,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한 공정 이외에 작업을 거치지 않았을 것과, ② 비당사국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산지 제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지 않고 미국을 출발하여 우리나라로 직접운송 되는 경우라면 전체 운송경로가 기재된 단일의 운송서류로 운송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93

비당사국에서 라벨링 작업 수행한 경우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EFTA FTA]

Q 질 의

스위스에서 생산한 제품을 비당사국인 네덜란드 보세구역에서 한글 라벨링 작업 후 수입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EFTA FTA는 계약 당사국 간 직접운송되는 상품에만 특혜대우가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비당사국을 경유할 경우에는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당사국에서의 재라벨링 작업은 위에 제시한 허용 가능한 작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094

원산지 기준 기재방법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인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10란(원산지 기준)에 'WP'로 기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WO'로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원산지 결정기준 표기는 협정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계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이므로 원산지 결정기준 표기는 'WO'로 기재해야 합니다.

095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의 원산지 규정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본품과 부속품이 1건의 송품장으로 함께 수출되는 경우 원산지 판정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한·중 FTA의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의 원산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본체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④ 수입 시 상품과 함께 인도되고 제공, ⑤ 부속품 등이 상품과 같이 분류되고 그 상품과 별도 송품장이 발부되지 아니할 것, ⑥ 부속품 등의 수량과 가치가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원산지 판정 시 부속품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 ② 본체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본체의 원산지 판정 시 부속품 각각의 원산지에 따라 본체의 재료비에 계상되어야 합니다.

096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 작성방법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PSR이 완전생산기준(WO)인 상품의 경우 C/O상 제10란(원산지 기준)의 기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 기재 시에는 기재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① 제3.4조에 따른 완전생산 물품이거나, PSR 기준상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WO'로 기재
- ②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WP'로 기재
- ③ 그 외 나머지는 PSR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PSR'로 기재

097 BWT 거래 시 직접운송 충족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덴마크에서 수출한 물품을 일본(비당사국)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그중 일부 수량을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EU FTA의 직접운송과 관련 단일 탁송화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3국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만 허용하고 있어 제3국에서 화물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098 제5903.90호의 원산지 기준 해석방법

[관련 협정 : 한·EU FTA/한·터키 FTA]

Q 질 의

제5903.90호의 원산지 기준에서 '사로부터 생산된 것(Manufacture from yarn)' 표현과 관련하여 'Yarn forward'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Fabric Forward'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5903.9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 사로부터 생산된 것(Manufacture from yarn)
- 날염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머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별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A 답 변

HS코드 제5903.90호(플라스틱 피복직물)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사로부터 생산된 것(Manufacture from yarn)'은 '사(yarn)를 가지고 제직·편직공정을 거쳐 해당 물품을 해당국에서 수행'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제직기준(Fabric-forward)이 적용됩니다.

※ 원사기준(Yarn-forward) : 사(yarn)를 만드는 공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직물을 만드는 공정, 재단·봉제공정까지 해당국에서 수행

099 제8483.5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제8483.5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제8483.50호 원산지 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8482.10부터 8482.80까지, 8482.99, 8483.10부터 8483.40까지, 8483.60 및 8483.90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품목번호 8482.10부터 8482.80까지, 8482.99, 8483.10부터 8483.40까지, 8483.60 또는 8483.90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40%, 공제법의 경우 50%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A 답 변

HS 제8483.50호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원산지 결정기준(1)은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6단위 세번변경이 이루어질 것, 다만 특정 세번*으로 분류된 재료는 원산지 재료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 제8482.10호~제8482.80호, 제8482.99호, 제8483.10호~제8483.40호, 제8483.60호, 제8483.90호

원산지 결정기준(2)는 (1)에서 원산지 재료로 사용하도록 규정된 특정 세번이 원산지가 아닌 비원산지 재료로서 제품 생산에 사용될 경우 상품의 조정가치(AV)에 포함된 모든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집적법)에 따른 역내가치포함 비율이 40% 이상 또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기초로 한 방법(공제법)에 따른 역내가치포함 비율 50% 이상일 것을 의미합니다.

100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 기재방법

[관련 협정 : 한·인도 CEPA]

Q 질 의

제7202.92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이나 실제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 기준이 'CTSH + RVC 50%'으로 상이하게 기재된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가요?

A 답 변

HS 제7202.92호는 협정문 부속서 3-가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을 'CTH'로 기재해야 하며 협정과 다르게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101

BOM 작성방법 및 증빙자료

[관련 협정 : 공통]

Q 질 의

수출물품의 원산지 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BOM 작성 시 원재료의 금액 기재 여부 및 관련 증빙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수출물품의 원산지 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 BOM 등 원산지 확인을 위한 서류 작성 시 생산에 투입된 모든 원재료를 기재하되 가격에 대한 정보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울러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로는 원료구입명세서, 생산공정명세서, 원재료의 품목 분류확인자료 등 원재료 생산과 관련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라면 모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질 의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PSR)'이나, 중국 수출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원·부재료를 중국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원산지 재료 생산(WP)'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준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로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정한 규정대로 작성되어야 하며 협정에 의거, 원산지증명서 제10란(원산지 기준)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WO : 협정 제3.4조 및 부속서3-가(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

WP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협정 제3장에 부합하는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PSR :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세번변경, 역내부가가치비율, 특정공정요건 또는 부속서3-가에 명시된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여 생산된 경우

OP : 협정 제3.3조(특정상품의 취급)를 적용받는 경우

따라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세번변경(PSR)이어도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 재료로만 최종제품이 생산된 경우라면 원산지 기준을 'WP'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03 홍콩 지정장소 명칭의 인정 여부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홍콩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기준’ 지침에서 제시된 지정장소 중 하나인 ‘Kwai Tsing Container Terminals(1~9)’와 관련하여 3번 터미널의 경우 명칭이 ‘Kwai Chung Container Terminal’로 기재되어 사용된 경우 동 지침에서 인정하는 지정장소인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Kwai Chung Container Terminal’과 관세청 ‘비가공증명서 발급기준 (2017.4.10.)’에서 규정된 ‘Kwai Tsing Container Terminals(1~9)’의 명칭은 홍콩에서 둘 다 사용하는 명칭임을 알려드립니다.

104 최소허용수준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 중 특정 세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제외 세번에 대해 협정 제6.6조(최소허용수준)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미 FTA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특정 세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협정 부속서 6-나(최소허용수준에 대한 예외)’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제외 세번이 원산지가 아닌 경우 미소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05

비당사국에서 수입통관된 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페루 FTA]

Q

질 의

페루산 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통관 후 추가 가공 없이 그대로 한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한-페루 FTA 협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페루산 제품이 미국에서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미국으로 수입된 후 다시 우리나라로 재수출되는 경우는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06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FOB 가격 기재 여부

[관련 협정: 한·ASEAN FTA]

Q

질 의

원산지증명서(AK C/O) 발급 시 원산지 기준이 CTH인 경우에도 '제9란'에 'FOB 가격' 기재하여야 하나요?

A

답 변

한-아세안 FTA 부록1 제5조(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따라, 원산지증명서(AK 서식)는 역내가치포함비율 기준이 적용되는 때에만 제9란에 FOB 가치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7 비당사국 경유물품 직접운송 충족 여부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미국에서 캐나다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 시 발행된 Multimodal Transport 복합 운송서류에 ① 미국 내에서 물품을 수령하여 출발, ② 경유국을 포함하여 전체 운송경로가 기재, ③ 미국에서 발행된 경우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A 답 변

운송서류가 수출국 최초 운송업자가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담보하는 단일의 운송서류를 발급한 경우라면 한-미 FTA 제6.13조(통관 및 환적)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8 비당사국 경유물품의 직접운송 충족 여부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중국에서 홍콩으로 운송 시 발행된 재화청단과 홍콩에서 한국으로 운송 시 발행된 B/L의 컨테이너 번호와 Seal No.가 일치하는 경우 직접운송 요건이 충족되나요?

A 답 변

컨테이너 번호와 실(seal) 번호가 모든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동 협정의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고,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및 협정에 규정한 요건 충족 여부 등은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109 EU 역내국 경유 시 직접운송 충족 여부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스페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이 EU 내의 다른 국가(예: 핀란드)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 상품이라도 양 당사국 간 직접운송 되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한-EU FTA에서 양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스페인에서부터 EU 역내 국가(예: 핀란드)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은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합니다.

110 부가가치기준에서 분모값인 FOB(EXW) 가격에 대한 기준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원산지 판정 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려 하는데, 오랫동안 재고로 있던 물품인 경우나 혹은 불량품이라서 할인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 산정 공식의 분모에 어떠한 가격을 대입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대량구매, 사양 부적합 등으로 인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 판매 시에도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EXW, FOB 가격을 산정하여 역내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1

역내산 재료로만 생산된 제품이 가공공정기준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제품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가 모두 역내산이고 완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가공공정인 경우, 원재료가 모두 역내산임에도 불구하고 가공공정기준을 충족시켜야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원산지 재료만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의 경우, 개별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요구하는 가공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FTA 협정문과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2

활성탄의 간접재료 여부 및 BOM에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원산지증명서 근거자료로 BOM 작성 시 활성탄(최종 제품의 색깔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며, 정제공정 이후에는 활성탄이 모두 제거됨)을 기재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활성탄의 경우 제종공정 등의 확인을 통해 최종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재료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는 상기 간접재료(또는 중간재)가 원산지 결정 시 재료로 간주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해당 FT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OM은 생산에 투입된 모든 재료를 표시할 수 있는 자재명세서로서 간접재료도 자재명세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재명세서의 작성요령을 FTA나 관련 국내 규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생산 사실을 반영하여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113 역외가공 어획물의 원산지 판정

[관련 협정 : 한·EFTA FTA]

Q 질 의

노르웨이산 연어를 덴마크의 노르웨이 업체의 가공 공장에서 내장제거 및 포장을 하여 한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가 어느 국가로 판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노르웨이와 덴마크 간 수송비용을 포함하여, 해당 노르웨이 영역 밖에서 축적된 비용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영역 밖에서 추가된 모든 재료의 가격(추가가격)이 수출된 연어의 공장도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면 노르웨이를 원산지로 인정받아 한-EFTA 협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14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방법

[관련 협정 : 한·EU FTA]

Q 질 의

알루미늄빌렛(제7601.20호) 생산과정에서 알루미늄 잉곳(알루미늄 99% 이상)을 98% 이상, 망간, 실리콘, 철, 구리, 기타를 2% 이내 투입하는 경우 아래 원산지 결정기준 제2호를 충족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7601.20호의 원산지 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비합금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열 또는 전해처리하여 생산된 것

A 답 변

제7601호의 원산지 기준 중 '비합금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열 또는 전해처리에 의한 생산된 것'은 제7601호의 제품 생산 시 사용 가능한 비원산지 재료는 비합금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스크랩과 알루미늄 웨이스트이며 그 외의 재료는 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115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하여 가공 후 다시 수출할 때 원산지 판정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국내 제조 물품을 EU국으로 수출 후 재수입하여 표면처리 가공 후 재수출할 때 국내산으로 원산지 판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국내에서 제조되어 EU 지역으로 수출되어 현지에서 사용되다 유지보수 목적으로 재수입되는 상품은 동 상품이 한국산으로 수출되었다 하더라도 EU 지역에서 통관되어 사용된만큼 원산지 지위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역외산으로 간주됩니다.

상기 역외산 재료로 국내에서 생산(표면처리)한 상품은, 한-EU FTA상 요구되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다시 수출되는 상품의 HS 코드와 이에 해당하는 협정상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의 수행 여부(원산지 결정기준)의 확인을 통해 한국산으로 판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6

비원산지 물품의 세트물품 특례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미 FTA]

Q

질 의

메모리폼 베개를 수입하는데, 메모리폼은 미국에서 생산되었고 베개 커버는 중국산인 경우 메모리폼 베개가 미국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베개세트가 섬유 또는 의류의 소매용 세트를 이루는 경우에 중국산 커버의 가격이 전체 베개세트의 관세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단, 베개세트의 섬유 또는 의류의 소매용 세트 해당 여부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117

골프채 부분품을 조립한 완제품 골프채의 원산지 판정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중국, 미국에서 골프채 부분품(9506.39-1000)을 수입 후 한국에서 일부 밀링 및 조립 등의 가공을 통해 골프채 완제품(9506.31-0000)으로 제조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골프채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우리나라 원산지 판정기준(수입물품 기준 준용) 적용 시 골프채는 골프채 조립공정(HS 9506.39 → 9506.31) 수행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밀링 및 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골프채 완제품이 생산된 경우에는 수출 시 골프채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118

링킹 공정이 봉제 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협정 : 한·베트남 FTA]

Q 질 의

제6110.12호의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재단 및 봉제에 링킹(Linking, 같은 것 끼리 루프를 연결하여 꿰매는 것) 공정이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6110.12호 원산지 결정기준

2단위 세번변경기준(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채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A 답 변

한-베트남 FTA 제6110.12호의 원산지 기준 중 봉제에는 링킹 봉제기에 의한 링킹 공정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협정 제6110.12호의 원산지 기준 중 재단 및 봉제의 가공방식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봉제 공정 외에도 재단공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19 중간재 규정 적용 요건

[관련 협정 : 한·베트남 FTA]

Q 질 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 부가가치기준뿐 아니라 세번변경기준이나 가공공정기준인 경우에도 중간재 규정이 적용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베트남 FTA 중간재는 모든 원산지 결정기준에 적용 가능하며, 동 협정에서는 중간재 사용을 위한 지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20 이산화탄소 주입공정의 불인정공정 여부

[관련 협정 : 한·ASEAN FTA/한·베트남 FTA]

Q 질 의

탄산과실주스를 생산하는 공정 중에 특수한 기계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공정이 있는데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탄산과실주스의 CO₂ 주입공정이 특수한 기계를 사용한 경우라면 상기 두 협정상 불인정공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21 중간재로 간주 가능한 물품의 범위

[관련 협정 : 한·ASEAN FTA/한·베트남 FTA]

Q 질 의

완제품 생산 과정에서 생산되는 반제품이, 따로 판매된 실적이거나 다른 조건이 없어도 중간재 지정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중간재는 최종제품 생산과정에서 생산되고, 독립된 품목분류가 가능한 원산지 재료라면 중간재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2 역외산 소매 포장 및 라벨의 원산지 판정

[관련 협정 : 한·인도 CEPA]

Q 질 의

완전생산된 의류를 폴리백으로 소매용 포장을 하고 종이택(부속품)을 붙이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소매포장재 관련) 한-인도 CEPA의 경우 포장재와 해당 물품이 동일 HS 세번으로 분류되고, 해당 물품이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한 원산지 상품이라면 포장재를 원산지로 간주하여 원산지 판정 시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벨 관련) 또한 상기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는 의류에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부착된 역외산 라벨(종이태그)은 완제품의 원산지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23 누적적용 증빙서류

[관련 협정 : 한·인도 CEPA]

Q 질 의

한국산 원단을 인도의 업체에 제공하고, 인도에서 생산된 의류를 다시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한국산 원단의 원산지증명서가 특혜 적용할 때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한-인도 CEPA 제3.7조(누적)에서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나온 원산지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에 결합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이 원산지로 간주되며, 동 협정에서 원산지 재료란 동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원산지 자격을 인정받은 재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인도 CEPA 누적적용을 위한 증빙은 동 협정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어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가능합니다.

124

고물상이 수집한 폐기물의 완전생산 입증자료

[관련 협정 : 한·인도 CEPA]



질 의

공장이나 아파트 등에서 수집한 폐기물을 수출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완전생산기준 입증자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 변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이상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복원 또는 수리될 수 없으며 부품 또는 원재료의 처분이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당한 물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수집된 폐기물의 완전생산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며, 고물상이 폐기물을 수집한 개인, 아파트, 공장으로부터 상기 입증자료를 입수하여 이를 근거로 작성한 원산지확인서를 원산지 증빙서류로서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25

완제품 수입 후 판매용 포장을 수행한 경우 누적기준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중 FTA]



질 의

중국에서 조립이 완료된 자동차 'headlamp'를 국내로 보내 판매용으로 포장한 후 다시 중국으로 판매할 때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 변

중국에서 수입한 완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매포장 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126 누적기준의 '결합' 의미 해석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중국산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고순도작업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할 때 재료 누적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누적기준 중 해당 재료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의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한-중 FTA 협정상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에서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그렇게 결합된 상품 또는 재료는 다른 쪽 당사국에서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로 간주'됩니다(한-중 FTA 제3.6조).

상기 '상품에 결합'은 재료와의 단순한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상대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를 상품 생산국의 원산지 재료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품 생산국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27 최소허용기준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캐나다 FTA]

Q 질 의

제2106.09-9000호에 분류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을 때, 생산에 투입되는 제1302.19호 비원산지 원료가 완제품 공장도가격 대비 6% 가량인 경우 최소허용기준 적용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1302.19호 원산지 결정기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A 답 변

상품과 6단위 세번이 동일한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되지 않았다면,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세번의 비원산지 재료 사용 시 미소기준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IV

품목분류



001 수출물품의 세번이 체약상대국과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 우리나라 수출세번과 상대국 수입세번이 상이한 경우 상대국 수입세번으로만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아 원산지신고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우리나라 수출세번과 상대국 수입세번 상이 시에는 공식적인 서류*로 HS 번호가 다름이 확인되고 우리나라 HS 번호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해 협정상대국의 HS 번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협정상대국의 HS 번호로 추가로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 수입신고수리필증, 품목번호확인서, 사전심사결정서,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등

따라서 우리나라 세번과 상대국 세번으로 모두 인증을 받은 후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 수출물품이 양국 세번으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002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신고 세번 상이 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중 FTA]

Q 질 의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4단위 세번이 상이하고 각각 세번의 원산지 기준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4단위 세번이 상이하고 각각의 원산지 기준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인 경우는 수입신고서의 세번으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품목분류 번호 해석 상이에 대한 지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003 원산지증명서 세번과 수입신고 세번 상이 시 BOM으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확인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세번과 우리나라 수입세번이 상이하고 수입세번의 원산지 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BOM으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서 세번의 원산지 기준이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 기준으로 충족 여부가 확인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004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신고 세번 상이 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4단위 세번은 동일하나,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세번의 원산지 기준은 CTH, 수입신고서의 세번의 원산지 기준이 CTSH인 경우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예) C/O세번 : 8419.90(CTH) / 수입신고서 세번 : 8419.40(CTSH)

A 답 변

원산지신고서와 수입신고 세번의 4단위가 동일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은 CTH, 수입신고서 세번의 원산지 기준은 CTSH인 경우는 원산지증명서로 수입국 세번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함이 확인되므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005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신고 세번 상이 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 세번이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이 PSR로 기재되어 있고 수입신고서 세번의 원산지 기준이 CTH인 경우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 원산지증명서 세번의 원산지 기준 : CTH or RVC 30

A 답 변

수입신고서의 원산지 기준 CTH이고,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기준이 PSR(RVC 30 or CTH)로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부가가치기준으로 충족하였는지 세번변경기준으로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원산지증명서로 수입신고 세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이 되지 않아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 가능합니다.

006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신고 세번 상이 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수출국(미국)과 수입국(우리나라) 세번이 상이하며,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은 PE로 기재되어 있고 수입신고서 세번의 원산지 기준은 CTH인 경우 한·미 FTA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이 'PE'로 기재되고, 수입신고서 세번의 원산지 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수입국 세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가 원산지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협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007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보완방법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품목분류 번호 해석상이에 따른 해석 지침에서는 원산지증명서로 수입국 세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보완 후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보완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품목분류 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에서 원산지증명서 보완의 의미는 수입국 세번으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세번 및 원산지 기준을 수입국 세번 및 수입국 원산지 기준으로 정정 발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008 원산지증명서 세번과 수입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중 FTA]

Q 질 의

중국에 수입하는 물품의 세번이 우리나라 수입신고 세번과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세번(HS)의 원산지 기준으로 수입국 세번(HS)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의 세번의 원산지 기준으로 수입신고서 세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이 곤란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009 원재료의 세번이 체약상대국의 세번과 상이한 경우 원산지 기준 판정 시 적용되는 원재료 세번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완제품의 세번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세번이 동일하지만 원재료의 세번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세번이 서로 상이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완제품)의 원산지 기준 판정 시 원재료의 세번을 중국 세번으로 하여 판정 가능한가요?

A 답 변

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 판정 시 원재료의 세번은 우리나라 세번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10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신고 세번 상이 시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하고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세번의 원산지 기준은 WP이며 수입신고서상의 세번이 CTSH인 경우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국 세번이 상이 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 기준으로 수입국 세번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이 'WP'로 기재되고, 수입신고서 세번의 원산지 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수입국 세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가 원산지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협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011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중 FTA]

Q 질 의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4단위 세번이 동일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이 CTH,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CTSH인 경우 협정 적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수출국과 수입국 세번이 상이 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 기준으로 수입국 세번의 원산지 기준이 충족하여야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4단위 세번이 동일하고,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 기준은 CTH, 수입신고서상 HS의 원산지 기준은 CTSH인 경우는 원산지증명서로 수입국 HS로도 원산지 기준 충족함이 확인되므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012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다른 경우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미 FTA]

Q 질 의

미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세번이 우리나라 수입세번과 상이한 경우 협정 적용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국 세번 상이 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 기준으로 수입국 세번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으로 수입신고서 세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 보완 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013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우리나라 수입신고 세번이 상이하고 원산지신고서상 원산지 결정 기준이 RVC 50, 수입신고서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CTH인 경우 협정 적용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수출국과 수입국 세번 상이 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 기준으로 수입국 세번의 원산지 기준이 충족하여야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은 RVC 50이고, 우리나라 세번의 원산지 기준은 CTH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세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품목번호 해석 상이 등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협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014 우리나라 수출세번과 상대국의 수입세번이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관련 협정 : 공통]

Q 질 의

우리나라 수출세번과 상대국 수입세번이 상이한 경우 상대국 수입세번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한가요?

A 답 변

우리나라 수출세번과 상대국의 수입세번 상이 시에는 협정상대국의 HS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고, 우리나라 HS 번호와 협정상대국 HS 번호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공식서류 : 수입신고필증, 품목번호 확인서,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015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우리나라 수입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물품이 원산지증명서상 세번과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하고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원산지 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수출국과 수입국 세번 상이 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 기준으로 수입국 세번의 원산지 기준이 충족하여야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세번의 원산지 기준으로 우리나라 세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세번으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우리나라 세번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협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016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공통]

Q 질 의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 기준이 'WP' 또는 'PE'로 기재되고 수입신고서 세번의 원산지 기준이 ① 완전생산, ② 세번변경기준, ③ 부가가치기준인 경우 협정 적용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이 'WP' 또는 'PE'로 기재되었다면, ① 수입신고서 세번의 원산지 기준이 'WO'인 경우에는 협정 적용할 수 없으며, ② 수입신고서 세번의 원산지 기준이 '부가가치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인 경우에는 협정 적용 가능합니다.

017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이 'RVC 40'으로 기재되고 수입국 세번의 원산지 기준이 'RVC 40' 또는 '세번변경기준' 선택 기준인 경우 협정 적용 가능한가요?

A 답 변

수입신고서 세번의 원산지 기준이 'RVC 40' 또는 '세번변경기준'인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 기준이 RVC 40인 경우 협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018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이 'RVC 40'으로 기재되고 수입국 세번의 원산지 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이 RVC 40이고 수입신고서 세번의 원산지 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인 경우는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으로 수입신고서 세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019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보완 방법

[관련 협정: 공통]

Q 질 의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과 수입신고서 세번의 원산지 기준이 상이한 경우 협정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보완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원산지증명서의 세번과 수입신고서 세번이 상이하여 수입신고서 세번으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이 곤란해서 원산지증명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국 세번으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 후에 수입국 세번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020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인도 CEPA]

Q 질 의

인도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물품의 4단위 세번이 상이하나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과 수입신고 세번의 원산지 기준이 모두 'CTSH+RVC 35'인 경우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수출국과 수입국 세번이 상이 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 기준으로 수입국 세번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 기준이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결합기준인 경우에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협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원산지증명서 세번의 원산지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수입신고 세번의 원산지 기준 중 세번변경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 세번으로 원산지증명서 보완 후 협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021

미조립물품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세번 기재방법

[관련 협정 : 한·인도 CEPA]

Q 질 의

제8476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단순 운송상의 이유로 미조립상태로 운송되고 수출신고 시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에 따라 완성품 세번(HS 제8479호)으로 수출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완성품 세번으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인도 CEPA 협정문 제3장(원산지 규정)의 제3.16조(해석 및 적용)에 따라 세번 분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기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최종 수출품의 세번이 미조립품이 아닌 완성품 세번으로 적정하게 분류되었다면 해당 완성품 세번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022

품목번호 해석상이 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공통]

Q 질 의

FTA C/O의 HS 코드에 따르면 원산지 결정기준이 RVC 40%이고 한국 수입 세번과 그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CTSH)이 다른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수출국과 수입국 세번 상이 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 기준으로 수입국 세번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 기준은 부가가치기준(RVC40)이고 우리나라 수입 세번의 원산지 기준은 세번변경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입세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협정관세 적용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023 품목번호 상이 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베트남 FTA]

Q 질 의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한-베트남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 원산지신고서(레몬그라스 제2008.99-9000호), 수입신고서(제1211.90-9010호)

A 답 변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세번이 상이하더라도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란에 'WO'로 기재되어 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면 한-베트남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024 협정국 및 국내 원산지 기준 모두 충족 시 협정국 세번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베트남 FTA]

Q 질 의

우리나라와 협정국(베트남) 세번이 각각 상이한데, 협정국의 세번이 기재된 원산지증명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세번과 협정상대국 세번의 원산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협정상대국 세번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베트남 FTA의 경우에 우리나라 수출 세번과 베트남 수입세번이 상이하면 공식서류로 베트남 수입 세번을 확인하고, 동 세번에 해당하는 원산지 기준이 충족됨을 확인하여 베트남 수입 세번으로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025 품목분류 변경 시 수정신고 대상 해당 여부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이전에 한-중 FTA에 따라 0%의 협정 세율 적용을 받고 들어온 품목에 품목분류 사전 심사결과에 따라 세번이 변경된 경우,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답 변

품목분류 오류로 인해 신고 납부한 세액에 부족함이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품목분류번호로 수정신고를 하고 부족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 시 협정관세 적용을 받은 경우 수입신고 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 기준으로 변경된 세번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함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수정신고 시에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026 수출입 시 품목분류번호 상이한 경우 FTA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중국에서 수입하는 화학약품의 세번이 중국에서 수출할 때와 한국에서 수입할 때 일치하지 않아서 FTA 협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결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수출국과 수입국 세번 상이 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 기준으로 수입국 세번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협정 적용이 곤란하며, 수입국 세번으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후 수입국 세번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한 경우에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027 미조립물품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세번 기재방법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A사는 일부 자재를 자체 생산하고 일부는 구매한 뒤에 조립하여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설비'이다 보니 분해한 형태로 중국에 수출하여 A사 직원들이 직접 상대방국에서 조립을 하는데 수출신고서 및 원산지증명서 상 HS코드를 완제품 코드로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HS 통칙 제2호).

A 답 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따라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미조립 상태의 물품도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며, 완제품이 분류되는 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조립상태의 부분품이 국내에서 협정에서 정한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 수행으로 생산되어야 합니다.

028 품목번호 해석상이 시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FTA C/O의 세번과 수입신고 세번이 상이하지만 두 세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동일하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수출국과 수입국 세번 상이 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 기준으로 수입국 세번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운송



001 제3국 경유 시 직접운송 충족 입증자료

[관련 협정 : 최빈개도국특혜]

Q 질 의

우리나라로 운송 도중 두바이(경유지)의 보세구역에서 검사 절차를 걸치는 경우(환적) 최빈국 특혜를 적용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 ① 운송서류상에 선적항·경유지·도착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운송서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해 운송인이 전운송구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발행한 운송서류(통과선하증권) 또는, ② 비당사국 관세당국에서 동 물품이 관세법에서 정한 공정(하역, 재선적, 보존공정)이외의 공정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발행한 증명서(예: 비가공증명서 등)로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 증빙자료 외에 수출참가국에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상업송품장 원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002 내륙 운송한 경우 직접운송 증빙자료

[관련 협정 : 한·EFTA FTA]

Q 질 의

스위스산 물품을 내륙 운송한 뒤 벨기에 등 인접 국가의 항구로 운송하여 한국으로 반입하는 경우, 직접운송 증빙자료 요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비당사국을 경유할 경우 경유국 세관의 감시 하에 필요한 작업만 수행해야 하며, 동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적절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EFTA 국가 물품이 EU 국가 운송 시 발급되는 T1 서류는 경유국 내에서 세관감시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03 타국(중국)을 경유하는 경우 한-EU FTA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덴마크에서 출항하여 중국을 거쳐 국내로 반입되는 기계류의 최초 발행된 B/L과 중국 발행 B/L 상 수량 및 중량이 상이한 경우(중국에서는 비가공증명서를 발행 가능)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한-EU FTA에서는 원산지 상품으로 구성된 단일탁송화물이 양 당사자 간 직접 운송되어야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EU 국가에서 수출된 물품이 비당사국(중국) 물류센터에서 분리, 해체 또는 다른 화물과 병합하여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단일탁송화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한-EU FTA에서 정한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004 비당사국 경유 시 직접운송 증빙서류

[관련 협정: 한·EU FTA]

Q 질 의

재해로 인해 부득이하게 독일을 거쳐 운송하는 경우(스위스 원산지 물품) 한-EFTA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하게 되는데 이때 협정 적용을 받기 위해 증빙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A 답 변

질문에 예시한 EU 지역에서 발행되는 환적증명서(T1)는 EU 회원국 관세영역에서 비회원국 상품의 이동을 허용하는 서류로서 한-EFTA FTA 상 EU 회원국을 경유하는 EFTA 상품의 직접운송 증빙서류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V

직접운송

005 직접운송 요건 충족 증명방법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미국 원산지 물품을 항공운송하는 도중 홍콩에서 환적되어 운송서류 상 적재항이 홍콩 항으로 표기되는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미국-홍콩 및 홍콩-인천 AWB 모두 제출되어야 하는지 여부)

A 답 변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물품이 동 협정에서 정한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① 최초운송업자가 동 상품에 대해 전 구간을 책임지고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또는, ② 비당사국 경유 시 한-미 FTA에서 정하는 공정 이외의 다른 공정이 없고, 경유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었음을 확인하여 경유국 세관당국에서 발행한 증명서(예 : 비가공증명서)와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의 전체 운송구간이 확인 가능한 구별 운송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006 물류센터 단순 경유 시 직접운송 증빙자료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미국산 펌프를 한국으로 운송 도중 네덜란드의 물류센터(보세창고 아님)에 단순 보관하는 경우 직접운송 증빙자료의 요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원산지 상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 구간을 책임지고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또는 동 상품이 비당사국에서 비당사국 세관통제하에 머물러 있었음을 입증하여 발행한 서류(예 : 비가공증명서 등)로 직접운송 충족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운송서류의 운송정보 기재란에 출발지(미국), 도착지(한국)가 기재되어 있고, 물품상 세란(description)에 경유국의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통과선하증권으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07 경유국(중국)의 재수출증명서의 증빙서류로서의 효력 인정 여부

[관련 협정 : 한·미 FTA]

Q 질 의

미국산 물품을 중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수입하면서, 중국 세관으로부터 재수출증명서(상품이 중국 보세창고에 보관되는 동안 관할 정부 당국의 통제를 받았으며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구 포함)를 받은 경우 직접운송 증빙서류로 이용 가능한가요?

A 답 변

중국 세관이 발행한 재수출증명서가 비당사국(중국)에서 세관통제 하에 머물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직접운송 입증 서류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008 제3국 경유 시 직접운송 증빙

[관련 협정 : 한·ASEAN FTA]

Q 질 의

미얀마의 LCL 화물이 중간에 싱가포르를 거쳐 국내에 수입이 되는데 B/L의 Place of receipt와 선적항이 모두 미얀마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직접운송 증빙서류로 이용 가능한가요?

A 답 변

미얀마에서 수출된 물품이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경우에 질문에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상기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全) 구간(수출당사국에서 경유국을 포함하여 수입당사국까지)에 대해 책임지기로 하고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또는 비당사국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 등을 증명하여 비당사국 관세당국에서 발행한 서류(예 : 경유국 관세당국 발행 비가공증명서) 등으로 직접운송 요건이 입증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V

직접운송

009 한·영 FTA 탁송품의 직접운송 요건

[관련 협정 : 한·영 FTA]

Q 질 의

영국산 물품이 네덜란드로 수출되어 (네덜란드) 세관 관할 보세창고에서 네덜란드산 물품과 혼재된 후 단일탁송화물로 수출된 경우,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한·영 FTA에서는 협정 발효 후 3년간 영국산 원산지 상품이 EU 국가의 세관통제하에서 탁송품의 분리, 라벨링 작업 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영국에서 선적한 영국산 물품이 EU 국가에서 EU산 물품과 혼재하여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 EU 국가에서 세관통제하에 있었으며, 탁송품의 재포장 이외의 다른 작업이 없음을 입증한다면 직접운송 요건 충족 가능합니다.

010 운송 중 목적국 변경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인도 CEPA]

Q 질 의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을 UAE(목적국)로 운송하던 중 일부 물품을 인도에서 분할 하역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소급)발행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선적물품의 일부를 최종 목적국이 아닌 다른 국가(협정상대국)에 하역·인도하게 되어, 수출신고 내용과 원산지증명서 기재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관련 무역서류를 통해 해당 내용이 확인되고 수출신고 물품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011

원산지증명서 발행 기한의 기산일

[관련 협정 : 한·중 FTA]

Q 질 의

중국-홍콩-한국 경로로 수입되는 화물의 B/L에는 선적일이 경유지인 홍콩의 선적일로 표기가 됩니다. 한-중 FTA C/O 소급발급을 받으려면 선적 후 7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데 이때의 선적일이 경유지에서의 선적일인지 최초 출항지에서의 선적일인지 문의드립니다.

A 답 변

상품이 비당사국(예 : 홍콩)을 경유할 때 비당사국 관세당국이 제공하는 증빙서류(예 : 홍콩세관이 발행하는 비조작증명서)가 수입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되면 당사국 간에 직접운송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이때 선적일은 최초 출항지 중국에서의 선적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는 최초 출항지인 중국에서의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 발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012

직접운송 충족 여부 입증자료

[관련 협정 : 한·콜롬비아 FTA]

Q 질 의

콜롬비아산 커피 농축액(원산지 : 콜롬비아)를 FCL 화물로 해상 수입 시 파나마에서 단순 환적한 이후 부산항으로 도착했을 때 통관선하증권만 있으면 비가공증명서는 구비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답 변

운송서류상에 선적항·경유지·도착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운송서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해 운송인이 전(全) 운송구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발행한 운송서류(통관선하증권)를 구비하는 경우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013 비당사국 환적 시 직접운송 요건 입증자료

[관련 협정 : 한·터키 FTA]

Q 질 의

터키산 물품을 국내로 운송 도중 말레이시아에서 환적하면서 컨테이너 번호와 Seal 번호가 변경된 경우 통관허가증만으로도 직접운송을 증명할 수 있나요?

A 답 변

비당사국에서 환적 시 컨테이너 번호와 쉘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귀하가 구비한 통과선하증권 외에 비당사국에서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직접운송 충족 여부는 구체적 서류를 통해 통관지 세관에서 최종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014 제3국 경유 시 재포장 재라벨링 후 협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협정 : 한·호주 FTA]

Q 질 의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재포장이나 재라벨링을 거치더라도 협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답 변

원산지 상품이 비당사국 영역에서 재포장, 재라벨링 공정을 거치더라도 직접운송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유국에서 상가 재라벨링 또는 재포장 외의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다음 중의 자료로서 입증할 수 있으며 특허관세 신청 시에 해당 서류의 직접운송 입증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상대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전체 운송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일체
2.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추가적인 가공 또는 작업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관세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